연구보고서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김규판
이형근
이정은
김제국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 구 보 고 서
1 7 - 2 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김규판 · 이형근 · 이정은 · 김제국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인 쇄 2017년 12월 21일
발 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예당문화인쇄 T. 02-2269-3202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92-8 94320
978-89-322-1072-8 (세트)

서 언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자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요 국가에 대해 통상압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WTO 주도의 글로벌 통상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NAFTA나 TPP와 같은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 FTA 협상과 기체결 양자간 FTA의 재협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본 역시 미국의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우선 전략으로 시간적 여유는 다소 확보하였지만 미국의 미·일 양자간 FTA 협상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점에서 공동 현안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가이자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주요 경쟁국입니다. 일본의 통상정책, 그중에서도 FTA 정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상현안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통상정책을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1980년대로까지 소급하여 보호무역주의 체제하에서 미·일 통상분쟁과 최근의 미·일 경제대화에 나타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최종타결에 도달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김규판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과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를 이정은 연구원, 김제국 연구원과 함께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는 이형근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최낙균 선임연구위원과 배찬권 연구위원, 그리고 KIET 김재덕 부연구위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정부의 대일(對日) 통상협력 관련 제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

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7

1. 연구목적 ····· 18
2. 연구범위 및 구성 ····· 1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 24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 29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 30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30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 34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 47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 47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 62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 73

1. 일본의 FTA 정책 ····· 74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75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 79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 80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 80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 86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 96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 104
가. RCEP ····· 104
나. 한·중·일 FTA ····· 110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 117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 118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 118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 분야 ····· 121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 125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 128
가. 원산지규정 ····· 128
나. 전자상거래 ····· 132
다. 국영기업 ····· 134
라. 지재권 ····· 136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 139
가. TPP11 기본합의 ····· 139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 148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 155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 156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 156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 160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 164
가. 상품 시장 접근 ····· 164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 172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 174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 18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83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 184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 184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 187
2. 일본의 FTA 정책 ····· 192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 192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 200
다. 일·EU FTA ····· 206

참고문헌 ····· 214

Executive Summary ····· 231

표 차례

표 2-1.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및 부과 건수 추이 ····· 42
표 2-2.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2017년 10월 5일 기준) · 43
표 2-3. 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부과 현황(2017년 10월 5일 기준) ····· 43
표 2-4. 미국 행정부의 주요 보호무역 수단 ····· 45
표 2-5. 미·일 통상협상 약사 ····· 53
표 2-6.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1):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 63
표 2-7.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2): 무역·투자 규범 분야 ···· 64
표 2-8.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3): 분야별 협력 ····· 72
표 3-1. 일본의 FTA 체결 현황 ····· 74
표 3-2. 일본의 ASEAN 양자간 FTA: 공산품 시장접근 분야 ····· 83
표 3-3. 일본의 대(對)ASEAN 수출 현황 ····· 87
표 3-4. 일본의 대(對)ASEAN 수입 현황 ····· 88
표 3-5. 일본 주요 품목의 대(對)ASEAN 수출 현황 ····· 89
표 3-6. 일본 주요 품목의 대(對)ASEAN 수입 현황 ····· 91
표 3-7. 일본-ASEAN FTA의 수출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 93
표 3-8. 일본-ASEAN FTA의 수입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 94
표 3-9. RCEP의 역내수출입비율(무역액 기준·RCEP 소재 日제조업 기업) · 110
표 3-10. 한·중·일 FTA 협상의 경과 ····· 112
표 4-1. TPP의 경제적 효과(1): TPP vs. 기타 메가 FTA ····· 119
표 4-2. TPP의 경제적 효과(2): TPP12 vs. TPP11 ····· 120
표 4-3. TPP 참여국의 농림수산품 관세철폐 계획 ····· 122
표 4-4. TPP 참여국의 관세삭감 효과 ····· 124
표 4-5. TPP 정부조달의 적용 기준액 ····· 127
표 4-6. 자동차 관련 TPP 누적원산지 규정 ····· 130
표 4-7. 베트남의 투자·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 조치 ····· 140

표 4-8. 말레이시아의 투자·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 조치 ···· 143
표 4-9. 한국과 일본의 기준 관세율(2016년) ····· 150
표 4-10. 일본과 한국의 관세삭감 효과(가중평균) ····· 153
표 5-1. 일본의 대EU 수출입 추이 ····· 157
표 5-2. 2016년 일본 및 EU 수출입 현황 ····· 158
표 5-3. 2016년 일본의 대EU 수출입 10대 품목별 비중 ····· 159
표 5-4. 일·EU FTA 협상 경과 ····· 161
표 5-5. 일·EU FTA의 경제적 효과 ····· 163
표 5-6. 일·EU FTA의 산업별 경제적 효과: 양자간 수출 ····· 163
표 5-7. 일·EU FTA 자유화율의 주요 내용 ····· 164
표 5-8. 일본의 농산물 시장 접근에 관한 약속(소프트계 치즈) ····· 166
표 5-9. EU 농림수산물의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 ····· 168
표 5-10. 일본 농림수산물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 ····· 170
표 5-11. 일·EU FTA 협정문과 규범 분야 ····· 176
표 6-1.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 188
표 6-2.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 ····· 190
표 6-3. 일본 입장에서 TPP11의 주요 합의내용 ····· 202
표 6-4. 일·EU 및 한·EU FTA의 상품 시장 자유화율(품목 수 기준) 및 양허 비교 ····· 209
표 6-5. 일·EU 및 한·EU FTA의 비상품 시장 개방 비교 ····· 210
표 6-6. 일·EU 및 한·EU FTA의 규범 분야 비교 ····· 211

그림 차례

그림 2-1. 1980~90년대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건수 추이 ····· 32
그림 2-2. 미국의 FTA 체결국, TPP 참가국 및 EU와의 무역적자 ····· 36
그림 2-3.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비중 ····· 37
그림 3-1. 일본의 기체결 FTA의 자유화율 ····· 82
그림 3-2. 일본·ASEAN 무역 현황 ····· 86
그림 3-3. 일본기업의 ASEAN FTA 활용 현황 ····· 96
그림 3-4.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 역내 생산네트워크(1): 현지법인 수 및 매출액 ····· 98
그림 3-5.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 역내 생산네트워크(2): 역내 거래 ····· 99
그림 3-6.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 역내 생산네트워크(3): 주요 산업별 역내 거래 ····· 101
그림 3-7. 일본의 ASEAN5 해외직접투자 수익 현황 ····· 103
그림 5-1.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유입 현황 ····· 160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1990년대 중반 미·일 포괄경제협의와 자동차 통상협상 ····· 58
글상자 2-2. TPP12의 자동차 분야 미·일 병행협상 결과 ····· 65
글상자 2-3. 일본의 농산물 5대 '성역품목' TPP 협상 결과 ····· 66
글상자 2-4. 주요 분야별 미·일 협력 현황 ····· 71
글상자 4-1. TPP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 129
글상자 4-2. TPP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범 ····· 132
글상자 4-3. TPP의 국영기업 관련 주요 규범 ····· 135
글상자 4-4. TPP의 지재권 관련 주요 규범 ····· 137
글상자 4-5. 베트남의 TPP12에서의 핵심 쟁점 ····· 140
글상자 4-6. 말레이시아의 TPP12에서의 핵심 쟁점 ····· 143
글상자 4-7. TPP 협정문 중 동결 및 계속협의 항목 ····· 147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1. 연구목적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자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상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WTO 주도의 글로벌 통상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NAFTA나 TPP[1]와 같은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 FTA 협상과 기체결 양자간 FTA의 재협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조치로는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요구를 필두로 EU와의 TTIP[2] 협상 중단(2017년 2월), 현행 WTO 통상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한 USTR의 통상정책 보고서[3] 의회 제출(2017년 3월), 일본·독일·중국·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대중(對中) 불공정무역 관행 교정을 위한 '미·중 100일 계획'[4] 발표(2007년 4월),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의거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지시(2017년 8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2017년 6월)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일본 또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TPP 탈퇴 이후 미국을 배제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2017년 11월 기본합의를 도출하였고, 미국의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우선 전략으로 다소 시간적 여유는 확보하였지만 미국의 미·일 양자간 FTA 협상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이 글로벌 통상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가(2016년 교역비

1)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3)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4) Initial Actions of the U.S.-China Economic Cooperation 100-Day Plan.

중: 7.9%, 중국: 23.4%, 미국: 12.1%)로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동 현안을 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주요 경쟁국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 경제대화'[5]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6]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7]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일·EU FTA[8]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대별 통상현안과 FTA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trade policy)에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입장

5) U.S.-Japan Economic Dialogue.
6) AJCEP: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mong Japan and Member States of the ASEAN(일·ASEAN FTA).
7)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8) 공식 명칭은 日·EU EPA(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일·EU FTA로 통일한다.

에서 비교·분석의 가치가 있는 일본의 통상현안 대응으로는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90년대의 미·일 통상협상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하에서의 미·일 경제대화 두 가지로 압축하였고, 일본의 FTA 정책은 지역·경제권으로 나누어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AJCEP, RCEP, 한·중·일 FTA,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TPP, 마지막으로 EU 지역의 경우에는 일·EU FTA를 다루었다. 이들 RTA(Regional Trade Agreement)는 각자 시대적 배경과 경과를 달리하고 있어 분석 방법론 역시 RTA의 경과 단계에 따라 달리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TA는 협상 경과나 과제, 일본 측 입장(stance)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기본합의에 이른 경우(TPP, 일·EU FTA)에는 협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가급적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AJCEP처럼 이미 발효가 된 RTA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본경제(무역, 투자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제1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서는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이 정점에 달했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1980년대를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GATT체제하에서의 무역구제조치·비관세조치, 미국 '1974년 통상법 301조' 발동, 슈퍼301조 제정, 수입제한, 상대국의 수출자율규제 도입 등)을 정리한 다음,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 역시 1980년대 당시의 보호무역주의와 맥을 같이하면서 '회귀'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나아가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미국의 기체결 FTA(NAFTA, 한·미 FTA, TPP)를 재협상 혹은 파기하는 방향으로

까지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2절,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역시 제1절과 마찬가지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하였다. 먼저 1980년대(~1990년대)의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일 정부 간 통상협의체인 MOSS(1985~86년), SII(1989~90년), Framework Talk(1993~94년)을 중심으로 개괄하되, 실제 미국의 통상압력은 개별 산업, 그것도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를 망라한 점을 고려하여 섬유·철강·컬러 TV, 자동차, 반도체 분야를 '사례분석'함으로써 1980년대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이 어떻게 귀결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의 경우에는 2017년 4월과 10월에 개최된 미·일 경제대화의 3대 의제(agenda)(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무역·투자 규범, 분야별 협력)에 관해 구체적 협의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미·일 통상마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 단, 편의상 정책적 시사점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제1절, '일본의 FTA 정책'에서는 일본이 1990년대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주력한 나머지 NAFTA나 EU의 경제통합 가속화와 같은 '지역주의'(regionalism) 추세에 둔감하였으나 ASEAN을 둘러싼 한·중·일 간 FTA 경쟁을 계기로 FTA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개괄하였다. 제1절에서는 일본의 FTA 전략상 중국이 FTA 전략지역에서 벗어나고 한국과의 FTA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ASEAN 지역이 일본의 거의 유일한 FTA 전략지역으로 남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제2절,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AJCEP을 중심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가 자국기업의 수출지원(관세양허)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지원(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한 후, 일본 입장에서 AJCEP의 경제적 효과를 무역효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 ASEAN4(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내 조달·판매, ASEAN 5(상기 ASEAN4+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 수익 등 제반 지표를 동원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AJCEP과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7개)의 무역효과와 관련해서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의 대상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액(수입액)과 주요 수출품목(수입품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회귀분석(pooled OLS)하였다. 단, 일본기업의 FTA 활용 지표(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나 ASEAN 역내 조달·판매 비중, 해외직접투자(ODI) 수익과 같은 지표들이 FTA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FTA와 이 지표들 간 인과관계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제3절,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과 한·중·일 FTA를 대상으로 주요 협상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들 메가 FTA가 진전되지 않는 배경을 해명한 후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 정책적 시사점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을 제1절,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에서 지적하고자 하였다.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절 후반부에서는 TPP 협정문 내용을 시장접근에 초점을 맞춰 상품무역: 관세양허, 서비스 무역과 투자, 정부조달 순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제2절,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에서는 일본정부가 '21세기형

FTA'로 극찬하고 있는 TPP의 통상규범 분야를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순으로 살펴보되, 일본 입장에서 '금과옥조'로 삼을 만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 누적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국경간 정보 유통 허용, '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 도입,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무차별대우 원칙 도입, 지재권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다.

제3절,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에서는 2017년 1월 미국 탈퇴 이후 일본이 주도한 TPP11개국 간 협상경위를 살펴보았는데, 일본이 그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관심 사항을 정리한 다음 '20개 동결 항목'을 중심으로 TPP11의 기본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절 후반부에서는 한국이 한·미 FTA의 관세양허 수준으로 TPP11에 참여할 경우 한·일 간 무역관계에 한정하여 한·일 각 상대국의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삭감 효과를 추정하였다. 단, 정책적 시사점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일·EU FTA 기본합의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EU 통상정책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일·EU FTA 타결의 핵심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일본과 EU 간 통상관계와 일·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2017년 7월 일·EU FTA의 타결이 양자간 연례 정상회의 및 산업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지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일·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양자간에 모두 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FTA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자간 무역·투자의 확대 현황 및 일·EU FTA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제2절 일·EU FTA의 타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품 시장 접근, 비상품 시장 접근, 규범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상품 시장 접근

에서는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선방(자유화율 82%)한 반면, 유럽산 자동차의 UN ECE 규정 적용, 형식승인 인정 등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조치를 완화했다는 점을 밝혔다. EU는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를 한국(5년)보다 장기인 7년으로 양허했는데, 이는 일본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 외에도 농산물 및 비관세조치 등에서 EU가 요구하는 만큼 일본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상품 시장 접근에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한·EU FTA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했던 점과 달리 일·EU FTA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와 달리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등의 분야가 추가됐다는 점도 밝혔다.

제3절에서는 일·EU FTA 협상의 잔존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일·EU FTA가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분쟁해결절차,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에서 아직 타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대EU시장에서 업종별로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단, 정책적 시사점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연구 목적에 비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과 '일본의 FTA 정책' 2개 소절로 나누어,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와 같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그리고 최근 일본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FTA 정책·전략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별로 구분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대 들어 뚜렷해진 일본의 통상정책 전환 및 기체결 FTA에 주목한 연구보고서는 정훈(2007), 김양희 외(2008), 김봉길(2011) 등이 있다. 정훈(2007)은 일본의 변화된 통상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 분야에서의 한·일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 및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대일 통상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김봉길(2011)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의 통상정책 전환, 즉 WTO 중심의 다자주의 정책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FTA 정책의 동시 추진이라는 중층적 통상전략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 보고서들에서 제시한 일본의 통상정책(전략)의 전환을 감안하면서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최근에 추진된 FTA에 나타난 일본의 정책·전략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양희 외(2008)는 당시 일본이 기체결한 FTA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을 토대로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와 본 연구가 유사한 점으로는 FTA 협정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나, 반면 본 연구는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의 정책 대응 및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전제로 한 대일 관세삭감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통상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는 이진면 외(2014), 김영근(2014), 제현정(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정철 외(2017) 등이 있다. 특히 이진면 외(2014)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흐름과 국내 산업의 구조변화 및 대외경쟁력을 방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의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총론적 관점에서 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개별 산업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인 반면, 본 연구는 일본이 최근에 추진한 FTA에 반영된 통상전

략에 대한 분석과 개별 FTA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권역별 FTA로부터 실제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도한 최근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과 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분석한 방대한 연구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90년대의 미·일 통상 관계 및 협력을 다루고, 일본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AJCEP, RCEP, 한·중·일 FTA, TPP, 일·EU FTA 등 다양한 RTA를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편 김영근(2014)은 과거 미·일 통상마찰과 TPP에 주목했으며, 제현정(2016)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한국의 대응을 연구하였다. 정철 외(2017)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 동안의 통상정책과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RCEP, 한·중·일 FTA, TPP, 일·EU FTA 등 일본의 메가 FTA 대응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보고서로는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4), 김재덕(2015), 조정란(2016), 라미령, 김제국(2017) 등이 있다. 특히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4)는 일본의 기체결 FTA의 특징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정부가 당시 협상을 전개했던 메가 FTA 중 TPP와 일·EU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4)의 후속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TPP11 및 일·EU FTA 기본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정란(2016)은 TPP 협상 과정과 일본의 TPP/FTA 전략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의 농업분야의 협상 타결과정과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일 FTA를 포함해 중장기 관점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1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의 협상 과정과 시장접근, 규범 등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TPP11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FTA의 효과에 대해 추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재덕(2015)은 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라미령, 김제국(2017)은 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정부의 대응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AJCEP, RCEP, 한·중·일 FTA),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TPP) 및 대EU 통상정책(일·EU TPP)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추진 현황, 일본의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우리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특히 AJCEP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효과, TPP11에 한국이 참여 시 한국의 대일 관세삭감 효과 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점도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1) 1980~90년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배경

미국은 1930년대 이후 50여 년 동안 자유무역을 자국 무역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다. 1930년 고율 관세법인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도입이 세계적인 관세전쟁 및 이로 인한 무역 감소, 경기침체라는 역효과를 낳은 이후 자유무역과 국제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9]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GATT-IMF 체제 안에서 미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자유무역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1934년 제정된 상호무역협상법(RTAA: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강화되었는데, RTAA 제정으로 관세인하에 대한 협상권이 의회에서 행정부(대통령)로 이동하면서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크게 하락했다.[10]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발생한 일련의 대외·대내적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산업 및 무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하락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정책기조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1973·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난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자원 파동,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980년 이후 유럽공동체(EC) 및 일본의 성장과 신흥공업국의 부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9) 1930년 6월 고율 관세법인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보복관세·관세전쟁이 유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스무트-홀리법 도입 2년 후 미국 수출입의 41% 정도가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되면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 및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USITC(2009), pp. 63-65.

10) 미국 평균관세율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 직후인 1931년의 51.2%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46년에는 26.3%, 1960년에는 12.2%, 2004년에는 4.8%에 도달했다. Baldwin(2009), p. 1.

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신흥공업국 등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게 된다.[11] [그림 2-1]을 보면 1980~90년대 경제성장이 둔화될 때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요구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내요인으로는 1980년 심화된 '쌍둥이 적자' 및 경기불황,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197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등이 보호무역주의로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1980년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정책과 국방비 증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감세로 인한 수입확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국방비 증가로 재정적자폭이 확대되어 1980년부터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중서부 및 북동부 지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대표로 하는 제조 산업 및 제조업 밀집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이 국내에서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미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미국 통상정책은 기존의 '자유무역'에 더하여 '자유롭지만 공정하기도 한 무역(free but fair trade)'을 강조하게 되었다.[12]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제조 산업(High technology manufacture) 및 자동차, 철강, 공작기계 등의 산업에서 불공정한 무역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 및 무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이 도입·추진되었다.[13]

---

11) Richardson, Olmer, and Stern(1994), Feldstein ed., p. 629.
12) *Ibid.*, p. 629.
13) *Ibid.*, pp. 629-631.

1990년에 들어서서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등이 개선되었으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이로 인해 미국 의회 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세력이 약화되고 연방정부가 미국산 상품·서비스를 우선시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실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지속되었다.[14] 그러나 한편으로는 NAFTA 협상 및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완료하고 지재권, 전기통신, 투자서비스, IT 등에 대한 국제협정을 맺는 등 무역자유화의 일선에 나서기도 하는 이중적인(polarized) 모습을 보였다.[15]

그림 2-1. 1980~90년대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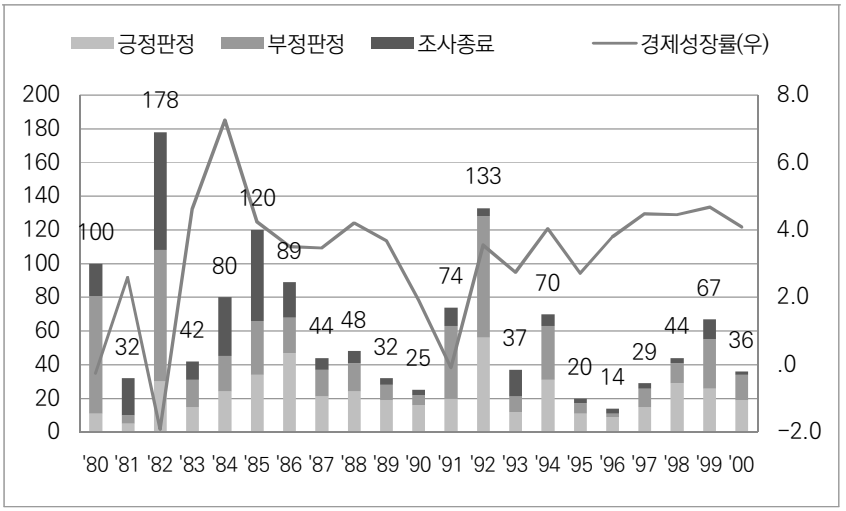

주: 긍정판정(Affirmative)은 USITC가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부정판정(Negative)은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 조사종료(Terminated)는 제소자(petitioner)가 제소를 철회하거나 상무부에서 조사가 종료된 경우를 뜻함.
자료: USITC(2010), p. 1.

2) 1980~90년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1980~9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보호무역주의는 방식과 정도 등에서 과거

14) Brainard(2001), "Trade Policy in the 1990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및 "Trade Deficits Won't Ruin Us"(1997. 11. 24).
15) *Ibid.*

후진국이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신보호무역주의(Neo Protectionism)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에서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위해 관세 및 수입쿼터를 주 수단으로 활용한 반면,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주로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 조치를 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16] 국제규범(WTO)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허용하고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를 조사하는 기관이 1979년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이관된 이후 더욱 활발해져서 1980년 이전까지 270여 건으로 머무르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청원 건수가 1980년부터 400건 내외로 급증하였다.[17] 비관세조치의 경우, 실제로 GATT 케네디라운드(1964~67년) 이후 관세·비관세 구조를 살펴본 결과, 케네디라운드 이후 도입된 비관세 조치들은 기존에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던 산업들을 관세장벽이 낮춰진 이후에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관세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로 인하여 관세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의 형태만 바뀌고 강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18] 보호무역주의 여론 및 취약산업의 이익집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 힘을 얻어 내구소비재, 농산물 가공상품, 섬유 등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가 도입됐다.[19]

1980~90년대 사이 수입제한 조치가 급증한 데는 미국 통상법 및 관세법 등이 보호무역주의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원인도 존재한다. 그중 가장 빈번히 활용되었던 보호무역주의적 조항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의 301조

16) Gandolfo(2014), pp. 277-278.
17) 권영민(2005), p. 59.
18) Ray(1987), p. 306.
19) *Ibid.*, pp. 308-309.

및 1988년 포괄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슈퍼 301조 조항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으로 불공정 무역을 행하는 상대국에게 대통령이 단독으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슈퍼 301조는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으로 미국의 지재권에 부담이 되는 정책 혹은 관행을 보유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USTR에게 허용한다.

둘 다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조항이라고 여겨진다. 또 보호무역주의적 조항은 아니지만 1979년에 통상법 제7부에 근거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하여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재무부에서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상무부로 이관된 것도 1980년 이후 수입제한 조치가 급증한 것의 배경으로 작용했다.[20]

통상법에 근거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 외에 회색수입제한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는 수출자율규제(VERs), 시장질서유지협정, 다자간섬유협정(MFA) 등이 1980~90년대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들은 GATT 규정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여 회색조치라 일컬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2절 일본정부의 대응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1)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배경

트럼프 정부 출범 후의 보호무역주의는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1980~90년대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 아래에서 진행된 신보호무역주의와 여

20) 권영민(2005), p. 59.

러 의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확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의 보호 요구, 그리고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부 및 여론의 인식 확산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행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자 2016년 공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시건, 일리노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러스트벨트' 제조업·공업지대는 1970년 이후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동차·철광·광산업 등의 사양화와 함께 제조업체들이 미국 남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불황을 맞았다. 이들 지역은 이후 오랜 기간 장기 실업률 및 커뮤니티의 쇠락 등의 문제를 겪어 오면서 '자유무역'의 부작용을 실감했다. TPP 및 NAFTA 탈퇴, 미국 우선주의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동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오하이오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주들이 작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를 지지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2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다.[22] 미국은 1980년대부터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trade imbalance)의 확대와 더불어 무역적자가 급증하면서 무역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2016년에는 -5,048억 달러(상품수지는 -7,368억 달러)를 기록했다.[23]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가 미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멕시코, 한국 등과의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s)"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

21) "The Rust Belt was turning red already"(2016. 11. 9) 및 "One Reason the Rust Belt Turned Red"(2016. 11. 14).
22) McBride(2017), "The U.S. Trade Deficit: How Much Does It Mat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5).
23) CEIC DB(검색일: 2017. 11. 11).

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24]

실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FTA 체결국 중 대미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등이다. 그 외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 TPP 참가국 및 EU와의 무역적자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미국의 FTA 기체결국과의 무역적자가 미국 상품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이 멕시코, 이스라엘,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나온 적자이고 나머지 17개 FTA 체결국과의 무역적자는 전체 미국 무역에서 봤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25]

그림 2-2. 미국의 FTA 체결국, TPP 참가국 및 EU와의 무역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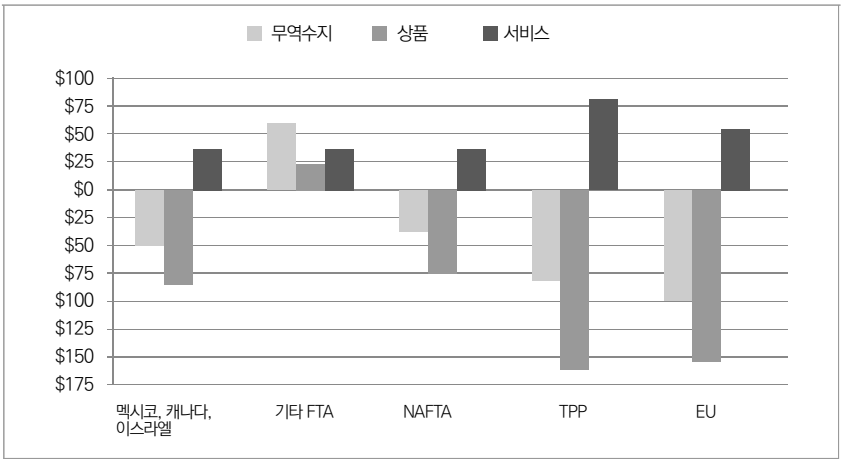

자료: Jackson(2016), p. 4.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6년 -3,47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가까운 47.1%의 비중을 보였

24) McBride(2017), "The U.S. Trade Deficit: How Much Does It Mat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5).
25) Jackson(2016), p. 4.

다. 두 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688억 달러)으로, 미국 무역적자의 9.3%를 차지한다. 한국은 -276억 달러로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6]

그림 2-3.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비중

(단위: %,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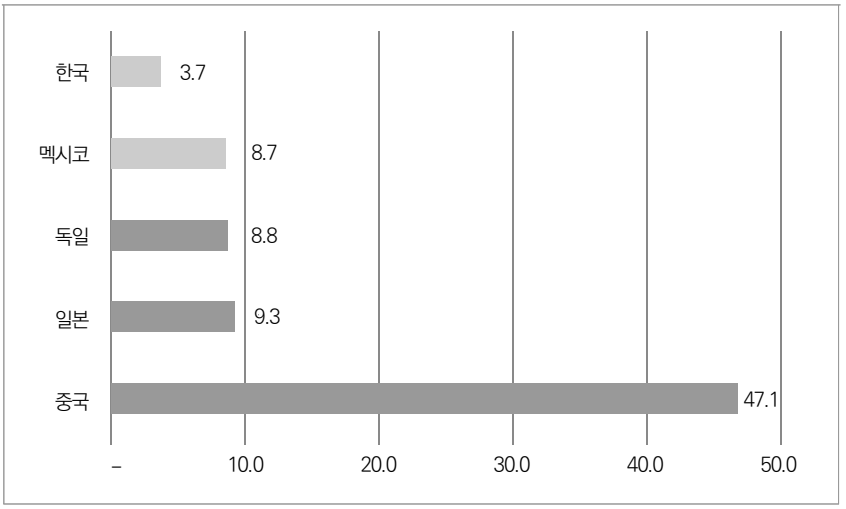

주: 한국·멕시코는 FTA 체결국가. 비중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CEIC DB(검색일: 2017. 11. 11).

2) 트럼프 통상정책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불공정한 무역환경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며, NAFTA 및 한·미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국의 WTO 가입 등으

26) CEIC DB(검색일: 2017. 11. 11).

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해왔다.[27]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 아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제품들을 미국인들이 구매하여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이 슬로건은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 선거 당시 사용했던 캠페인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따온 것으로, 정치·외교적으로 강한 정책을 추진했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미국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통상법 등을 활용한 수입제한조치, 공공조달 시장 및 정부사업 시 미국산 제품 우대(바이 아메리칸), 비관세장벽 확대 등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월 1일 제출한 「2017년 통상정책의 과제 및 2016 연차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현재 미국의 통상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및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인 통상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28] 동 보고서는 무역적자 감소를 미국 통상정책 상 핵심 목표(central objective)로 잡고, 4가지의 우선과제(major priorities)를 발표했는데, 이는 ① 통상정책에서 미국의 국가 주권 방어 ② 미국 통상법을 엄격하게 집행 ③ 해외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 활용 ④ 주요 시장과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진행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권은 현재 미국이 불공정한 통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행 국제규범 및 절차로는 현 상황을 교정(remedy)하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보고서에는 이에 대응하여 불공정한 무역환경을 시정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미국의 태도방침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통상정책에서 미국의 주권 방어'에서는 WTO 분쟁해

---

27) "Read Donald Trump's Speech on Trade"(2016. 6. 28).
28) USTR(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결제도에서 미국의 권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WTO의 결정보다 미국 국내법을 우선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29]

두 번째 과제인 '미국 통상법을 엄격하게 집행'에서는 타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재권 침해, 환율조작, 국영기업 및 기타 불공정 행위에 의해 왜곡되어 있는 세계시장에 맞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1930년 관세법에 의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1974년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30]

세 번째 '해외시장 개방'과 네 번째 '무역협정 협상'에서는 미국의 수출이 해외시장에서 심각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해외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역협정 등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USTR은 현재 글로벌 무역체제가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에 이롭고 미국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대(對)중 무역수지 적자가 2000년 -819억 달러에서 2015년 -3,34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2001년)하기 전인 1984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의 산업생산은 약 71% 증가했으나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그 증가가 9% 미만에 그쳤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2000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31]

---

29)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 리포트가 '미국에 해로울 경우'...(중략)...WTO 리포트가 구속력을 가지거나 자동 발효되지 않는다," "WTO 분쟁해결 패널이나 WTO 상소기구가 미국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것이 바로 미국 법이나 관행의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USTR(2017), p. 3.

30) JETRO(2017), 「国内法に基づき貿易救済措置を厳格に執行 - USTRがトランプ政権の通商政策を公表 - 」,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8).

31) *Ibid.*

나) 보호무역주의 정책: 행정명령 및 통상법 등을 활용한 수입제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정책상의 4가지의 우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USTR, 상무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여타 기관들에 3~6개월 안에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안을 요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는데, 대표적으로 2017년 3월 31일에 서명한 무역적자 실태조사와 무역구제조치 집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존재한다. 즉, 미국의 무역적자국들이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32]

무역적자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은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무역적자의 원인을 90일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2016년 미국을 상대로 심각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집중하여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최종 보고서에는 무역적자의 원인(차별관세, 비관세장벽, 해로운 덤핑, 해로운 정부보조금, 지재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노동법 및 기준 위반, 기타 차별 등 포함)을 비롯하여 비대칭적 비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수입 및 무역관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33]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 조사대상 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34]

무역구제조치 집행강화에 대한 행정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32) Cimino-Isaacs(2017), "100 Plus Days of Trade Policy: A Review of Key Administration A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5).
33) *Ibid.*
34) 정철 외(2017), p. 5.

Laws)은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된 품목에 대해 집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35] 행정명령은 2015년 5월 31일 시점으로 23억 달러에 상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미국의 수익(revenue)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수입업자(covered importer)에 대한 담보금 요건(bonding requirement)을 강화하고 관세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36] 대상수입업자란 ① 과거 미국으로 수입한 수입기록이 없는 경우 ②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경우 ③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④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적시에(in a timely manner)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입업자를 뜻한다.[37]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18일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입을 촉진시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38] 및 2017년 4월 29일 NAFTA와 한미 FTA 등을 포함한 14개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여 협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고 성과평가(performance review)를 진행하는 내용의 무역협정 위반·남용 종합검토 행정명령[39] 등에 서명한 바 있다.

덤핑 및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법 제7부(Chapter VII)에 근거한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도 시행해왔던 관행이다. 그러나 [표 2-1]에서 확인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역구제 조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1월

35)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 법령자료(검색일: 2017. 12. 8).
36) *Ibid.* 및 Cimino-Isaacs(2017), "100 Plus Days of Trade Policy: A Review of Key Administration A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5).
37) 정철 외(2017), p. 6.
38)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법령자료(검색일: 2017. 11. 21).
39)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법령자료(검색일: 2017. 12. 5).

27일 WTO가 OECD 등과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1~6월) 미국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4건) 및 직전조사(13건)보다 각각 42%, 161% 급증한 규모이다.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15건으로, 작년 동기(12건) 및 직전조사(4건) 대비 각각 25%, 275%나 증가하였다. 상계관세의 경우 G20 국가의 전체 상계관세 조사건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1% 이상 되는 정도이다. 또한 보통 기업이나 노동자 단체, 혹은 무역관련 협회 등 민간업계가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는 데 반해 트럼프 정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self-initiated) 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40]

표 2-1.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및 부과 건수 추이

	2015년 7~12월		2016년 1~6월		2016년 7~12월		2017년 1~6월	
	조사	부과	조사	부과	조사	부과	조사	부과
호주	7	5	11	3	6	2	12	9
캐나다	1	1	3	1	11	2	8	10
중국	8	5	2	3	3	8	9	2
EU	7	9	5	1	9	4	3	7
인도	18	11	48	27	21	10	34	31
인도네시아	2	3	0	0	7	0	0	0
일본	0	0	0	0	1	2	2	0
한국	3	3	0	1	4	2	3	0
멕시코	4	7	1	7	5	5	1	2
러시아	0	3	0	3	1	1	1	0
미국	27	10	24	9	13	26	34	23

자료: OECD, WTO, and UNCTAD(2017), pp. 27-29.

40) 미국정부가 민간의 요구 없이 수입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발동한 경우는 1985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일본의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조사가 마지막이었다고 함. 이번(2017. 11. 28) 조사의 대상 제품은 중국산 알루미늄판임. The White House(2017), "Free and Fair Trade for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8).

미국의 국별·산업별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초 시점에서 미국은 총 416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일본 순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중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규제건수가 전체의 37%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2.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2017년 10월 5일 기준)

	반덤핑	상계관세	합계
중국	111	44	155
인도	20	14	34
한국	23	7	30
대만	22	1	23
일본	19	-	19
브라질	12	4	16
터키	9	7	16
멕시코	13	1	14
인도네시아	9	4	13
베트남	9	3	12
총합계	321	95	416

자료: USITC, "AD/CVD Orders"(검색일: 2017. 12. 5).

품목별로는 철강제품[41]에 대한 부과 건수가 217건으로 과반수 이상(51.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학/의약(51건), 금속/광물(25건) 순서이다.

표 2-3. 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부과 현황(2017년 10월 5일 기준)

품목	농산물	화학/의약	철강	기계전자	금속/광물	기타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합계
건수	24	51	217	3	25	72	24	5	421

자료: USITC, "AD/CVD Orders"(검색일: 2017. 12. 5).

41) Iron & Steel: Mill products(122건), Iron & Steel: Other Products & Castings(45건), Iron& Steel: Pipe Products(50건)를 포함.

철강의 수입규제 현황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값싼 중국산 철강이 세계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철강업체에서 수입규제 신청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와 연계시켜 보호하고 있어 특히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1980~90년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각종 통상법(statutes of trade law)을 활용하여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상 무역분쟁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규제가 가능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b)조, 1974년 통상법 122조(국제수지 위기대응) 및 301조(일방적 무역보복), 201조(세이프가드) 337조(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이 존재한다(표 2-4 참고).[42]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b)조를 근거로 활용하였는데, 동 조항은 냉전시절 제정되었던 조항으로 긴급계획국(Office of Emergency Planning)이 안보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정될 경우 대통령이 규제의 종류나 정도의 제한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982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제조업 및 방위산업기지에 결정적인 요소"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2017년 4월 20일 및 27일 각각 서명했다.[43]

---

42) Hufbauer(2016), p. 6.

43)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Steel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법령자료(검색일: 2017. 12. 8);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Aluminum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법령자료(검색일: 2017. 12. 8).

표 2-4. 미국 행정부의 주요 보호무역 수단

수단	근거법령	집행기관	무역구제방안
반덤핑·상계관세	1930년 관세법 제7부	상무부, USITC	관세부과
201조 세이프가드	1974년 통상법 201조	USITC	관세부과 및 수입량 제한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관세법 337조	USITC	수입금지·중지명령
일반 및 슈퍼 301조	1974년 통상법 301조 및 1988년 종합통상법 1302~1303조	USTR	양자협상,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국가안보	1962년 무역확대법 232(b)조	대통령	관세부과 등(방식 및 정도의 제한 없음)
국제수지 위기대응	1974년 통상법 122조	대통령	최대 15% 관세 인상(최장 150일)
환율조작경고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701조	재무부	미국정부조달 금지 등

자료: Hufbauer(2016), p. 6 및 「수출·통상·금융…'트럼프 보호무역'에 한국경제 폭풍전야」(2016. 11. 9) 참고하여 작성.

다) 무역협정 재협상-양자협정 우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을 올리기 위해"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협정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려고 한다.[44]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TPP, NAFTA, 한미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미국이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협상 내지는 탈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사흘 후인 1월 23일에 결국 TPP에서 탈퇴하고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45] 이후 미일 FTA 등 양자 기반의 자국우선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을 다자협상의 틀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2017년 2월 정상회

44) Cimino-Isaacs(2017), "100 Plus Days of Trade Policy: A Review of Key Administration A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5).

45)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법령자료(검색일: 2017. 12. 5).

담의 결과로 무역·투자 분야 등의 분야에서 협의할 경제대화를 창설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4, 10월에 미일 경제대화가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도 양자 무역협정을 희망하는 미국과 다자협정을 추구하는 일본의 입장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현재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과 TPP를 먼저 발효시켜(TPP-11) 미국이 향후 다자간 무역시스템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칭한 NAFTA와 관련해서는 7월 17일 NAFTA 재협상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17년 8월 16일을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제1차 재협상을 개시하였다. 2017년 11월 17~21일 멕시코시티에서 연내 마지막 협상인 NAFTA 제5차 재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NAFTA 협상단은 총 7회에 걸쳐 재협상을 진행한 이후 2018년 1/4분기 안에 재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협상 진전이 늦은데다 2018년에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계획대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46]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해 미국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멕시코가 자국으로 이전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는 11월 21일 최저임금을 80.04페소에서 88.36페소(10.4% 인상)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양보는 있었으나, 주요 분야에서 논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47] 반면 멕시코는 미국의 이주노동자 제한 완화, 에너지부문의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환경·노동 규정 강화와 함께 역내교역 확대 등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48]

---

46) "NAFTA Talks Have Hit a Wall After Mexico and Canada Resist U.S. Demands"(2017. 11. 21).
47) "Mexican Counteroffer Marks Tit-for-Tat Turn in Nafta Talks"(2017. 11. 21).
48) "The US, Canada, and Mexico are renegotiating NAFTA - here's what each country wants"(2017. 9. 5).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1) 미·일 통상협상[49][50]

가) 통상법 301조의 부활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무역관행에 엄격히 대응하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단 법 통과 후 GATT 위반 소지로 미국 행정부가 이 법 조항에 의거하여 무역보복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으나 1985년 레이건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통상법 301조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GATT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국 독자의 판단으로 무역 상대국의 제도를 부당하다고 간주하고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1988년 미국의 포괄무역법은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첫째 반덤핑에 각종 '우회방지' 규정을 신설한 점, 둘째 미국특허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외국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점, 셋째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개정하여 시행 권한을 대통령에서 USTR로 이전하여 외국 정부의 일정한 관행에 대한 보복을 의무화한 점, 넷째

---

49) 1985년 9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자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율을 재조정하자는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였고,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강세가 진행되었고 일본은 이에 대해 확장적 금융정책, 즉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 환율재조정에 관한 미·일 협상은 지면한계상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소절에서 후술하는 개별 분야별 협상 내용은 이들 협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뤄지거나 별도의 협상루트를 통해 이뤄진 점도 밝혀둔다.

50) 2000년대 들어서도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2001~09년)과 같은 정부 간 통상협의체가 가동되었으나, 협의 의제가 통상압력보다는 경제협력으로 대이동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에 대해서는 外務省(2010), 「成長のための日米経済パートナーシップの現状」,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를 참고할 것.

슈퍼301조를 제정하여 외국정부의 일정한 관행에 대한 조사의 자동 개시를 의무화한 점, 다섯째 스페셜 301조를 제정하여 지재권의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보복 권한을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슈퍼301조는 USTR에 ①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소하고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 ② 연차보고서에 의거하여 1989년과 1990년 각각 어느 국가의 어떠한 무역관행을 우선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것 ③ 그 우선국가와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협상할 것 ④ 1년 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것인데, 일본정부는 그 우선국가란 자신에 다름 아니라고 인식하였다.[51]

1989년 미국 USTR 대표는 슈퍼301조에 의거하여 인도, 브라질, 일본을 '우선국가'로 지정하였고 일본의 상거래 관행 중 슈퍼컴퓨터 및 인공위성의 정부조달, 목재제품에 관한 기술적 수입제한 등 3개 항목을 협상우선 관행으로 지목하였다. 단 일본의 유통 등 제도 문제는 슈퍼301조 밖에서 일본과 협상한다는 원칙을 정하였고, 이것은 1989년 시작된 미·일 구조문제협의(SII, 후술)에서 집중 논의되었다.[52] 일본정부는 슈퍼301조 결정 직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를 전제로 하는 협상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 대신, 슈퍼301조 밖에서의 미·일 간 협의는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53]

1990년 미국 행정부는 슈퍼301조와 관련하여 새롭게 우선국가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1994년 3월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년 기한의 슈퍼301조를 부활시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에서 자동차(부품 포함), 종이를 둘러싼 미·일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1999년 4월에도 2년 기한의 슈퍼301조를 부활시키기도 하였다.[54]

---

51) 阿部(2011), p. 67.
52) 阿部(2011), p. 69.
53) 阿部(2011), p. 69.
54) 阿部(2011), pp. 69~70.

나) MOSS: 1985~86년

1985년 1월 미·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MOSS(Market-Oriented Sector Selective: 시장지향형 분야별 협상)라는 협상방식에 합의하고, 수출자율규제보다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개별 품목에 관한 규제완화, 관세인하 등 일본의 시장개방을 통한 미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확대에 초점이 모아졌다. 협상분야는 주로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당초 전기통신(단말기기 및 전기통신 서비스, 무선포함), 전자, 의약품·의료기기, 목재제품 4개 분야였으나, 1986년 5월 미·일 정상회의에서 운송기기 분야를 추가하였다. 1986년 1월에는 일본측에선 외무장관, 미국측에선 국무장관이 경과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예를 들면 전자 분야의 경우 컴퓨터 부품의 관세철폐, 특허절차의 간소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행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일본의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 일부 자유화, 목재제품 및 컴퓨터 부품의 관세철폐 등은 MOSS 협의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미국은 일본의 슈퍼 컴퓨터 시장 접근, 그 중에서도 정부계 기관의 조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1988~89년에는 실제 조달상황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본 국립대학에서의 슈퍼 컴퓨터 조달 문제는 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재연되었다.[55]

다) SII: 1989~90년

1989년 미·일 정상은 미국의 무역불균형은 환율재조정이나 MOSS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협조만으로 한계가 자명하므로 미시 경제주체의 체질개선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미·일 구조문제협의(SII: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s) 개최에 합의하였다. 단 일본은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거액의 재정적자와 같은 초과수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여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구조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의한 점에서는 이전의 통상협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56] 즉, 기존의 미·일 통상협상은 미국 행정부가 일본측에

55) 阿部(2011), pp. 62~66.

수출자율규제를 이끌어내고 나중에는 일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SII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책임을 미국측에도 추궁하여 미국측의 개선 노력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SII는 일본측 외무·대장(재무)·통상산업성과 미국측 국무·재무·USTR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다른 정부부처들도 참여하는 차관급 협의였다. 일본측 구조문제는 저축·투자 패턴, 토지이용, 유통, 배타적 거래 관행, 계열관계, 가격메커니즘 등 6개 항목이었고, 미국측은 저축·투자 패턴, 기업의 투자활동과 생산성, 기업행동, 정부규제, 연구·개발, 수출진흥, 교육·훈련 등 7개 항목이었다. 1990년 4월에는 중간보고서가 채택되었고 6월에는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SII협의는 종결되었다.[57]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첫째, 1991년부터 10년에 걸쳐 430조 엔의 공공투자를 실시한다는 '공공투자기본계획'을 수립(1990년 6월)하였고, 둘째 대규모 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한 대규모점포법을 개정(1991년 5월)하여 외국계 유통업체의 국내진입을 허용하였고, 셋째 카르텔 과징금 인상을 주 내용으로 독점금지법을 개정(1991년 4월)하였다. 단,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수용이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일본 내부의 요구에 부합한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도 있다.[58][59]

라) Framework Talk: 1993~94년

1993년 출범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전략은 '객관적 기준'이라는 성과지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SII 협의를 Framework Talk(미·일 포괄경제협의, 차관급 회의)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USTR 대표(Michael Kantor) 및 차석대표(Charlene Barshefsky),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Laura D'Andrea

56) 阿部(2011), pp. 77~78.
57) 阿部(2011), p. 78 및 外務省(2012), 「日米通商交渉の歴史(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58) 일본의 6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阿部(2011, pp. 79~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59) Schoppa(1997), pp. 86-116.

Tyson) 등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을 기용하였다.[60]

미·일 포괄경제협의는 1993년 5월 당시 커터(Bowman Cutter) 미국 대통령보좌관이 작성한 'Japan Paper'에 대일 협상안으로서 제시된 것이고, 거시경제와 분야 및 구조분야의 5개 바스켓으로 구성되었다. 거시경제 분야는 첫째,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992년의 3.2%를 3년 후에 1~2%대로 낮추고 둘째, 일본의 GDP 대비 공산품 수입 비율을 3년 후에 1/3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분야 및 구조분야의 5개 바스켓은 ① 정부조달(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컴퓨터, 슈퍼 컴퓨터, 인공위성 분야에 의료기기와 전기통신 분야를 추가) ②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금융서비스, 보험,[61] 경쟁력정책·유통, 대일 수출촉진 노력·경쟁력 강화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③ 자동차·자동차 부품 ④ 미·일 경제조화(직접투자, 기업계열 문제, 지재권, 기술 접근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⑤ 기존 협정 준수(SII를 비롯하여 제지, 판유리, 임산물, 외국인변호사, 반도체 등 개별분야에서의 기존 합의사항을 모니터링)로 구성되었다.[62]

일본정부(통상산업성)는 첫째, 수치목표 설정은 반대하며, 둘째, 협의 사항을 정부 권한 범위 내로 압축할 것, 셋째, 협의 내용은 쌍방향 원칙을 준수할 것, 넷째, 협의 성과는 제3국에도 적용되는 MFN 원칙을 준수할 것, 다섯째,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분야 및 구조분야의 5개 바스켓에 포함하는 것은 협의의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63] 그러나 상기 일본의 주장 가운데 세 번째 사항인 쌍방향 원칙, 즉 거시경제 정책분야에서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재정정책을 실시하고 미국은 재정적자를 대폭

---

60) 阿部(2011), pp. 89~90.

61) 보험 분야는 1993년 당시 우선협상 분야 중 하나였는데, 1994년 3월 일본이 ① 면허·상품 인가기준의 명확화 ② 손보협회 정관 개정: 외국보험회사의 가입허용 ③ 보험제도 개혁 시 외국보험회사의 의견 청취 ④ 상품 및 요율 인가의 탄력화 ⑤ 브로커 제도 도입 등의 자율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① 공정위 조사 ② 요율과 약관 ③ 제3분야(격변완화조치) ④ 객관적 기준 등에 합의하였으며, 1995~96년에는 상기 4개 조치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협의를 전개하였고 일본이 보완조치에 합의하였다. 外務省(2012), 「日米通商交渉の歴史(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p. 2.

62) 外務省(199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및 阿部(2011), pp. 90~91.

63) 阿部(2011), p. 91.

축소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 말고는 대부분 미국측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특히 일본은 합의사항을 미국 통상법 301조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미국의 성과지향적 통상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정량적, 정성적 정보와 데이터에 기초하여 각 분야별 진척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objective criteria)을 도입하는 데도 합의하였다.[64]

결국 미·일 포괄경제협의의 분야 및 구조 분야 협상은 ① 정부조달 중 의료기기와 전기통신분야는 1994년 11월 ②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 중 보험 분야와 금융서비스 분야는 각각 1994년 10월과 1995년 1월 ③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포괄협의 틀 외의 조치는 1995년 6월, 포괄협의 틀 내의 조치는 1995년 8월(글상자 2-1 참고) ④ 미·일 경제조화 중 직접투자와 지재권 분야는 각각 1999년 5월과 1994년 8월 ⑤ 기존 협정 준수 중 판유리 분야는 1995년 1월 타결되었다.[65] 그러나 미·일 포괄경제협의가 미국측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당시 미국측의 주장을 관리무역체제로의 회귀로 보고 특히 수치목표 설정에 대해 강력 반발한 점이다. 즉 일본정부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유무역 원칙이 강화된 시점에서 일본이 미국의 수치목표 요구를 수용하면 이것은 관리무역 체제를 조장함과 아울러 정부가 민간활동이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초래하여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당시 경제학계가 GATT를 통한 통상문제 해결, 우루과이 라운드 하에서의 시장개방 원칙을 중시한 풍조 역시 일본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66]

---

64) 阿部(2011), pp. 92~96.
65) 이 합의내용들은 外務省, 「日米間の新たな経済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枠組み(日米包括経済協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 阿部(2011), p. 99.

표 2-5. 미·일 통상협상 약사

시기	협상	경과 및 일본의 대응
1985~1986년	MOSS	-1985년 특정 분야(전자, 전기통신, 의약품·의료기기, 임산물 등)에서 일본시장 접근 촉진에 관한 MOSS 협의 개시. 1986년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의 일부 자유화, 목재제품 및 컴퓨터 부품의 관세철폐 등에 합의
1989~1990년	미·일구조문제협의(SII)	-1989년 미·일 양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축소를 위한 협의 개시. 1990년 최종 보고서 발표. 일본측 조치: 저축·투자 패턴, 유통(대점법[2] 개정 등), 배타적 상거래 관행(독점금지법 및 그 운용의 강화 등), 계열관계, 가격메커니즘. 미국측 조치: 저축·투자 패턴, 기업의 투자활동과 생산성, 기업행동, 정부규제, 연구·개발, 수출진흥, 교육·훈련
1993~1994년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	-1993년 SII와 기존 협의를 포괄하는 형태로 미·일 포괄경제협의 개시. ① 거시경제정책 ② 미·일 협력분야(Common Agenda) ③ 분야별·구조문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조달(전기통신, 의료기술): 내외 무차별, 투명, 공정, 경쟁적 및 개방적인 정부조달 절차 마련. 일본의 공공부문 조달에서 외국제품(전기통신기기·의료기기) 및 서비스(전기통신·의료)에 대한 시장접근 및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 규제완화 및 경쟁: 보험→상기 미·일 보험협의 참고), 금융서비스→외국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접근 개선, 규제의 투명성과 절차상 보호 개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 확보 조치 강구 • 기타 주요 분야: 자동차·자동차 부품→상기 미일 자동차 협상 참고 • 경제적 조화: 투자→대일(對日) 직접투자 촉진 조치, 지재권(특허)→영어 출원 허용, 이의신청 제도 개선, 조기심사제도 운영 개선 • 기존 협의 및 조치의 실시(판유리): 수입촉진조치, 복층유리·안전유리에 관한 조치, 민간공사에 관한 내외 무차별 조치, 공공사업에 관한 조치, 경쟁정책에 관한 조치
1997~2001년	미·일 규제완화대화[3]	-1997년 상급 실무자급 회의 및 6개의 전문가급 회의(규제완화·경쟁정책 등, 전기통신, 주택, 의료기기·의약품, 금융서비스, 에너지) 개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차례의 '대화' 실시. 각 연도별 공동 현황보고서 발표

표 2-5. 계속

시기	협상	경과 및 일본의 대응
2001~2009년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	-2001년 차관급 경제대화,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 무역포럼, 투자이니셔티브, 재무금융대화, 민관회의 등 6개의 포럼 설치 •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에서는 전기통신, 정보기술, 에너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경쟁정책, 투명성, 법제도 개혁, 상법개정, 유통을 포함한 주요 분야별 협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8회에 걸쳐 '대화' 실시. 각 회마다 요청서를 교환하고 협의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양국 정상에게 제출

주: 1) 슈퍼 301조: 미국 통상법. 미국과의 통상에서 부당한 무역장벽 등이 의심되는 국가를 특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끔 한 규정.
2) 대점법(본명은 대규모소매점포법): 대규모 소매점포의 입지를 규제한 법. 미국은 자국의 대규모 유통업체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법률로 지목, 결국 1991년 5월 법률 개정.
3) 영문명은 US-Japan Enhanced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under the US-Japan Framework for a New Economic Partnership.
자료: 外務省(2012), 「日米通商交渉の歴史(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2) 주요 산업·품목 협의[67]

가) 섬유·철강·컬러TV: 수출자율규제

미·일 '섬유마찰'은 면제품, 합판, 우산대, 금속식기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증한 1950년대로까지 소급되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 섬유업계가 미국 의회에 수출제한법 제정을 요구하자 일본 측이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로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그러나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공화당 후보가 외국산 섬유제품의 수입 제한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미·일 섬유마찰은 재연되었고, 1972년 1월 미·일무역경제합동위원회의 섬유제품 수출자율규제에 관한 협정 체결 요구를 일

67) 1980년대와 19990년대의 미·일 통상마찰 분야는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섬유, 철강, 컬러 TV, 자동차, 반도체 외에도 사진필름·인쇄지, 금속제 배트, 2륜 자동차, 알루미늄, 전기통신, 공작기계, 판유리 등 거의 모든 제조업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나, 지면 제약상 이들 분야의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阿部(2011)를 참고할 것.

본이 수용하게 되었다. 미·일 섬유협상은 오키나와 반환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섬유와 오키나와를 거래한 협상으로도 일컬어지고, 일본정부는 섬유업체에 대한 구제융자 형태로 피해를 보상하였다.[68]

미·일 철강마찰 역시 섬유마찰과 유사한 형태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개되었다. 1968년 미국의 철강업체가 당시 존슨 행정부에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자 미국과 일본·유럽 간 수출자율규제협정(1969년 1월~1971년 8월)이 체결되었고, 수출자율규제 기한이 만료되고나서는 덤핑적발 조치와 같은 수입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75년 6월 이후에는 미국 특수강업체가 '1974년 통상법'의 구제조항(escape clause)에 의거하여 미국정부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철강 수출자율규제를 담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이 미·일 간에 체결되었다. 1976년에는 미국 철강업체의 대일 덤핑제소가 있었고, 당시 카터 미국 행정부는 철강제품이 일정수준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정부가 덤핑조사를 개시한다는 트리거 가격제도(Trigger Price Mechanism)를 1982년까지 도입·운용하기도 하였다. 1984년 레이건 미국 행정부는 그간 신흥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이 증가하자 일본을 포함한 주요 철강수출국에 대해 수출자율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69]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발생한 컬러 TV를 둘러싼 미·일 통상마찰도 당시 주요 현안이었다. 컬러 TV를 둘러싼 통상마찰 역시 1969년부터 미국 업체가 덤핑 제소, 상계관세법, 구제조항, 관세법 337조 등 각종 구제조치를 시작으로 1977년 일본산 컬러TV에 관한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 체결로 일단락되었다는 점은 당시 다른 분야의 통상마찰과 유사한 문맥으로 파악된다. 일본산 컬러TV에 관한 시장질서유지협정은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을 연간 175만 대로 제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 전자업체의 미국 현지생산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이 급감하자 수출자율규제는 3년간 적용되고 종료되었다.[70]

---

68) 近藤(2011), pp. 48~49.
69) 近藤(2011), pp. 49~52.

나)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미국산 부품 구입 확대,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를 둘러싼 통상갈등이 시작된 시점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일본산 소형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부터다.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가 대형·고급차에 주력한 가운데, 1978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산 점유율이 과거 10% 미만에서 18%로 급등하였고 1980년에는 26%로 다시 확대되었다. 당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의 현지생산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1982년에는 미국 노동자가 일본 자동차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하였다. 그 무렵 1975년에는 미국자동차노조(UAW)가 일본산 자동차를 덤핑 제소하였고, 1980년에는 비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해 각하되었으나 포드(Ford)사와 UAW가 공동으로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정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71]

1981년 레이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빅3' 자동차업체의 불황을 배경으로 미국의 대일 자동차 통상압력은 강화되었다. 1981년 1월 레이건 대통령은 자동차 통상협상을 주도할 각료급 TF를 설치하여 일본에게 대미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방침을 이끌어냈고, 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3년간에 걸쳐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연간 160만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정부(통상산업성)는 1981년 5월 3년간에 걸쳐 연간 160만대의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하였고 1984년에는 185만대,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230만대, 그리고 1992년부터 1993년까지는 165만대의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하였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에 걸쳐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72]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대미 수출자율규제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영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대신 일본 자동차업계가 수출 모델을 고급화하고, 1982년 혼다를 시작으로 도요타, 닛산 등이 미국 현지생산을 본격화함으로써

70) 近藤(2011), pp. 51~52.
71) 近藤(2011), pp. 53-54.
72) 近藤(2011), pp. 54~55 및 阿部(2011), pp. 112~113.

수출자율규제를 무력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1971년 일본 이스즈 자동차와 자본제휴를 맺은 미국 GM이 일본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대일 의존 심화 역시 1994년 수출자율규제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73]

미국의 대일 자동차 시장개방 압력[74]은 1990년대 들어서도 무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속되었다.[75] 1992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일 시 합의한 '액션플랜'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업체는 1994년 미국산 부품 구입 목표액을 19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업체의 미국산 부품 구입액이 1986년 25억 달러에서 1993년 155억 달러로 급증한 가운데 1994년 3월 상기 자동차 수출자율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액션플랜의 목표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76]

1993년에 7월 시작된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는 정부조달(전기통신·의료기기), 보험, 자동차(부품포함)를 우선 협상분야로 선정하였는데, 자동차(부품 포함) 분야 협상에서는 1995년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시장 접근 촉진 및 부품의 판매기회 확대에 관해 미·일 양국 정부가 실시해야 할 조치와 일본이 취해야 할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다. 규제완화 조치에는 정비공장의 인증·지정에 관한 규제완화와 구조변경 검사에 관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당시 미국은 포괄경제협의와는 별도로 ① 일본 자동차업체의 북미산

---

73) 近藤(2011), p. 56.

74)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진행된 미·일 쇠고기·오렌지 협상은 미국의 대일 시장개방 압력의 대표 사례다. 1977년 시작된 1차 협상에서는 일본이 1983년 쇠고기 3만 톤, 오렌지 8만 톤, 오렌지 주스 6,500톤 수입에 합의하였고, 1983년 2차 협상에서는 1988년까지 쇠고기 수입을 연간 6,900톤씩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88년의 최종 3차 협상에서는 일본의 대미 수입할당을 폐지하는 대신 관세화하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였다. 즉 1991년 70% → 1992년 60% → 1993년 50%(급증의 경우 25%p 인상). 오렌지는 3년, 오렌지 주스는 4년 내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外務省(2012), 「日米通商交渉の歴史(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p. 1.

75) 1985년부터 진행된 미·일 간 MOSS 협의는 1986년에 자동차부품을 협상분야로 추가하였는데, 일본과 미국에서의 자동차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 간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국 측의 관심은 대일 시장접근 확대로 옮겨갔다. 1987년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일본 자동차업계의 부품조달에 관한 정보공개, 일본 자동차업체의 미국산 부품의 수입 및 현지조달 확대 노력 강화, 차량검사제도의 개선(외국부품 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였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1991년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阿部(2011), p. 113 참고.

76) 阿部(2011), p. 119.

부품 구입 ② 일본 자동차업체의 북미에서의 완성차 생산 ③ 일본 자동차업체의 일본 내에서의 외국산 부품 구입 ④ 미국 자동차업체와 일본 판매업체(딜러) 간 프랜차이즈 계약 확대에 의한 신규 판매거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글상자 2-1 참고).[77]

글상자 2-1. 1990년대 중반 미·일 포괄경제협의와 자동차 통상협상

- 1993년 7월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 일본 측이 산업간 협력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수치 목표 설정을 우선시하여 협상이 수차례 결렬된 바 있음.
  - 일본 측은 자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산 부품구입 계획은 민간의 자율적 조치여서 포괄경제협의의 협의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미국 측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부품 구입 목표액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도로운송차량법상 분해정비나 정비공장 관련 규제가 외국산 자동차 부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 1994년 10월 미국 측의 부품 구입 확대 요구는 상기 수출자율규제 폐지와 함께 무산되었으나, 미국정부는 일본의 보수·수리용 자동차부품 규제[78]에 대해 통상법 301조(1994년 3월 부활)에 의거하여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 이에 일본정부는 포괄경제협의를 중단하였으나 1995년 1월 하시모토 총리가 칸토(M. Cantor) USTR 대표와 회담을 개최하여 첫째 미국산 부품구입 기회 확대, 외국차 취급 딜러, 보수·수리 시장을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 다루어야 할 3대 규제완화 사안으로 확인하고, 둘째 수치목표 및 정부의 책임 밖 사안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재개
- 그럼에도 1995년 5월 양국 각료급 회의에서 미국 측이 재개된 포괄경제협의에서 부품구입에 관한 수치목표 확대를 다시 요구하고 외국차 취급 딜러 수에 대해서도 수치목표를 설정하자고 요구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었고, 상기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일본의 보수·수리용 자동차부품 규제가 외국산 부품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정과 함께 일본산 고급차의 대미(對美) 수출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이에 일본정부는 1995년 1월 출범한 WTO의 분쟁처리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WTO 규범을 위반하는 미국 측의 일방적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GATT 22조에 의거한 협의를 요청
  - 단,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정부에 각자의 미국산 부품 구입 계획(수치)을 제시하는 한편, NAFTA의 부품 현지조달(local content) 기준(1994년 1월~1997년: 50%, 1998년 1월~: 56%, 2002년 1월~: 62.5%)을 충족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측의 태도가 유화적으로 변함.
- 1995년 6월 하시모토 총리와 칸토 USTR 대표가 WTO 규범 준수, 수치목표 배제 원칙 하에서 미·일 자동차 조치*를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하기로 합의

주: * 외국산 자동차의 대일(對日) 시장접근 확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외국산 부품구입 확대, 점사·정비 규제완화.
자료: 阿部(2011), pp. 119~122.

77) 外務省(2012), 「日米通商交渉の歴史(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p. 1.
78) 수리·보수용 자동차부품은 소모부품과 교환부품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일본정부가 2002년 발표한

다) 반도체

미·일 간 반도체 통상마찰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의 자율수출규제(VER)를 요구한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기업들이 정부(통상산업성) 지원하에 당시 최첨단 반도체인 초대형 집적회로(超LSI) 개발에 나선 점, 1978년 일본정부가 특정기계정보산업진흥임시조치법을 공포한 점,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NEC(日本電気),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후지쯔(富士通), 도시바(東芝),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 등 종합전기기계 업체와 통신기기·컴퓨터 제조업체들이 DRAM을 비롯한 반도체 메모리 제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81년말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했던 점 등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79]

1981년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4.2%로 낮추는 작업부터 시작했고, 1982년 4월 신설된 미·일 첨단기술산업 워킹그룹 내 반도체 소위원회는 관세철폐 및 상호 무역촉진, 투자장벽 제거 및 일본 진출 외자기업의 투자촉진책 지속, 기술교류 촉진 등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1984년 5월 미국에서는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에 의거하여 Intel과 Motorola가 각각 일본의 NEC와 히다치(日立)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Intel과 Microtechnology가 64K-DRAM 분야에서 대일 덤핑제소에 나서기도 하였다. 1985년 5월에는 미국 하원에서 자국산 반도체의 일본시장 접근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였고, 6월에는

수리·보수용 자동차 부품의 대일 시장접근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는 타이어,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부품 12개를 대상으로 일본시장이 미국·유럽시장에 비해 규제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주요 논점은 첫째 제조·수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기준(보안기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차량검사 시 자동차에 장착한 상태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둘째 일본의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상 규제로 인해 자동차 검사·점검 횟수 및 항목이 과다하다는 점(단, 1995년 법 개정으로 규제완화 시행), 셋째 자동차 정비사업 진입 규제(단, 1995년 이후 자동차 부품·용품 판매업자나 주유업체 등의 신규 진입 허용. 그럼에도 인증과정에는 규제잔존), 넷째 일본의 경우 자동차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품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다섯째 부품 정보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점, 여섯째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부품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낮다는 점 등이다. 経済産業省(2002), 「対日アクセス実体調査報告書(補修用自動車部品)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5), pp. 1~8 참고.

79) 阿部(2011), p. 123 및 近藤(2011), p. 60.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가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폐쇄적이고 반도체 기업들의 덤핑 행위가 있다고 보고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제소하였다. 결국 1986년 9월 미·일 반도체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협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 반도체 기업의 대일 시장접근 확대와 외국 반도체의 판매지원 및 품질평가 기관 설립, 덤핑 방지책 강구, 즉 대미 수출용 일본 반도체의 가격과 비용 모니터링, 미국정부의 덤핑 조사 시 일본 측의 데이터 제공 협조, 제3국 수출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가격과 비용 모니터링 실시 등이었다.[80]

1987년 4월에는 미국정부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일본 측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산 PC, 컬러 TV 및 전동공구에 대해 100%의 관세(당시 3억 달러 상당)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조치를 전후 자국에 부과된 최초의 경제제재로 받아들이고 GATT 23조 1항에 의거하여 양자간 협의를 요구하였다. 협의 결과 미국이 단계적 해제를 표명했음에도 대일 시장접근 부분(1억 6,400만 달러)은 1991년까지 존속하였고, 나아가 1991년 6월 당시 외국 반도체의 일본 시장점유율이 20%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5년 기한의 미·일 신(新)반도체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 발효와 함께 미국이 부과한 대일 관세조치는 해제되었으나 기존 협정의 대일 시장접근 확대와 덤핑수출 방지 원칙 외에도, 예를 들어 일본정부 대신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특정 반도체에 대해 가격 및 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보관하여 미국정부가 덤핑조사를 행할 때 즉각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강도 높은 덤핑 방지책을 요구하였다.[81]

1991년 미·일 신반도체 협정 체결에 따라 미·일 양국은 4분기마다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외국 제품의 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해 통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진척상황을 측정·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협의를 연 3회 개최하였다. 그 결과 1991년 3/4분기 외국산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은 16.5%

80) 近藤(2011), p. 63 및 阿部(2011), pp. 124~125.
81) 阿部(2011), pp. 126~127.

에서 1995년 4/4분기에는 30%로 확대되었고, 1986년 대비 1994년 신제품의 국제 공동개발 건수도 약 7.5배 증가하였으며, 대형 국제제휴가 다수 성립되었다.[82] 게다가 1980년대 반도체 메모리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던 일본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제약에 묶여 한국, 대만의 'Catch-up'을 허용한데다, 당시 미국이 우위를 점하였던 MPU(Micro Processing Unit)분야에 대한 진입제약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83]

1996년 7월 말 미·일 신반도체협정이 공식 종료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EU와 협력하여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였다. 즉 1995년 9월 미·일 신반도체협정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양자 간 협정체결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은 미국 측의 수치목표 책정이나 일본정부의 시장개입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일 반도체협정과 같은 양자간 협의가 아니라 다자간 협력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당시 EU측은 일본이 배타적인 양자간 합의를 체결하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힘입어 일본(통상산업성)은 미국(USTR)과 반도체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은 첫째, 1999년 7월까지 양국은 일본전자기계공업회(日本電子機械工業会)가 제안한 세계반도체회의(WSC: World Semiconductor Council)를 설립하고, 둘째 반도체 산업·무역에 관한 공통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포럼으로서 1997년 이전에 GGF(Global Government Forum)를 설립하며, 셋째 GATT 규범에 의거하여 반덤핑 방지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84] 미·일 반도체협정의 종결은 10년간 지속된 양자간 협정에 의거한 보호무역주의의 종결이자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 시대의 재개, 그리고 WTO 규범에 의거한 다자간 협조체제의 구축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82) 阿部(2011), p. 128.
83) 近藤(2011), p. 67.
84) 阿部(2011), p. 129.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미·일 경제대화(U.S.-Japan Economic Dialogue)는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재무성)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 통상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제안한 미·일 통상 협의체다. 미국 측에서는 펜스(Mike Pence) 부통령, 일본 측에서는 아소타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고, 2017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이 전개되었다.[85]

미·일 경제대화의 의제는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 측의 제안을 4월의 제1차 협상에서 미국이 수용한 것인데, 향후 협의를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무역·투자 규범, 분야별 협력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86]

1)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의 여부보다는 미·일 경제대화에서 환율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물론 미국 재무부는 2017년 4월과 10월 상·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환율문제를 미·일 경제대화가 아닌 별도의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87] 일본이 환율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비록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현

---

85) 2017년 4월의 제1차 협상에는 미국측에서 부통령 수석보좌관, 안전보장 보좌관, 수석 이코노미스트, 일본측에서는 주미대사, 외무성 심의관, 재무성 재무관, 국토교통성 심의관, 외무성 경제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2017년 10월의 제2차 협상에는 미국측에서 상무장관, 재무장관, USTR 대표, 주일미국대사, 대통령차석보좌관, 부통령특별보좌관, 부통령 안전보장 보좌관 대행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주미대사, 외무심의관, 재무관, 농림수산심의관, 경제산업성 심의관, 국토교통심의관, 외무성 경제국장,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8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pp. 47~70)은 제1차 협상 당시 미·일 경제 대화의 배경, 주요 의제 등에 상술하고 있다.

87) 예를 들어 코무라(高村正彦)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일본은 환율문제에 대해 재무장관 회의에서 말할 것은 말해야 하고, 미·일경제대화는 상호 Win-Win의 경제관계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2017. 2. 20)하였고, 키무라(木村副成) 게이오대학 교수는 "환율 문제와 국제통상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pp. 56~57.

아베내각 출범 이후에는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고 양적완화 역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양적완화를 통해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엔/달러 환율이 80엔에서 110~120엔대로 가빠른 엔화약세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엔화약세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일본의 양적완화가 엔화약세를 유도했다고 비판한 바 있고, 2017년 11월에는 일본 재무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화약세 유도를 제한하는 '환율조항'을 무역협정(FTA)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나섰다.[88]

표 2-6.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1):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2017년 12월 현재)

취지	협의 현황
-G7의 3가지 접근(재정·통화·구조조정 정책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및 지역적 경제·재정 이슈에 공동 대처·협력	- 미국 재무부, 2017년 상·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연속 일본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 - 2차 협의에서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의 적극적 활용 재확인' → 미국이 일본의 양적완화를 용인하였다는 해석 - 미국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 포함 요구. 단 일본 재무성은 반발

자료: 外務省(2017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外務省(2017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外務省(2017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무역·투자 규범

무역·투자 규범 분야에서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미·일 양자간 FTA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2017년 10월의 제2차 미·일 경제대화에서 일본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설명한 반면,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일 FTA 협상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함으로써 FTA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일 FTA 협상 요구에 대해 일본 여론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금은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을 우

88) 「米、対日貿易切り込む」(2017. 10. 18).

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미국 농업계가 TPP 탈퇴로 상실한 수출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조기 미·일 FTA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비판(2017. 1. 23)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내에서도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면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에서 TPP12를 뛰어넘는 자유화(양보)를 요구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89][90]

표 2-7.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2): 무역·투자 규범 분야

(2017년 12월 현재)

취지	협의 현황
- 미국의 TPP 탈퇴를 감안하여 ① 미·일 양자간 프레임워크 논의 ② 일본의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한 지역차원의 진전 계속 추진 ③ 제3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 미·일 FTA: 미국 측이 미·일 FTA 협상에 강한 '의욕' 표명(제2차 미·일 경제대화 및 2017년 11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고노 일본 외무장관의 회담 → 일본은 소극적 자세 견지. 미국의 TPP 복귀를 기대 - 일본이 PHP(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소음·배기가스 검사 간소화에 합의(제2차 미·일 경제대화) - 일본산 감(생과일)과 미국 아이다호州산 감자의 상호 수출금지 해제(2017년 9월) -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 → 합의 실패(제2차 미·일 경제대화) - 일본은 지리적표시(GI) 제도에 대한 투명성·공평성 제고에 합의(제2차 미·일 경제대화) - 일본의 약가(藥価) 인하 '중단' 요구(제1차 미·일 경제대화) → 일본 국내 여론수렴 중

자료: 外務省(2017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外務省(2017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外務省(2017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89) 「日米対話 : 日本, FTAに警戒感.米の主張と平行線」(2017. 10. 18) 및 「米, 対日貿易切り込む」(2017. 10. 18).

90) 2017년 11월 6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미국산 군비물자 구입 확대를 요구하는 등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재차 요구하였지만, 일본 측이 경계하고 있는 미·일 FTA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자동차 분야의 규제완화도 합의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낙관론은 1990년대와 달리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의 최대 표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라는 점, TPP 탈퇴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에 집중하고 있어 미·일 FTA 협상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中村(2017), p. 1 및 「日米対話 : 日本, FTAに警戒感.米の主張と平行線」(2017. 10. 18).

TPP12의 미·일 병행협상은 농축산물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주요 핵심쟁점을 타결한 바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미·일 FTA 협상이 전개될 경우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미국 측의 관세 양허 철회 혹은 후퇴, 일본의 비관세조치 추가, 그리고 농축산물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91][92] [글상자 2-2]와 [글상자 2-3]은 미국을 포함한 TPP 12개국이 2016년 2월 정식 조인한 TPP 협정문에서 자동차 분야와 농업분야를 골라 미·일 병행협상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글상자 2-2. TPP12의 자동차 분야 미·일 병행협상 결과

가. 미국의 대일 관세 양허
- 자동차 부품(수출액 약 2조 엔, 미국의 세율은 주로 2.5%)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한미 FTA 내용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실현함.[93] 즉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 즉시 철폐율을 보면, 미일 TPP에서는 품목 수 기준 87.4%, 수출액 기준 81.3%이고, 한미 FTA에서는 품목 수 기준 83.0%, 수출액 기준 77.5%임.
- 승용차(현행 관세율 2.5%)는 TPP 협정 발효 후 15년째부터 관세율 삭감을 시작하여 20년째에는 1.25%, 22년째에는 0.5%, 25년째부터 철폐. 단 미일병행협상 결과인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규범은 미일 양허율표의 부표에 별도로 제시

나. 비관세조치
- 강제규격 등의 책정 과정 투명성 확보: 자동차 설계 등 실질적인 변경을 요하는 강제규격 등에 대해 의무화까지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설정
- 기준: 일본은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임의규격의 조화를 위해 협력하고, 일부 일본의 안전 기준보다 미국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국토교통성이 인정하는 경우 미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일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PHP(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 일본은 PHP 제도의 운용에서 수입차(제조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PHP 차(PHP 제도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를 일본정부의 재정상 장려조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됨.

91) 2000년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가 종료되자 2001년 10월 미·일 간 자동차 문제를 협의할 미·일자동차협의그룹(ACG)을 설치하였으나 2003년 첫 번째 회의로 중단되었고, 거기에서도 미·일 간 마찰보다는 중국에 관한 의견교환이 주를 이루었다. 山口, 藤城(2017), p. 28.

92) 2017년 3월 미국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는 여전히 자동차분야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증, 일본 고유의 기준 및 테스트 프로토콜, 규제운용의 불투명성(규제도입 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부족), 유통·서비스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는 장애물, 일본이 PHP제도하에서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재정상 장려프로그램 적용 배제 등을 열거하고 있다. 山口, 藤城(2017), p. 30.

글상자 2-2. 계속

- 토지이용규제(Zoning): 일본은 자동차관련시설(유통시설, 차량검사장 등 수리시설)의 설립에 관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정부가 법령을 유지하고, 적용시에는 그 법령을 투명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것.
- 신규 비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프로세스: 미·일 양국은 상대가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관한 비관세조치에 대해 협의를 위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세이프가드 조치

- TPP 협정 일반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 이용 가능 기간(관세철폐 10년 후까지), 발동 회수(복수차례 발동 가능), 발동기간(2년+최장 2년) 등

주: * 일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보통 특정 모델당 연간 2,000~3,000대를 대상으로 하나, 미국은 TPP 협상을 통해 연간 5,000대로 확대하기로 합의(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2014, pp. 153~155 참고).

자료: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p. 9~11 및 山口, 藤城(2017), pp. 29~30.

글상자 2-3. 일본의 농산물 5대 '성역품목' TPP 협상 결과

가. 쌀

- 국가무역품목: 쌀 및 쌀가루 등 → 현행 국가무역제도와 세율(할당외 세율)(쌀: 341엔/kg) 유지. 다만 미국과 호주에 SBS방식*의 국별 수입 쿼터를 설정. 미국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5만 톤에서 13년째 이후에는 7만 톤으로 확대하고, 호주에 대해서는 각각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대. 그리고 쌀 수입량이 일본 국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WTO 합의의 최소접근(Minimum Access) 제도의 운용 방식을 수정하고, 기존 일반수입 일부의 경우 중분종(中紛種)·가공용에 한정하여 SBS 방식(6만 톤)으로 변경할 예정
- 민간무역품목: 쌀 조제품·가공품 등 →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쌀가루 조제품 등은 관세를 5~25%로 낮추고 수입이 적거나 관세율이 낮은 품목 등은 관세를 삭감·철폐

나. 밀·보리

- 밀 → 현행 국가무역제도와 할당외세율(55엔/kg) 유지. 다만 미국, 호주, 캐나다에 SBS방식의 국별 수입 쿼터를 설정. 발효 후 3국 합계 19.2만 톤에서 7년째 이후에는 25.3만 톤으로 확대. 그리고 기존 마크업(Mark-up: 정부가 WTO 합의에 근거하여 수입 시 징수하는 차액)을 발효 후 9년째까지 45% 삭감하고, 신설하는 국별 수입 쿼터 내의 마크업도 같은 수준으로 설정. 국

93) 2016년 2월 TPP 협정이 정식 조인되었을 당시 일본의 대미(對美)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2015년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대수가 약 660만 대이고 이 중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약 160만 대, 즉 미국 현지 판매차의 약 70%가 현지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TPP 협정에서 일본산 자동차부품의 80% 이상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약속"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다(伊吹 2016, p. 11).

별 수입 쿼터에 한해서는 주요 5종목 이외의 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마크업을 9년째까지 50% 삭감한 수준으로 설정. 밀 제품의 경우에는 밀가루 조제품 등에 대해서는 발효 후 4,5만 톤의 TPP 쿼터 또는 국별 쿼터를 신설하고 6년째 이후에는 6만 톤으로 확대하고, 밀 제품에 대한 국가무역제도는 유지. 또한 마카로니·스파게티는 관세를 9년째까지 60% 삭감.

- 보리 → 현행 국가무역제도와 할당외세율(39엔/kg) 유지. 다만 SBS방식의 TPP 수입 쿼터를 설정. 발효 후 합계 2.5만 톤에서 9년째 이후에는 6.5만 톤으로 확대. 그리고 기존 마크업을 발효 후 9년째까지 45% 삭감하고, 신설하는 TPP 수입 쿼터 내의 마크업도 같은 수준으로 설정. 맥아(엿기름)는 현행 TRQ(관세할당수량) 범위 내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의 국별 쿼터를 설정하되, 발효 후 합계 18.9만 톤에서 11년째 이후에는 20.1만 톤으로 확대.

다. 감미자원 작물

- 설탕 → 조당(막설탕)·정제당에 대해서는 현행 당가조정제도[94]를 유지하되, 첫째 고당도(당도 98.5 이상 99.3 미만) 정제용 원료당에 한해 관세를 철폐하고 조정금도 소액 삭감하며, 둘째 신상품 개발용 시험 수입에 한해 기존 제도를 활용한 무관세·무조정금에서의 수입(조당·정제당 500톤)을 허용. 가당(加糖)조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TPP 수입쿼터를 설정하되 발효 후 합계 6.2만 톤에서 품목별로 6~11년 이후에는 9.6만 톤으로 확대.
- 전분 → 현행 당가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첫째 현행 TRQ 범위 내에서 TPP 수입쿼터 7,500톤을 설정하고, 둘째 수입이 적은 전분(cornstarch: 옥수수녹말, 감자녹말) 등에 대해서는 국별 수입 쿼터를 설정하되, 발효 직후 합계 2,700톤에서 품목별로 6~11년 이후에는 3,600톤으로 확대.

라. 소고기·돼지고기

- 소고기 → 관세철폐 모면. 현행 38.5%의 관세율을 발효 직후 27.5%로 삭감하고 10년째에는 20%, 16년째 이후에는 9%로 삭감하되, 세이프가드 조항도 삽입. 세이프가드 발동 수량(연간)은 발효 직후 59만 톤이고 10년째에는 69.6만 톤, 16년째에는 73.8만 톤이고, 세이프가드 세율은 발효 3년간은 현행 세율 38.5%를 적용하고 4년째에는 30%로 삭감하고 11년째에는 20%, 15년째에는 18%, 그 이후에는 매년 1%p.씩 삭감하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다음 년도는 삭감하지 않음. 단, 4년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 않으면 폐지. 그리고 가축질병으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3년 이상 정지되면, 실질적으로 해금이 된 시점으로부터 최장 5년간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음.
- 돼지고기 → 현행 차액관세제도[95]와 분기점가격(524엔/kg)을 유지하되 현행 482엔/kg의 종량세는 발효 직후 125엔/kg으로 삭감하고 10년째 이후에는 50엔/kg으로 삭감. 현행 4.3%의 종가세는 발효 직후 2.2%로 삭감하고 10년째 이후에는 철폐한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수입 급증 시 종량세는 100~70엔/kg, 종가세는 4.0~2.2%로 설정한다.

94) 일본의 당가조정제도(糖価調整制度)는 설탕 소비량(연간 약 230만 톤)의 약 1/3만을 국내 생산량이 충족하고 있는 가운데, 「설탕가격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糖)의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 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의 설탕 원료(사탕무·사탕수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임.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웹사이트 農畜産業振興機構, 「砂糖の価格調整制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9) 참고.

글상자 2-3. 계속(2)

마. 유제품

- 탈지분유·버터 → 현행 국가무역제도와 세율(枠外税率)(탈지분유 21.3%+396엔/kg, 버터 29.8%+985엔/kg 등) 유지. 다만 탈지분유와 버터를 합해서 발효 직후 6만 톤(생유환산)에서 6년째 이후에는 7만 톤(생유환산)으로 확대하는 TPP 수입쿼터(이 쿼터 내에서는 저율의 관세 부과)를 설정. 탈지분유는 발효 직후 20,659톤(생유환산)에서 6년째 이후에는 2,402톤(생유환산)으로 확대하고 버터는 발효 직후 309,341톤(생유환산)에서 6년째 이후에는 45,898톤(생유환산)으로 확대: 일본에서는 이들 유제품에 대한 TRQ 축소 요구가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
- 유청 → 탈지분유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발효 후 21년째까지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기간의 설정과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 치즈 → 모짜렐라(mozzarella), 카만벨(camembert)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체다(cheddar), 고다(gouda), 크림치즈 등은 발효 후 16년째까지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 프로세스 치즈에 대해서는 소량의 국별 수입쿼터, 쉬레드(shred) 치즈 원료용 프레쉬(fresh) 치즈에 대해서는 국산사용 조건부 무관세 쿼터를 설정.

바. 5대 품목 이외의 농산물

- 첫째, 팥과 강낭콩은 수입쿼터 내 관세는 철폐하지만 할당초과 세율은 유지. 곤약 및 파인애플 통조림은 할당초과 세율을 15% 삭감하지만 관세할당제도는 유지. 둘째, 닭고기, 계란, 오렌지 주스,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발효 후 11년째까지 또는 그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 셋째, 경주말, 오렌지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
- 임산물 →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합판(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베트남), 제재(캐나다)에 대해 발효 후 16년째까지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고 세이프가드 조항도 도입. 단, 불법 벌채 목재의 무역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도 합의
- 수산물 → 전갱이, 고등어는 발효 후 12~16년째까지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였고, 참치류, 연어·송어류, 방어, 오징어에 대해서는 11년째까지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 김·다시마 등 해조류는 관세를 15% 삭감. 현행 어업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책결정권을 유지하기로 결정.

95) 차액관세제도란 수입단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 수입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분육의 수입 가격이 64.53~524엔/kg인 경우는 기준 수입가격(546.53엔/kg)과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고, 524엔/kg을 초과하면 4.3%의 종가세를 부과한다. 결국 이러한 차액관세제도 하에서는 수입업자로서는 524엔/kg의 경우가 가장 관세부담이 낮다. 일본 국내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5% 미만이었는데 저렴한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2016년에는 10%로 급증하였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가공용 스페인산 돼지고기(백돈, 카라-)의 도매가격은 덴마크산에 비해 10엔~20엔/kg 싼 640엔/kg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일부 스페인산 고급 돼지고기(이베리코돈)는 3,200엔/kg 전후로 가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수입업자는 이들 고가와 저가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혼합 수입하여 단가를 인상시켜 관세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한 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スペイン産豚肉、輸入増」(2017. 5. 26).

글상자 2-3. 계속(3)

- 주류, 담배 및 소금 → 와인(병)은 8년째, 청주, 소주는 11년째까지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 현재 잠정세율로 무세인 궐련담배(종이)는 협정세율 무세로 정하고, 궐련담배(잎)에 대해서는 11년째까지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 정제염도 11년째까지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

주: *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최소접근(MA) 쿼터 중 일부에 대해 수입업자와 국내 매입자가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입찰방식. 국내 매입자의 입찰참여를 통해 실수요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자료: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p. 5~8.

무역·투자 규범 분야에서 일본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는 일부 진전을 보았다. 제2차 미·일 경제대화에서 일본이 PHP 제도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음·배기가스 검사를 간소화하겠다고 합의하였는데, 현재 '50대에 1대' 비율로 실시 중인 검사 빈도를 모든 국가의 수입차를 대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TPP12 미·일 병행협상에서 합의한, "일본은 PHP 제도의 운용에서 수입차(제조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신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든지 국경에서 높은 세금을 감당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일본의 대미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자,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곧바로 미국에서 향후 5년에 걸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당장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 6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4월에는 다시 13.3억 달러를 투자하여 캔터키주 공장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96]

2017년 9월에는 미국이 일본의 검역체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1986년부터 일본 측의 금수해제 요구를 거부하였던 일본산 감(생과일)의 수입을 허용하고, 일본은 병충해 발생으로 2006년부터 수입 금지를 단행한 아이다호 주(州)산 감자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일본이 2017년 8월 발동한 미국산

96) 山口, 藤城(2017), p. 19.

냉동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해제 문제[97]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98]

한편 로스(Ross) 미국 상무장관은 2017년 4월 제1차 미·일 경제대화에 맞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정부가 약가(藥價), 즉 매년 일본정부(후생노동성)가 정하는 공적의료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의료기기의 공정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약가 인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99] 일본정부는 2014년 성장전략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가의 신약을 중심으로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말 일본 후생노동성이 암환자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연간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고가의 암 면역치료약(오프지이보)의 약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자국 제약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국 제약업계의 요구를 경청하면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통한 일본 내부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100]

3) 분야별 협력: 미·일 경제협력

분야별 협력은 일본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을 '희석화'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협상분야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일방적인 통상압력에서 벗어나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미 통상전략을 전환[101]하고

---

97) 2017년 7월 28일 일본정부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냉동소고기 수입에 대해 현행 38.5%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소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데,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14년 만의 4회째다. 2016년도 일본의 냉동 소고기 수입 중 약 56%가 호주산이고 미국산은 약 33%인데, 일·호주 FTA로 호주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할 수 없다. 「冷凍牛乳輸入制限決定 : 米·カナダ産など対象」(2017. 7. 29).

98) 「日米対話 : 日本, FTAに警戒感.米の主張と平行線」(2017. 10. 18).

99) 「米、薬価制度の見直し要求:高額な新薬値下げ待った」(2017. 4. 21).

100) 「米国の薬価引き上げ要求、懸念も聞きながら議論 = 加藤厚労相」(2017. 9. 22).

101) 2010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Fact Sheet on New U.S-Japan Initiatives'의 협력 어젠다는 ① 미·일 양국의 경제·무역정책에 관한 최근 동향(성장전략, 재해복구, 미국국가수출계획 등) ② 미·일 간 경제협력 관계의 촉진(희토류 협력, 고속철도, ICT 공통원칙 등) ③ 지역·글로벌 과제 협력(WTO 협력, APEC 협력, ACTA 등) ④ 무역원활화·비즈니스환경 정비 및 기타 개별안건(일본측 관심사항, 미국측 관심사항)이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p. 52.

있는데, 현재 일본이 추진 중인 대미 분야별 협력은 2015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일협력에 관한 Factsheet'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단, 당시 협력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기술, 기후변화·환경 4개 분야였으나 현재는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글상자 2-4 참고).

글상자 2-4. 주요 분야별 미·일 협력 현황

가. 인프라

- 미국의 고속철도 계획 참여: 아베 총리는 워싱턴 D.C.-뉴욕(약 360km) 간 고속철도 건설에 일본의 초전도 리니어(마그레브) 기술을 도입하는 구상과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 'Top Sales' 추진
  - 고속철도 분야에서 미·일 협력은 2009년 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訪日) 때 일본 JR 토카이(東海)가 초전도 리니어와 N700계 최신형 신간선 기술을 시연하면서부터 시작
  - 2017년 10월의 미·일 경제대화에서는 인프라정비, 자금조달, 유지·보수,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고속철도, 자율주행차 등 교통분야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보 공유와 필요 시 미·일 철도협력회의, 미·일 해운협의 등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102)]
  - 일본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고속철도 계획: ① 초전도 리니어 도입: 워싱턴 D.C.-뉴욕(약 360km)간. 2020년 이후 개통 예정 ②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샌프란시스코-L.A 등을 연결(약 840km). 2029년 개통 예정 ③ 텍사스 고속철도: 달라스-휴스톤(약 390km). 2022년 개통 예정

나. 에너지

- 대미 LNG 수입: 일본기업이 관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정부 및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을 취득.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LNG 공급은 2016년 이후 개시
  - 일본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LNG 프로젝트: Freeport(Freeport사, 텍사스주), Freeport 확장분(Freeport사, 텍사스주), Sabine Pass(Cheniere Energy사, 루이지애나주), Cameron(Cameron LNG사, 루이지애나주), Cove Point(Dominion사, 메릴랜드주)
  - 2017년 1월 7일 일본은 처음으로 미국산 LNG(쉘가스, Cheniere Energy사)를 수입. 향후 1년 6개월간 총 70만 톤 수입 예정
- 대미 원유 수입: 2015년 12월 18일, 미국에서 원유수출 자유화를 포함한 '2016년도 세출법'이 성립함으로써 미국의 대일 원유 수출이 본격화. 2016년 5월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가 일본에 도착

102) 国土交通省(2017), 「米国運輸省と交通インフラ分野に関する協力覚書に署名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5).

글상자 2-4. 계속

- 2017년 11월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무역개발청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일 경제대화 틀 내에서 '미·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 추진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 미국 무역개발청과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제3국에서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지원, 인프라 조달 제도의 구축지원 및 정보교환에 관한 협력각서에 서명
  - 미·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은 우선 활동계획으로서 원자력기술 개발, 고효율 저배출(HELE) 석탄기술 개발, 천연가스 글로벌 시장 개척, 개도국의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에너지·인프라 개발을 선정하고 해외 중점지역으로서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남부아프리카를 지정[103]

다. 일본 외무성과 미국 주(州)와의 경제·무역 협력

- 일본 외무성과 인디아나주가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 각서 서명(2017.9.12.).[104] 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에 이어 4번째임.
  - 인디아나주 내 일본기업의 고용 확대, 첨단 제조업·소재산업 협력사업 및 공동 R&D, 스마트카·자율주행차 공동개발, 항공기 공동 개발, 인프라 공동개발 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pp. 52~53을 업데이트.

표 2-8.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3): 분야별 협력

(2017년 12월 현재)

취지	협의 현황
상호 경제적 이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분야 모색	-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각서 서명(미국 운송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제2차 미·일 경제대화) • 미·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2017년 11월 정상회담, 미국 무역개발청과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정부(외무성)과 미국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아나주)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 각서 서명

자료: 外務省(2017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外務省(2017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外務省(2017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3) 経済産業省(2017), 「米国との間でエネルギー及びインフラ協力を進めて行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5).

104) 外務省(2017d), 「日本国政府と米国インディアナ州との間の経済及び貿易関係に関する協力覚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5).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1. 일본의 FTA 정책

2017년 7월 현재 일본은 16개의 FTA(다자간 FTA 및 양자간 FTA)를 20개국과 체결(서명 기준)하였다. 그러나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TPP와 TPP 참여국 중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3국을 제외하면 일본은 15개의 FTA를 17개국과 FTA를 체결(발효 기준)한 셈이다(표 3-1 참고). 발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FTA 비율(무역총액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에 지나지 않는다.

표 3-1. 일본의 FTA 체결 현황

(발효기준, 2017년 7월 현재)

	국가·지역	서명·발효 시점	무역비중 (2016년)
1	싱가포르	2002년 1월 서명→11월 발효(2007년 9월 개정 FTA 발효)	-
2	멕시코	2004년 9월 서명→2005년 4월 발효	1.31%
3	말레이시아	2005년 12월 서명→2006년 7월 발효	
4	칠레	2007년 3월 서명→9월 발효	0.56%
5	태국	2007년 4월 서명→11월 발효	
6	인도네시아	2007년 8월 서명→2008년 7월 발효	
7	브루나이	2007년 6월 서명→2008년 7월 발효	
8	ASEAN*	2005년 4월 협상 개시→2008년 8월 모든 국가의 서명 완료→싱가포르·베트남·라오스·미얀마(2008년 12월), 브루나이(2009년 1월), 말레이시아(2009년 2월), 태국(2009년 6월), 캄보디아(2009년 12월), 필리핀(2010년 7월) 등 순차적으로 발효. 인도네시아와는 미발효	15.01%
9	필리핀	2006년 9월 서명→2008년 12월 발효	
10	스위스	2009년 2월 서명→2009년 9월 발효	0.86%
11	베트남	2008년 12월 서명→2009년 10월 발효	
12	인도	2011년 2월 서명→2011년 8월 발효	1.03%
13	페루	2011년 5월 서명→2012년 3월 발효	0.06%
14	호주	2007년 4월 협상 개시→2014년 7월 서명→2015년 1월 발효	3.57%
15	몽골	2012년 6월 협상 개시→2015년 2월 서명→2016년 6월 발효	0.02%

주: * 일·ASEAN FTA(AJCEP)는 먼저 상품무역자유화 분야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고 서비스·투자 분야(외국자본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통신 등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등)에 대한 협상은 2010년 10월 개시, 2017년 11월 타결함.
자료: 外務省, 「我が国の経済連携の取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5).

한국의 67.9%, 미국의 47.5%, EU의 33.0%에 비해 FTA 체결이 순조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의 FTA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역비중이 높은 중국(2016년, 21.59%), 미국(15.77%)과 어떠한 형태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다만 일본은 2013년 4월 EU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하였고,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12차 협상 등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RCEP 역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20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FTA를 체결(발효기준)한 국가·지역은 ASEAN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나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호주(3.57%), 인도(1.03%)를 제외하면 ASEAN이 일본의 거의 유일한 FTA 협상 전략 지역이었음을 시사한다.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1990년대 말까지 일본의 통상전략은 WTO 체제하에서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보건위생조치(SPS) 등 비관세조치(NTM), 서비스 무역과 지재권 보호 분야 등 자신의 관심 분야로 협상 범위를 넓혀가면서 무역통상자유화로 일관하였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NAFTA(1994년)를 체결하고 EU가 경제통합에 가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였다.[105)106)]

105) 高瀨(2003, pp. 13~34)는 GATT 체제가 확립된 이후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농업을 보호하는 통상전략을 취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WTO 체제가 확립됨과 동시에 FTA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WTO 전략을 고수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일본정부의 경직된 통상전략을 뜻하며, 그 이유가 일본 고유의 '집단주의'와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화'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일본의 집단주의란 메이지 유신 이후의 '품의제(稟議制)'가 상징하듯이 언뜻 'bottom-up' 방식의 민주주의적 행정으로 보이지만 실은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하면서도 리더십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며, 정부부처간 '칸막이 문화'는 각 부처가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조직의 이해만을 앞세운 나머지 제3자의 비판이나 참여, 경쟁을 극도로 꺼려하는 문화를 뜻한다. 일본정부가 FTA 전략을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수립한 것은 이와 같은 집단주의와 칸막이 문화라는 일본의 관료시스템 특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1999년 일본정부가 결국 FTA 전략을 고심하게 된 배경은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가 미국·캐나다 이외의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조치를 폐지함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대일(對日) 수입액/전체 수입액)이 1993년 6.0%에서 1998년에는 3.6%로 점점 하락하자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경계심'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107]

일본정부가 FTA 정책[108]으로의 통상정책 전환을 표명한 것은 1999년 5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이 발행한 「통상백서(通商白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의 지역통합 전략은 GATT·WTO와의 정합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유로 APEC에만 방점을 두었지만, FTA를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WTO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보완하는 흐름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FTA를 통한 양자간·지역간 규범 정비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109]

일본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는 1999년 12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전제로 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로 나타났고 일·싱가포르 FTA(JSFTA)(2002년 1월 타결)는 일·멕시코 FTA(2004년 9월 타결, 2005년 4월 발효), 일·말레이시아 FTA(2005년 12월 타결, 2006년 7월), 일·필리핀 FTA(2006년 9월 타결, 2008년 12월 발효), 일·태국 FTA(2007년 4월 타결, 2007년 11월 발효) 등 향후 일본의 FTA 협상에서 기본 템플릿으로 사용되었다.[110][111]

---

106) 尾池(2006), pp. 25~26.

107) 尾池(2006), pp. 25~26.

108) 일본정부는 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용어 대신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제휴협정, 経済連携協定)를 사용한다. FTA는 국경조치의 철폐, 즉 상품 무역에서의 관세철폐와 서비스 무역에서의 외자 규제 철폐를 추구하는 대신 EPA는 투자, 지재권, 경쟁정책,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에 관한 규범과 제도정비, 인재육성, 기술이전 등에 관한 협력도 포괄하는 '21세기 국제법' 혹은 'FTA+α'라는 취지에서 그렇다(尾池 2006, p. 24 및 水田 2008, p. 179).

109) 通商産業省(1999), pp. 293~294, 재인용: 水田(2008), pp. 176~177.

110) 일·싱가포르 FTA의 기본 구성을 보면 협력 안건들을 별도의 장(章)(예: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력,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인재육성, 중소기업, 방송, 관광)으로 독립시켰을 뿐 상기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상품 무역,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상호인증, 서비스무역, 투자, 자연인 이동,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협력,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었다. 尾池(2006), pp. 27~28 참고.

111) 水田(2008), p. 178 및 尾池(2006), pp. 27~28.

2000년대 들어 일본의 FTA 정책에 환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2002년 11월 중국의 ASEAN과의 FTA(ACFTA) 체결이다. 2000년 9월 일본정부는 ASEAN이 제안한 FTA에 관한 공동연구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ASEAN과 FTA를 체결하였던 것이다. 중국이 ASEAN과의 FTA 체결 경쟁에서 일본을 앞섰던 배경으로는 첫째, 중국, ASEAN 모두 개도국이어서 GATT 24조가 요구하는 지역무역협정(RTA) 요건보다 매우 탄력적인 FTA 체결이 가능했다는 점, 즉 이에 따라 ACFTA는 ASEAN의 관세인하 트랙을 국가·품목에 따라 정상트랙(normal track)과 민감트랙(sensitive and 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나누어 관세인하 협정을 비교적 빨리 타결하였다. 그리고 메콩 하류지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FTA에 포함하여 중국과 관련 ASEAN 국가들의 상호 윈윈(win-win)을 유도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이 ASEAN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관세를 우선적으로 인하하는 'Early Harvest'를 도입[112]한 점은 일본에게 '충격'이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체결이라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 양국 간 경쟁관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113]

2000년대 초반 ASEAN과의 FTA 체결을 둘러싼 한·중·일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외무성)는 2002년 10월 '일본의 FTA 전략'을 발표하고 동아시아(한·중·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FTA 우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 EU와 함께 3대 경제권 중 하나이지만, 한국 16.1%(전산업 단순평균), 중국 10.0%, 태국

112) Early Harvest란 ACFTA의 기본합의하에서 중국과 ASEAN 양측이 2003년 10월부터 HS 07-08(야채, 과일)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 1월 이후에는 HS 01-06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우선적으로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은 그 외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2005년 7월부터 시작하였고, 2007년 7월에는 '서비스무역 협정'이 발효되었고, 2009년 8월에는 투자협정에 서명하였다.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タイ: WTO·他協定加盟状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113) 小林(2008), pp. 105~109 및 Sonya Chum(2014), pp. 226-227.

25.8%, 인도네시아 37.5% 등 일본(2.9%)보다 여전히 관세율이 높아 FTA를 통해 이러한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WTO 가입 직후인 점을 감안하여 WTO에 정합적인 국내체제 정비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당분간은 중국의 WTO 협정 이행 상황, 일·중 관계 전반, ASEAN이나 한국과의 FTA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114]

일본이 FTA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당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가 내각부에 설치한 특별 각료회의가 2004년 12월 채택한 일종의 FTA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즉 ASEAN+3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역·투자·금융 분야를 비롯하여 정치·안전보장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역통합을 염두에 둔 지역공동체 구상이다. 이 기본방침을 통해 일본정부는 FTA야말로 WTO를 보완함과 동시에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구조개혁 촉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굳힘과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지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기본방침은 일본정부가 FTA 협상 상대 국가·지역을 결정하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수출 확대 및 서비스무역·투자 확대라는 FTA의 일반적 경제효과는 물론 지재권 보호 등 일본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에 주목하고 있는 점, 둘째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주목하고 있는 점, 셋째 상대국·지역이 일본의 민감품목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나 상대국이 WTO나 FTA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 FTA의 실현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115]

---

114) 外務省(2002), 「日本のFTA戦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5).

115) 経済連携促進関係閣僚会議(2004), 「今後の経済連携協定の推進についての基本方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5).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009년 9월 일본 전후(戰後) 최초의 정권교체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FTA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TPP 참여가 최대 통상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일본정부가 한·중·일 FTA와 RCEP[116]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CEPEA[117](ASEAN+6) 추진을 강조하였는데, 이 때는 한·미 FTA(2007년 6월 서명)나 한·EU FTA(2009년 10월 가서명)와 같이 한국이 거대시장과 FTA를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2010년 3월에는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자 일본이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일본이 메가 FTA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한국, 중국에 비해 일본의 FTA 체결 범위가 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본정부(경제산업성)가 2013년 발행한 '통상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FTA를 체결(발효기준)한 국가·지역과의 무역이 전체 일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FTA 비율'은 2012년 기준 18.9%로서, 한국(35.4%), 미국(39.4%), EU(28.6%)는 물론 중국(25.6%)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118] 이에 일본정부는 2013년 6월 각의결정한 '성장전략'을 통해 TPP(2013년 4월부터 협상 참여), RCEP(2013년 5월 협상 개시), 한·중·일 FTA(2013년 3월 협상 개시), 그리고 일·EU FTA(2013년 4월 협상 개시) 협상을 조기 타결하여, 2018년까지 'FTA 비율'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19]

---

116)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17)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118) 経済産業省(2013), p. 60.
119) 首相官邸(2013), p. 88.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일·ASEAN FTA(이하, AJCEP)는 우선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협상으로 개시하여 2008년 4월 협상을 타결하였고,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9개 국가가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효된 상태다. 서비스·투자 협정은 2017년 11월 협상을 타결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ASEAN과는 별도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도 하다. 한·ASEAN FTA 역시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20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6년 8월 협상을 타결하였고 서비스 및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체결되었고,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베트남(2015년 12월 발효)과는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다.

1) 관세양허

AJCEP 협정문은 전문(preamble)과 10개 장(章)[120], 5개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4장(위생식물검역조치, SPS)과 제5장(임의규격, 강제규격 및 적합성 평가절차)은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이고, 제6장(서비스 무역)과 제7장(투자)은 추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하였고, 지재권, 경쟁정책,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 일부 규범이 독립된 장(章)이 아닌 경제협력 장(章)에 포함된데다 정부조달, 자연인의 이동은 아예 누락됨으

120) 제1장 총칙.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규정.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SPS). 제5장 임의규격, 강제규격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6장 서비스 무역.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분쟁해결. 제10장 최종 규정.

로써 사실상 제2장(상품 무역)과 제3장(원산지 규정), 제8장(경제협력)[121]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122][123]

AJCEP 협상에서 일본은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할 때 90%의 상품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고 발효 후 10년 이내에 9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들 관세철폐율은 무역액 기준인데, 품목 수(tariff line, HS6 단위) 기준으로는 86.6%다. ASEAN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금액, 품목 수 기준으로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의 상품에 대해 15년 이내,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마찬가지로 85%의 상품에 대해 18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124]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JCEP은 품목 수 기준으로 여타 일본의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자유화율이 낮은데, 한·미 FTA(한국: 98.2%), 한·EU FTA(한국: 98.1%), 미·호주 FTA, 중·칠레 FTA 등 다른 국가의 FTA보다 자유화율이 훨씬 낮다. AJCEP의 자유화율(품목 수 기준)이 일·필리핀 FTA(일본: 88.4%), 일·태국 FTA(일본: 87.2%), 일·말레이시아 FTA(일본: 86.8%), 일·인도네시아 FTA(86.6%) 등 ASEAN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도 눈에 띈다. 이처럼 일본의 FTA에서 자유화율이 낮은 이유는 일본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WTO에서 FTA로 통상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음에도 '농업 보호'라는 기존 통상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HS 9-digit 기준의 약 9,000개 품목(tariff lines) 중에서 일본정부가 FTA 협상에서 아예

121) AJCEP의 경제협력 장(章)은 무역 절차, 비즈니스 환경, 지식재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인재육성, 중소기업, 관광 및 접객, 운송 및 물류관리, 농업·어업·임업, 환경, 경쟁정책, 기타 분야 등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菅原 2008, p. 7).

122) 2014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대한 구체적 비교는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4), pp. 70~79를 참고할 것.

123) 菅原(2008), pp. 2~8.

124) 菅原(2008), p. 4.

'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철폐를 단행하지 않았거나, 관세인하나 관세할당(TRQ)은 실시하였으나 관세철폐를 전혀 단행한 적이 없는 품목이 약 940개인데, 이 중 850개 품목이 농림수산품이다.[125)]

그림 3-1. 일본의 기체결 FTA의 자유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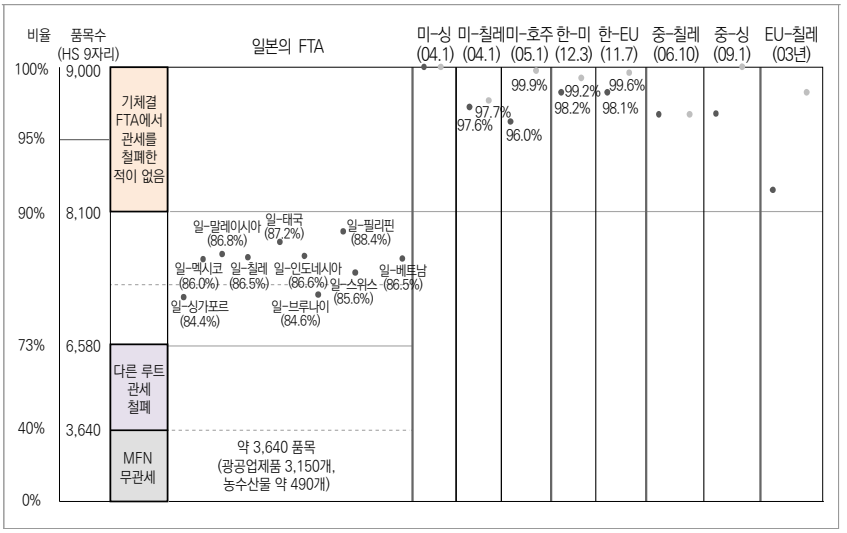

자료: 別所(2013), p. 12.

일본정부는 AJCEP 외에도 ASEAN 국가와의 양자간 FTA를 통해 자국 공산품의 수출확대에 주력하였는데,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말레이시아 FTA, 일·태국 FTA, 일·인도네시아 FTA, 일·필리핀 FTA, 일·베트남 FTA에서 거의 예외 없이 철강,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ASEAN 각국의 고율의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의 반대급부로서 일본정부는 ASEAN 각국에 대해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고 경제협력 형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25) 別所(2013), p. 12.

표 3-2. 일본의 ASEAN 양자간 FTA: 공산품 시장접근 분야

FTA 상대국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일본의 거의 모든 광공업 수출품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철폐 • 말레이시아는 일본에 대해, · 철강 → 사실상 모든 철강·철강제품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 · 자동차 → 3,000cc 초과 승용차는 2008년부터 0~5%로 인하 후 2010년 철폐. 2,000~3,000cc 승용차/3,000cc초과의 다목적차/20톤 초과의 트럭과 버스는 2009년까지 단계적 인하 후 2010년 철폐 · 자동차부품 → 현지조립차(CDK)용 부품은 즉시 철폐, 그 외 부품은 2008년부터 0~5%로 인하 후 2010년 철폐. • 일본은 말레이시아에 대해 자동차분야 협력 약속
태국	- 일본, 태국 거의 모든 광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관세철폐. • 태국은 일본에 대해, · 철강 → 일본의 수출량 중 약 1/2이 즉시 관세철폐 혜택: 전체 수출량 364만 톤(2004년 기준)의 25%는 즉시철폐, 열연강판용 철강 95만톤은 무관세 · 자동차 → 3,000cc 초과 승용차는 세율을 발효 4년째까지 80%에서 60%로 인하. 그 이후는 추가협상. 3,000cc 이하의 승용차는 발효 6년째에 재협상 · 자동차부품 → 세율 20% 초과 품목은 첫해에 20%까지 인하하고 5년 후에 관세철폐. 세율 20% 이하의 품목은 5년 후 관세철폐 • 일본은 태국에 대해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 제공. 일본·태국 철강산업 협력 프로그램, 자동차인재육성기관 프로젝트, 섬유 및 섬유제품 협력 프로그램 등
인도네시아	- 일본은 거의 모든 광공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인도네시아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 •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대해, · 철강(관세율: 0~20%) →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건설기계, 에너지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고급강재에 대해 관세 부적용 조치(특정용도면세제도 적용) · 자동차 → 3,000cc 초과 승용차는 2012년까지 관세철폐. 기타 완성차(버스, 트럭 포함)은 대부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 자동차부품(관세율: 0~60%) → CDK를 비롯하여 대부분 2012년까지 관세철폐 · 전기·전자기기(관세율: 0~15%): 즉시철폐, 또는 대부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산업협력 약속(제조업개발센터·이니셔티브)
필리핀	-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 • 철강 → 대일(對日) 수입량 60% 이상에 대해 즉시철폐 • 자동차 → 3,000cc 초과 승용차(관세율: 30%), 버스·트럭은 2013년까지 관세철폐. 나머지는 단계적 인하 후 재협의 • 자동차부품 → 필리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은 즉시 내지 10년 이내 철폐. 생산되는 부품은 2013년까지 철폐

표 3-2. 계속

FTA 상대국	주요 내용
베트남	- 베트남은 일본에 대해, • 철강 → 압연강판(관세율: 0%) 현행유지, 냉연강판(관세율: 3~7%) 15년에 걸쳐 관세철폐, 아연도금강판(관세율: 5~12%)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관세율: 10~20%) 등 주요부품 5~15년에 걸쳐 관세철폐 • 전기·전자기기: 컬러TV(관세율: 40%) 8년에 걸쳐 관세철폐, 디지털카메라(관세율: 10%) 4년에 걸쳐 관세철폐

자료: 外務省(2006a),「日·マレーシア経済連携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p. 2; 外務省(2007a),「日·タイ経済連携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p. 2; 外務省(2007b),「日·インドネシア経済連携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p. 3; 外務省(2006b),「日·フィリピン経済連携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p. 2; 外務省(2008),「日·ベトナム経済連携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p. 2.

2) 누적 원산지 규정

일본의 기체결 FTA 중 일본기업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생산네트워크 확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AJCEP이 거의 유일하다. 즉 일본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도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나, 예를 들어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일·태국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시 그 제품을 태국에서 가공하여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때에는 일·말레이시아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AFTA의 누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A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AFTA의 누적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40% 이상이 ASEAN 역내에서 창출되거나(RVC 40%) 4자리의 관세분류 변경기준(CTC)을 충족해야 하는데,[126] 태국 내 일본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소재가 고부가가치인 경우에는 A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일본이

126) AFTA의 상품무역협정(ATIGA)이 규정하는 누적 원산지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2016), pp.10~17을 참고할 것.

ASEAN과 체결한 AJCEP을 활용하면 일본 내 기업은 태국으로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를 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조립한 후 말레이시아로 완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쉬울 것이다. 박형 TV를 제조하는 일본기업이 태국에서 일본산 패널을 수입·조립하여 ASEAN 역내인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가 AJCEP에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ASEAN 역내 일본기업(부품·소재)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이며, ASEAN 역내에서 일본산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제품(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역외에서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JCEP의 원산지 규정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일본 국내거점과 ASEAN 역내거점 간 분업체제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127]

AJCEP의 원산지규정은 특정 제품이 몇 개 국가의 공정과정을 거쳐 제조된 뒤 수출·입이 이뤄지는가라는 관점에서, ① 완전생산품 ②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하는 제품 ③ 실질적 제조변경이 이뤄지는 제품(품목별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①과 ②는 각각 농산물·광물자원처럼 1개국만이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거나 공산품이더라도 역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원산지를 규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 문제는 ③ 실질적 제조변경이 이뤄지는 제품, 즉 역외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여하는 제품인데, 이 경우 ① 관세분류변경기준(CTC) ② 부가가치기준(RVC) ③ 가공공정기준(SP)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규정한다. 단, CTC는 수입 원료·부품과 완성품의 관세분류 번호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고, RVC는 각 국에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여부, SP는 어느 국가에서 특정 제조·가공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128]

---

127) 菅原(2008), p. 4.

128) 財務省, 「日ＡＳＥＡＮ包括的経済連携協定原産地規則の概要」(平成20年11月.平成23年7月一部改訂), 関税局業務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3), pp. 16~23 참고.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1) 일·ASEAN 무역 현황

일본의 ASEAN과의 무역액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음 연도 무역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그림 3-2 참고). 특히 AJCEP이 발효된 2008년에는 수출·입이 전년 대비 각각 18.8%, 23.5%가 증가함으로써 2,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12년 2,58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무역에서 ASEAN의 비중은 2000년 14.9%에서 2007년 13.0%, 2012년에는 15.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ASEAN의 무역액은 2012년을 정점으로 2016년 1,88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일본은 2015년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 감소는 ASEAN 지역을 대상으로 나타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의 총 무역액은 2000년 8,579억 달러에서 2012년 1조 6,8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

그림 3-2. 일본·ASEAN 무역 현황

(단위: 10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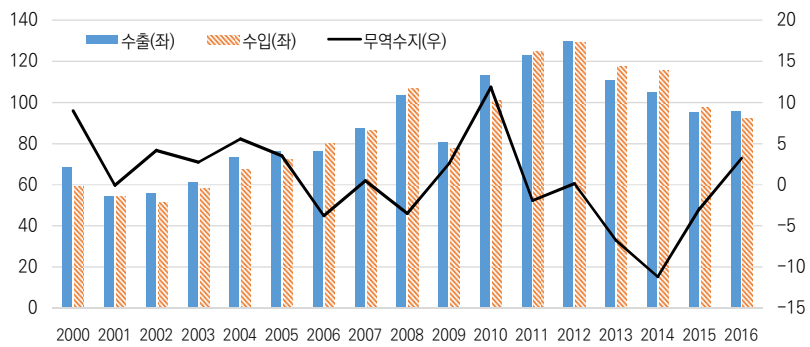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증가율	-20.8	2.7	9.8	19.1	4.3	0.5	14.0	18.8	-22.3	40.3	9.0	5.2	-14.2	-5.7	-9.2	0.6	
수입 증가율	-8.7	-5.1	13.4	15.2	7.7	10.5	8.1	23.5	-27.3	29.7	23.7	3.5	-8.9	-1.6	-15.5	-5.6	

자료: IMF dat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3).

나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의 무역에서 ASEAN의 비중은 2012년 이후에도 15%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기간 일본의 ASEAN과의 무역 감소는 일본의 전체 무역 감소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2008년 AJCEP 발효 이후 2012년까지 일본의 무역에서 ASEAN의 비중이 증대했고, 2012년 이후 일본의 전체 무역이 감소했음에도 ASEAN의 비중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AJCEP이 일본의 ASEAN과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3. 일본의 대(對)ASEAN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HS code	품목	2000	2005	2007	2008	2009	2012	2014	2015	2016
	총 수출	68,487	75,575	87,161	103,455	80,393	129,385	104,628	94,994	95,585
01-05	동물	48	145	216	300	216	432	421	427	387
06-15	식물	58	54	62	74	81	146	118	101	118
16-24	조제식품	124	136	164	223	222	299	316	334	409
25-26	광물	58	85	125	149	165	240	245	258	219
27-27	광물성 연료	220	388	1,805	4,782	3,956	3,752	3,695	2,647	1,867
28-38	화학제품	3,592	4,509	5,491	6,023	4,687	6,530	6,185	5,511	5,654
39-40	고무·플라스틱	2,884	3,452	4,148	4,790	4,064	6,523	5,792	5,113	5,410
41-43	원피·가죽 등	29	37	35	49	31	94	104	86	110
44-49	목재	570	611	767	870	667	880	912	876	997
50-63	섬유·의류	1,086	1,047	1,145	1,307	1,203	2,020	1,954	1,809	1,885
64-67	신발	9	6	8	10	8	17	19	18	21
68-71	돌·도기·유리	1,508	1,752	2,906	3,554	2,937	4,155	3,594	3,968	4,152
72-83	금속	5,968	10,157	12,610	16,613	10,793	19,801	16,563	13,921	13,069
84-85	기계	39,622	36,878	39,626	43,261	32,616	52,889	40,245	35,688	35,218
86-89	운송장비	5,905	8,530	9,577	12,211	10,551	18,712	13,050	12,756	13,313
90-92	정밀기기	3,298	3,017	2,923	3,517	2,996	6,365	4,961	4,449	4,871
93-96	무기·잡품	452	407	480	541	454	768	585	584	680
97-99	기타 제품	3,055	4,366	5,072	5,180	4,746	5,763	5,870	6,450	7,204

주: 음영은 최근 3년 일본의 대ASEAN 수출 상위 5개 품목임.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표 3-4. 일본의 대(對)ASEAN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HS code	품목	2000	2005	2007	2008	2009	2012	2014	2015	2016
	총 수입	59,582	72,587	87,112	106,968	77,897	129,172	115,830	97,873	92,421
01-05	동물	2,615	2,067	1,942	2,098	1,958	2,526	2,136	1,887	1,885
06-15	식물	1,167	1,592	1,963	2,702	2,471	3,170	2,855	2,685	2,682
16-24	조제식품	1,723	2,501	2,777	3,679	3,628	5,563	4,960	4,753	4,810
25-26	광물	1,138	2,145	3,718	2,559	3,329	2,511	2,326	2,524	2,053
27-27	광물성 연료	14,593	20,210	24,494	39,757	22,342	47,272	35,144	21,217	14,374
28-38	화학제품	1,275	1,988	2,572	3,258	2,622	5,581	4,687	4,419	5,127
39-40	고무·플라스틱	1,796	3,501	4,500	5,768	3,908	6,996	6,249	5,402	5,317
41-43	원피·가죽 등	157	154	165	188	193	425	651	733	855
44-49	목재	3,628	3,563	3,746	3,619	3,101	4,792	5,165	4,424	4,374
50-63	섬유·의류	1,926	1,962	2,155	2,526	2,599	5,490	6,959	7,355	7,865
64-67	신발	317	529	579	601	600	1,152	1,407	1,559	1,807
68-71	돌·도기·유리	691	1,076	1,506	1,706	1,277	1,714	1,633	1,551	2,059
72-83	금속	1,731	2,835	5,915	5,341	3,235	4,824	5,107	4,450	4,160
84-85	기계	22,304	22,281	23,124	24,101	19,099	25,379	24,944	23,874	23,929
86-89	운송장비	392	805	1,233	1,625	1,082	2,920	2,951	2,478	2,690
90-92	정밀기기	1,244	1,661	1,877	2,163	2,045	3,089	3,354	3,620	3,765
93-96	무기·잡품	1,425	1,421	1,516	1,727	1,661	2,167	2,347	2,269	2,412
97-99	기타 제품	1,460	2,295	3,330	3,553	2,747	3,601	2,955	2,675	2,258

주: 음영은 최근 3년 일본의 대ASEAN 수입 상위 5개 품목임.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일본의 ASEAN과의 무역 추세는 품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3]을 보면 수출의 경우 화학제품, 금속, 기계, 운송장비와 같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은 물론 동물, 식물, 광물성 연료 등 다수의 품목이 2012년 전후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의 수입에서도 일본의 주요 수입품인 광물성 연료, 고무·플라스틱을 포함해 동물, 식물, 고무·플라스틱의 추세는 수출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제식품, 기계와 같이 2012년을 전후로 감소하되 그 감소폭이 적은 품목도 있으며 섬유·의류, 원피·가죽, 신발, 정밀기기와 같이 지속

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는 품목도 있어 일본의 대ASEAN 무역의 분석에 품목별 분석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이 ASEAN 회원국과 체결한 FTA가 철강, 자동차 및 그 부품, 전자기기의 대ASEAN 수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려 하고 있어 이러한 상품의 교역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일·ASEAN FTA와 무역 추이: 통계분석

[표 3-5]는 먼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의 총수출액을 대(對)세계와 대(對)ASEAN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다음, 일본이 AJCEP 및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에서 중요하게 다룬 일본의 주요 수출품 즉,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만을 대상으로 ASEAN에 대한 수출 추이와 전세계 수출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3-5]에서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일본이 체결한 AJCEP과 다수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가 대부분 2008년에 발효되었다는 점인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다시 말해, 1996~2007년과 2008~16년 두 기간 사이에 일본의 대ASEAN 수출과 대세계 수출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3-5. 일본 주요 품목의 대(對)ASEAN 수출 현황

(단위: 10억 달러, %, %p)

		1996	2001	2007	2008	2012	2016	CAGR(%)[2] 96-07(a)	CAGR(%)[2] 08-16(b)	(b)-(a) %p.
총수출	ASEAN	73.4	54.3	87.2	103.5	129.4	95.6	1.57	-0.98	-2.55
	전세계	410.9	403.3	714.3	781.4	798.6	644.9	5.15	-2.37	-7.53
철강 (72)[1]	ASEAN	3.5	2.5	6.4	9.7	11.0	7.5	5.76	-3.20	-8.95
	전세계	12.3	11.2	30.1	39.2	39.5	24.5	8.47	-5.70	-14.17
자동차 (87)[1]	ASEAN	9.0	4.4	7.9	10.1	16.9	11.6	-1.12	1.69	2.81
	전세계	74.1	81.8	160.3	172.2	162.9	141.8	7.27	-2.40	-9.67
전자기기 (85)[1]	ASEAN	23.1	18.2	21.9	22.3	23.7	17.4	-0.49	-3.03	-2.53
	전세계	95.2	90.4	134.5	138.1	125.7	98.0	3.20	-4.20	-7.39

주: 1) 철강(72), 자동차(87), 전자기기(85)는 HS 2단위 코드명을 의미함.
2) CAGR: 해당기간의 연평균 수출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2).

분석 결과, 첫째 일본의 대ASEAN 총수출은 AJCEP 등 ASEAN과의 FTA가 발효된 시점(2008년)을 전후로 대세계 총수출에 비해 감소폭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수출감소,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출감소 기조 속에서 ASEAN과의 FTA 체결은 다소 수출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08년을 전후로 일본의 대세계 총수출은 전기(1996~2007년) 5.15%에서 후기(2008~16년) -2.37%로 연평균증가율이 7.53%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ASEAN 총수출은 전기 1.57%에서 후기 -0.98%로 연평균증가율이 2.55%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대ASEAN 주력 수출품목이자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ASEAN 지역·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관세인하·철폐에 주력했던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 품목에서도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철강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세계 총수출은 전기(1996~2007년) 8.47%에서 후기(2008~16년) -5.70%로 연평균증가율이 무려 14.17%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ASEAN 총수출은 전기 5.76%에서 후기 -3.20%로 연평균증가율이 8.95%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대세계 총수출이 전기(1996~2007년) 7.27%에서 후기(2008~16년) -2.40%로 연평균증가율이 9.67%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ASEAN 총수출은 전기 -1.12%에서 후기 1.69%로 연평균증가율이 2.81% 포인트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는 대세계 총수출이 전기(1996~2007년) 3.20%에서 후기(2008~16년) -4.20%로 연평균증가율이 무려 7.39%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ASEAN 총수출은 전기 -0.49%에서 후기 -3.03%로 연평균증가율이 2.53%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표 3-6]은 일본과 ASEAN 지역·국가 간 FTA 체결 시 일본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한 농축수산물과 대ASEAN 양대 수입품목, 즉 전자기기와 광물성 연료를 대상으로,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8년 ASEAN 지역·국가와의

FTA 발효 시점을 전후로 대세계와 대ASEAN 수입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3-6. 일본 주요 품목의 대(對)ASEAN 수입 현황

(단위: 10억 달러, %, %p)

		1996	2001	2007	2008	2012	2016	CAGR(%)[2) 96-07(a)	CAGR(%)[2) 08-16(b)	(b)-(a) %p.
총수입	ASEAN	52.5	54.4	87.1	107.0	129.2	92.4	4.70	-1.81	-6.51
	전세계	349.2	349.3	622.2	762.5	886.0	606.9	5.39	-2.81	-8.21
농축수산물 (1~15)	ASEAN	4.3	3.4	3.9	4.8	5.7	4.6	-0.88	-0.62	0.26
	전세계	42.0	20.2	19.1	22.3	26.6	22.1	-6.91	-0.06	6.85
전자기기 (85)	ASEAN	7.9	12.0	15.5	16.1	17.1	16.8	6.34	0.50	-5.84
	전세계	36.4	44.6	72.8	76.8	96.3	89.4	6.50	1.92	-4.58
광물성 연료(27)	ASEAN	13.6	13.1	24.5	39.8	47.3	14.4	5.50	-11.94	-17.44
	전세계	60.9	70.4	172.8	267.8	302.5	110.9	9.95	-10.44	-20.39

주: 1) 농축수산물(1~15), 전자기기(85), 광물성 연료(27)는 HS 2단위 코드명을 의미함.
2) CAGR: 해당기간의 연평균 수입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2).

분석 결과, 첫째 일본의 대ASEAN 총수입은 AJCEP 등 ASEAN과의 FTA가 발효된 시점(2008년)을 전후로 대세계 총수입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완화된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계열 데이터 한계로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완화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즉, 일본의 대세계 총수입은 전기(1996~2007년) 5.39%에서 후기(2008~16년) -2.81%로 연평균증가율이 8.21%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ASEAN 총수입은 전기 4.70%에서 후기 -1.81%로 연평균증가율이 6.51% 포인트 하락하였다.

둘째 일본과 ASEAN 지역·국가 간 FTA 체결 시 일본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한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FTA 체결로 수입 감소 완화 효과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대세계 농축산물 수입이 전기(1996~2007년) -6.91%에서 후기(2008~16년) -0.06%로 연평균증가율이 6.85% 포인트 증

가한 가운데, 대ASEAN 수입은 전기 -0.88%에서 후기 -0.62%로 연평균증가율이 0.26% 포인트 만회하는 데 그쳤다.

셋째 일본의 대ASEAN 양대 수입품목인 전자기기와 광물성 연료의 경우에도 일본과 ASEAN 지역·국가 간 FTA 체결이 대일 수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대세계 전자기기 수입은 전기(1996~2007년) 6.50%에서 후기(2008~16년) 1.92%로 연평균증가율이 4.58% 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대ASEAN 수입은 전기 6.34%에서 후기 0.50%로 연평균증가율이 5.84% 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세계 광물성 연료 수입도 전기(1996~2007년) 9.95%에서 후기(2008~16년) -10.44%로 연평균증가율이 20.39% 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대ASEAN 수입은 전기 5.50%에서 후기 -11.94%로 연평균증가율이 17.44% 포인트 감소하였다.

3) 일·ASEAN FTA와 무역 추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앞 소절의 통계분석은 일본과 ASEAN 지역·국가 간 FTA 체결이 일본의 대ASEAN 수출 감소를 완화하는 데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론하는 데는 유용하나, 엄밀한 통계분석을 결여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일본과 10개 ASEAN 회원국 간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본의 기체결 7개 양자간 FTA(일·싱가포르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필리핀 FTA, 일·태국 FTA, 일·인도네시아 FTA, 일·브루나이 FTA, 일·베트남 FTA)와 AJCEP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pooled OLS)하였다. 수입의 경우에도 일본과 10개 ASEAN 회원국 간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본의 기체결 7개 양자간 FTA와 AJCEP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Pooled OLS 추정)하였다. 수출·입 모두 교역 상대국(ASEAN 회원국)의 GDP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129] 분석기간은 1996~16년

129) GDP는 2010년 구매자가격 GDP를 사용함.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표 3-7. 일본·ASEAN FTA의 수출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종속변수			
	총수출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
상수항	-439.2	-78.46	-63.29	95.06
	(907.7)	(111.6)	(103.4)	(237.1)
양자간 FTA	7,505***	323.5**	393.1***	2,685***
	(1,129)	(138.0)	(128.3)	(292.1)
AJCEP	2,527**	364.2***	335.8***	-105.0
	(972.9)	(117.2)	(110.4)	(252.2)
GDP	0.0156***	0.00187***	0.00295***	0.00101
	(0.00268)	(0.000322)	(0.000305)	(0.000692)
관측수	210	204	210	210
R^2	0.444	0.309	0.494	0.379

주: 1) 종속변수 중 '총수출'이란 일본의 ASEAN 10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의미하고,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임. 독립변수 중 '양자간 FTA'란 일·싱가포르 FTA, 일·브루나이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필리핀 FTA, 일·태국 FTA, 일·인도네시아 FTA, 일·베트남 FTA를 의미하나,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FTA가 발효된 시점(연도) 이후는 1, 그 이전은 0을 취하는 '더미(dummy)' 변수임. 'AJCEP' 역시 AJCEP 발효 시점(2008) 이후 1의 값을, 그 이전은 0을 취하는 더미 변수임.
2) ( ) 안은 표준오차를 뜻하고,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저자 작성.

이고, 그 결과는 각각 [표 3-7]과 [표 3-8]에 요약하였다.

[표 3-7]은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체결한 7개 양자간 FTA와 AJCEP의 대ASEAN 수출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대ASEAN 총수출의 경우 일본이 체결한 7개 양자간 FTA(더미 변수)와 AJCEP(더미 변수) 모두 양의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ASEAN으로의 수출은 양자간 FTA 전에 비해 발효 후, 그리고 AJCEP 전에 비해 발효 후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강, 자동차의 경우도 일본과 ASEAN 개별 회원국 간 양자간 FTA, AJCEP 모두 수출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기기의 대ASEAN 수출의 경우, 양자간 FTA의 발효 후 수출이 증가했으나 AJCEP는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일본·ASEAN FTA의 수입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종속변수(수입액, 백만 달러)			
	총수입	농축수산물	전자기기	광물성연료
상수항	-1,019*	35.84	-172.4	-1,106
	(589.5)	(44.68)	(192.9)	(1,171)
양자간 FTA	4,639***	334.1***	1,774***	942.0
	(729.8)	(56.84)	(228.3)	(1,135)
AJCEP	2,313***	38.88	516.5***	887.3
	(612.6)	(47.41)	(184.9)	(618.1)
GDP	0.0285***	0.000934***	0.000776	0.0130***
	(0.00171)	(0.000133)	(0.000500)	(0.00146)
관측 수	210	202	190	152
R^2	0.752	0.475	0.359	0.392

주: 1) 종속변수 중 '총수입'이란 일본의 ASEAN 10개국에 대한 수입액을 의미하고, '농축수산물', '전자기기', '광물성연료'도 마찬가지임. 독립변수 중 '양자간 FTA'란 일·싱가포르 FTA, 일·브루나이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필리핀 FTA, 일·태국 FTA, 일·인도네시아 FTA, 일·베트남 FTA를 의미하나,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FTA가 발효된 시점(연도) 이후는 1, 그 이전은 0을 취하는 '더미(dummy)' 변수임. 'AJCEP' 역시 AJCEP 발효 시점(2008) 이후 1의 값을, 그 전은 0을 취하는 더미 변수임.
2) ( ) 안은 표준오차를 뜻하고,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8]은 일본과 ASEAN의 FTA가 일본의 대ASEAN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Pooled OLS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일본의 대ASEAN 총수입의 경우, 수출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체결한 7개 양자간 FTA와 AJCEP 모두 양의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간 FTA와 AJCEP 전에 비해 발효 후 대ASEAN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력 수입품목의 FTA 효과를 살펴보면, 전자기기는 일본과 ASEAN 개별 회원국 간 양자간 FTA, AJCEP 모두 수입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물성 연료의 경우는 양자간 FTA, AJCEP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ASEAN 국가들이 일본과의 FTA 협상에 중점을 두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도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수입 증가의 효과를 보이나

AJCE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일·ASEAN 간 무역 추이에 대한 통계분석(표 3-5~표 3-6)과 일·ASEAN의 FTA와 수출·수입 간 회귀분석 결과(표 3-7~표 3-8)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일본의 대ASEAN 총수출과 총수입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각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발효 후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회귀분석 결과뿐 아니라 교역 추이를 볼 때에도, AJCEP 및 다수의 양자간 FTA가 발효된 2008년을 기점으로 교역량이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즉, 일본과 ASEAN 간의 FTA 발효는 교역량 '수준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교역량 수준 자체 증가 효과는 철강, 자동차의 대ASEAN 수출, 전자기기의 대ASEAN 수입에서도 관찰되었다. 일본정부가 ASEAN 지역·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확대 관점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관세양허나 원산지규정 도입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과 ASEAN 간 FTA는 위와 같은 대ASEAN 교역량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세계 교역량 감소 추세를 막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일·ASEAN FTA는 일본이 대ASEAN 교역량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3-5]와 [표 3-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ASEAN 총수출·입은 2008년을 기준으로 1996~2007년 기간 연평균증가율에 비해 2008~16년 기간 연평균증가율이 감소했으나, 일본의 대세계 총수출·입 감소폭에 비하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TA의 효과는 일본의 대ASEAN 주요 수출품 및 수입품에서도 동일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수입의 경우, 대ASEAN 수입 및 대세계 수입 모두 연평균증가율이 다소 상승했는데, 그 정도는 대ASEAN 수입보다 대세계 수입이 커 다른 품목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1) 일본기업의 FTA 활용

일본의 기체결 FTA 효과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일본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 시에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130]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06년 6,944건, 2009년 66,672건, 2016년 266,6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일본기업의 ASEAN FTA 활용 현황

(원산지증명 발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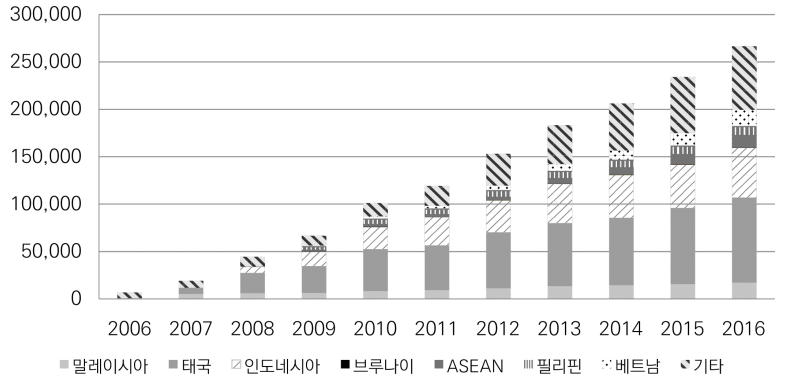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ASEAN	필리핀	베트남	Total
2006	1,018						6,944
2007	5,335	6,678					19,278
2008	6,194	21,129	6,579	239	225		44,561
2009	6,334	28,255	16,013	2,832	2,477	500	66,672
2013	13,552	66,465	41,464	7,575	6,216	7,026	183,365
2016	17,370	89,644	52,427	15,077	8,140	16,917	266,693

자료: 経済産業省, 「第一種特定原産地証明書の発給状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

130) 일본기업의 FTA 활용(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4, pp. 113~121), 宋俊憲(2016), 外務省(2017), 三菱東京UFJ銀行(2017) 등을 참고할 수 있음.

특히 일·태국 FTA와 일·인도네시아 FTA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연하다(그림 3-3 참고). ASEAN과의 다자간 및 양자간 FTA 중 가장 활용이 높은 것은 일·태국 FTA(2016년 약 90,000건, 비중: 33.6%)이고, 일·인도네시아 FTA(2016년 약52,000건, 비중: 19.6%), 일·말레이시아 FTA(2016년 약 17,000건, 비중: 6.5%), 일·베트남FTA(2016년 약 17,000건, 비중: 6.3%) 순인데, AJCEP을 활용한 실적(2016년 약 15,000건, 비중: 5.6%)이 다른 양자간 FTA에 비해 낮은 점이 눈에 띈다. 단, 일·ASEAN FTA(AJCEP) 등 일본의 ASEAN 국가들과의 FTA는 원산지증명에 관해 이른바 '제3자 증명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그림 3-3]의 수치들은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所)가 제3자의 권한으로 발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 건수를 나타낸다.

2)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 역내 거래

일본 제조업 기업의 현지법인[131] 소재지 분포를 보면, 1997년 전체 6,555개 중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즉 ASEAN4에 1,494개, 미국에 1,225개 중국에 1,055개 순이었는데, 2015년도 말 현재는 전체 1만 1,080개 법인 중 2,578개 법인이 ASEAN 4개국, 1,104개 법인이 미국, 4,150개 법인이 중국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현지법인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이 같은 기간 약 4배 증가하였고 ASEAN4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외법인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이 30~40%를 차지하는 등 일본 제조업 기업의 미국 '의존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 24.5%, 중국 24.2%, ASEAN4 18.6%로 중국과 ASEAN4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 생산네트워크에서 ASEAN이 차지

131) 일본 경제산업성이 1972년(1970년도 실적)부터 매년 일본 본사와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 응한 기업 수를 의미함.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 21) 참고.

그림 3-4.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 역내 생산네트워크(1): 현지법인 수 및 매출액

해외법인별 매출액 비중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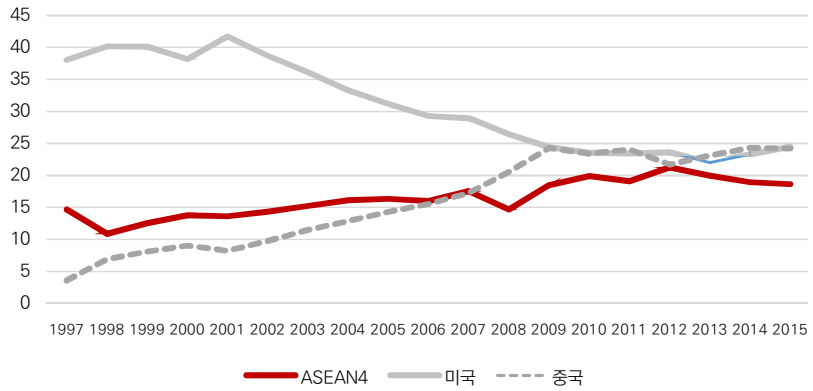

	해외전체		ASEAN4		미국		중국	
	법인 수	매출액 (조 엔)	법인 수	매출액 (조 엔)	법인 수	매출액 (조 엔)	법인 수	매출액 (조 엔)
1997	6,555	52.1	1,494	7.6	1,225	19.8	1,055	1.9
2000	7,464	56.2	1,682	7.7	1,368	21.5	1,540	5.1
2003	7,127	71.0	1,588	10.8	1,187	25.7	1,843	8.2
2006	8,287	214.2	1,783	16.0	1,214	29.2	2,681	15.5
2009	8,399	78.3	1,828	14.5	1,017	19.1	3,089	19.0
2012	10,425	98.4	2,249	20.9	1,081	23.2	4,142	21.3
2015	11,080	135.0	2,578	25.1	1,104	33.0	4,150	32.7

주: * 자료 제약상 ASEAN4(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개국으로 한정함.
자료: 経済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그림 3-4 참고).

[그림 3-5]는 위와 동일한 현지법인 조사에 근거하여 ASEAN4에 진출한 제조업 분야 일본 현지법인들의 매출 구성을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들 현지법인은 원재료·부품 등을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후 가공·조립하여 현지, 혹은 일본, 기타국가에 판매·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그림 3-5.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1] 역내 생산네트워크(2): 역내 거래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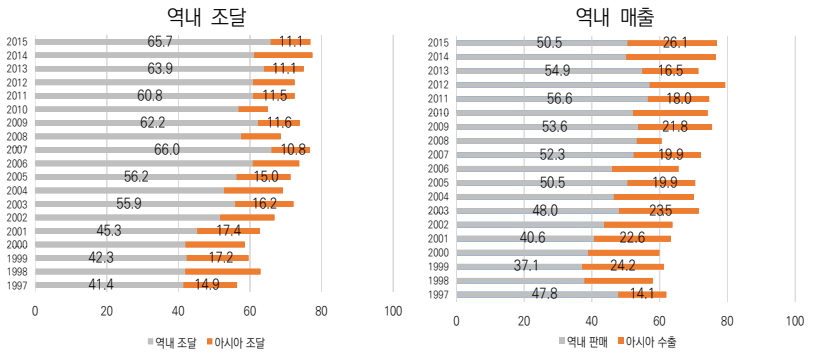

년도	역내 조달			역내 매출		
	역내 조달 (A)	아시아 조달 (B, 역내제외)	아시아조달[1] (A+B)	역내 매출 (A)	아시아[2]수출 (B, 역내제외)	아시아 매출 (A+B)
1997	41.4	14.9	56.4	47.8	14.1	61.9
2000	42.0	16.5	58.5	38.8	21.1	59.9
2003	55.9	16.2	72.0	48.0	23.5	71.5
2006	60.8	13.0	73.7	45.9	19.6	65.5
2009	62.2	11.6	73.8	53.6	21.8	75.4
2012	60.8	11.6	72.4	57.1	22.3	79.4
2015	65.7	11.1	76.8	50.5	26.5	77.0

주: 1) 자료 제약상 ASEAN4(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개국으로 한정함.
2) 아시아 지역이란 중국, ASEAN4(현지국가 제외), NIEs3(한국, 대만, 싱가포르), 기타 아시아 국가를 말함.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의 왼쪽 그림은 ASEAN4의 현지법인들이 원재료·부품 등을 어느 지역에서 조달하는지, 그 중에서도 ASEAN4 역내 조달 비중의 추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역내 조달 비중은 1997년 41.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50~55%대, 그리고 2015년에는 65%선으로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SEAN4에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합한 '아시아 조달' 비중은 1997년 56.4%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70% 초반대, 2015년에는 70% 후반대까지 증

가하였다. 이러한 역내 조달 비중의 상승은 일본 본국으로부터 조달 비중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는데, 그 비중은 1997년 39%대에서 2010년에는 30% 이하, 그리고 2015년에는 20% 선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5]의 오른쪽 그림은 역내 매출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달과 마찬가지로 대일 역수입의 비중은 1997년 약 30%에서 2015년에는 약 15%로 하락한 반면 역내 매출과 아시아 매출 비중은 1997년 각각 47.8%, 61.9%에서 2015년에는 각각 50.5%, 77%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제조업 기업의 역내 조달 및 역내 판매 비중 증가는 그만큼 ASEAN에 진출한 기업들이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일본정부의 FTA 전략, 그 중에서도 AJCEP을 통한 누적 원산지규정 도입, 특혜관세 적용 등은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일본 경제산업성의 16대 산업분류[132)]상 ASEAN4에 소재하는 일본 제조업 현지기업의 총매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송기계(55.2%)이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계(9.6%), 화학(5.8%), 전기기계(5.4%), 비철금속(4.0%), 철강(2.5%) 순이었다. AJCEP이 발효된 2008년의 경우에도 운송기계(51.2%), 정보통신기계(13.6%), 화학(7.0%), 전기기계(6.7%), 비철금속(4.4%), 철강(2.8%) 순이었다.

[그림 3-6]은 이들 6대 산업별 ASEAN4 역내 거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6대 산업 중 역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2008년 88.0%, 2015년 91.2%)이고, 운송기계(2008년 62.1%, 2015년 51.7%)와 화학(2008년 60.9%, 2015년 58.5%)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정부가 ASEAN 국가(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들과 양자간 FTA 협상을 추진할 때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시장접근 원활화에 주력하였는지 짐작

132) 식료품, 섬유, 목재펄프, 화학, 석유·석탄, 요업·토석,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범용기계, 생산용기계, 업무용기계, 전기기계, 정보통신기계, 운송기계, 기타 제조업 등 16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6.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1] 역내 생산네트워크(3): 주요 산업별 역내 거래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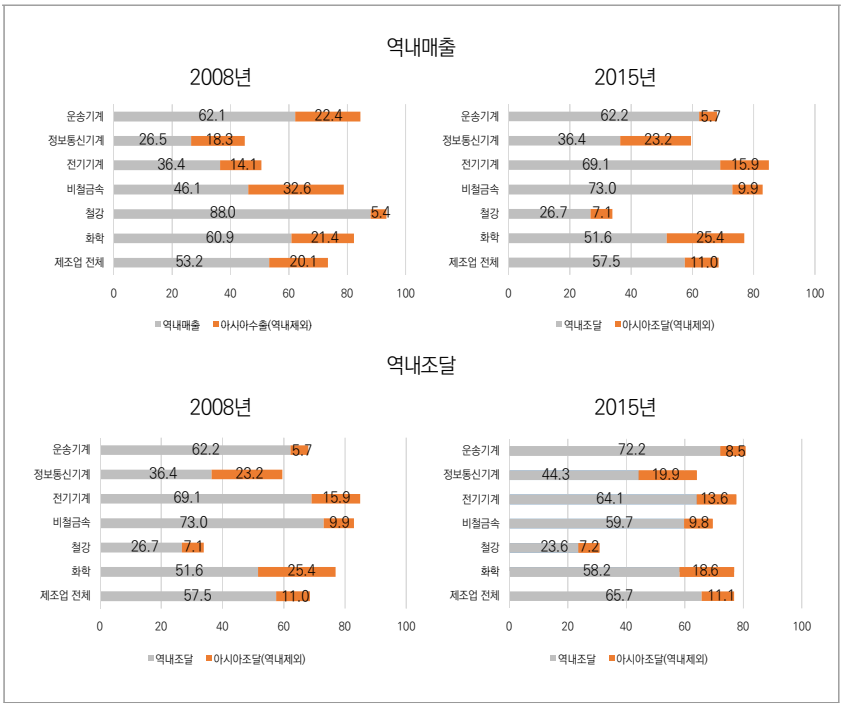

주: 1) 자료 제약상 ASEAN4(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개국으로 한정함.
2) 아시아 지역이란 중국, ASEAN4(현지국가 제외), NIEs3(한국, 대만, 싱가포르), 기타 아시아 국가를 말함.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할 수 있게 된다(표 3-2 참고). 그리고 2008년과 2015년 두 시점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제조업 전체의 아시아매출 비중과 아시아조달 비중이 각각 73.3%, 68.5%에서 77.0%, 76.8%로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내 거래 비중의 증가가 전적으로 FTA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업고유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전략 산물이라고 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일본정부의 FTA 전략(기업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과 협상 과정을 상기하면 FTA가 일본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보조적'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 절에서 AJCEP의 누적 원산지규정이 갖는 의의를 지적하였으나,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는 AFTA 등 ASEAN내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함께, 일본 이외의 ASEAN+1 FTA 혹은 ASEAN 국가의 양자간 FTA[133]의 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일본기업이 특정 ASEAN 국가에 진출하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범위를 ASEAN에 한정하기보다는 ASEAN이 체결한 다자간 혹은 양자간 FTA를 활용하여 세계 전지역으로 생산네트워크를 확대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3) 일본의 ASEAN 해외직접투자 수익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대한 효과는 상대국·지역의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규제완화나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배경으로 일본의 서비스수지와 해외직접투자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국제수지 통계상 서비스수지는 상대 국가·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지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는데다, 운임, 여행, 보험료, 정보, 특허 사용료 등을 포괄하고 있어 FTA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대신 본고에서는 일본이 ASEAN 국가들과 체결한 FTA의 간접적 효과로서 일본기업들이 이들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해외직접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7]은 일본의 대(對)ASEAN5 해외직접투자 수익[134]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133) 2017년 11월 현재 ASEAN은 중국(2005년 1월 발효), 호주·뉴질랜드(2010년 1월 발효), 인도(상품무역협정 2010년 1월 발효, 서비스무역협정 2015년 7월 발효), 한국(상품무역협정 2010년 1월 발효, 서비스무역협정 2010년 10월 발효)과 ASEAN+1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ASEAN4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만 별도로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은 라오스(상품무역협정 1991년 6월 발효), 인도(2004년 9월 발효), 호주(2005년 1월 발효), 뉴질랜드(2005년 7월 발효), 칠레(2015년 11월 발효)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파키스탄(2008년 1월 발효), 뉴질랜드(2010년 8월 발효), 인도(2011년 7월 발효), 칠레(상품무역협정 2012년 2월 발효), 터키(상품무역협정 2015년 8월 발효)와 FTA를 체결한 상태다. WTO, "Particip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참고.

134)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익은 국제수지표상 제1차 소득수지(고용자보수, 투자수익, 기타 제1차 소득수지 3가지 항목) 항목 중 투자수익, 그중에서도 직접투자수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직접투자수익은 일본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서 본국으로 환류시킨 수익과 내부유보를 포함한다. 일본의 국제수지에서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항목에 대해서는 経済産業省(2015), pp. 10~11을 참고할 것.

그림 3-7. 일본의 ASEAN5 해외직접투자 수익 현황

(단위: 억 엔,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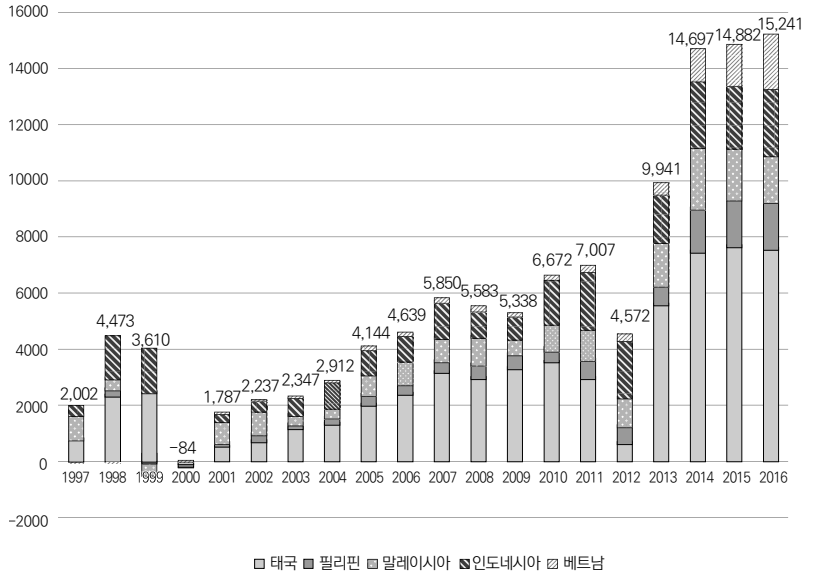

	해외직접투자[1)] (ASEAN5)	제1차 소득수지 (직접투자수익)					
		ASEAN5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1997	n.a	2,002	769	-11	881	368	-5
2000	n.a	-84	-87	-68	-20	37	54
2003	n.a	2,347	1,172	134	325	650	66
2005	4,924	4,144	2,011	335	731	918	149
2007	6,455	5,850	3,173	386	832	1,269	190
2009	3,864	5,338	3,295	496	560	825	162
2011	11,902	7,007	2,946	656	1,097	2,067	241
2013	19,565	9,941	5,577	640	1,576	1,709	439
2016	13,674	15,241	7,670	1,522	1,675	2,393	1,981

주: 1) 2014년 이전 데이터는 해외직접투자(capital outflow), 2014년 이후는 해외직접투자 순투자액(집행액-철수액)을 의미.
자료: 日本銀行, 「国際収支統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3).

ASEAN 5는 일본기업의 직접투자가 활발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5개국을 지칭하고, 기간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ASEAN5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는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3년간 대폭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다시 폭증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5,000억 엔 정도의 직접투자가 이뤄진 반면 2011년 이후에는 연평균 1조 5,000억 엔 정도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일본기업이 직접투자로 거둬들인 수익 역시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가 극심하였던 1990년대 말과 2000년(84억 엔의 손실 발생), 태국 홍수가 발생한 2011년을 제외하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ASEAN5개국에서 일본기업은 연평균 1조 5,000억 엔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15% 정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5% 이하였으나 최근에는 10%를 넘어섰다.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1) RCEP 개요 및 협상 동향

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아시

아 지역에서 중국이 제시한 ASEAN+3(한중일)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과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제시한 ASEAN+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 사이 주도권 갈등이 계속되어 지역통합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2010년 3월 미국이 TPP에 참여하자 ASEAN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RCEP은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후,[135] 2012년 8월 ASEAN+1 FTA 체결국 경제장관회의의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 확정,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의 협상 개시 선언을 거쳐,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까지 총 20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 11월 RCEP 정상회담에서 RCEP 연내 타결이 불발되면서 2018년 이후로 논의가 연기된 상태다.

RCEP 협상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참여국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들 수 있다. RCEP 참여국 중 협상을 이끌어가는 뚜렷한 주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낮은 자유화 수준의 조기 타결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높은 자유화 수준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의견 대립이 눈에 띈다. 중국을 위시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자국 기업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낮은 자유화 수준의 '조기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질 높은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2012년 8월 ASEAN+1 FTA 체결국 경제장관회의가 채택한 협상지침은 향후 RCEP 협상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협상 분야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및 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분쟁해결 등 7개이고, ASEAN 후발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인정하되 무역자유화 약속수준은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게 설정하고 서비스 무역 협상 역시 모든 분야를 협상대

135) RCEP의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창재, 방호경(2012); 라미령, 김제국(2017);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RCE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를 참고할 것.

상에 포함하고 WTO와 정합적이도록 포괄적이고 양질의 협정을 추구하며 투자분야의 협상은 촉진, 보호, 원활화, 자유화라는 4개 기둥을 포함할 것을 담고 있다.[136][137]

2) 주요 쟁점

2017년 11월 현재 현재 RCEP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관세철폐 및 서비스·투자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분야의 규범이다. 비교적 갈등이 적었던 경제·기술 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및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 챕터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기체결 FTA 대비 추가자유화 추진, 원산지 분야에서 규범 개선 등 일부 진전이 있었을 뿐이다.[138]

먼저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RCEP 참여국 대부분이 ASEAN+1 FTA 형태로 ASEAN과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ASEAN 국가 중에서도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관세양허율은 9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인도(AIFTA)의 ASEAN에 대한 관세양허율은 78.8%에 불과하고 인도네시아(AIFTA)의 인도에 대한 관세양허율도 48.7%에 불과하다.[139] 이처럼 RCEP 참여국들이 자신의 경제발전 단계를 반영하여 기체결 FTA에서 매우 편차가 큰 관세철폐 양허안을 제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상에서 참여국 모두

136)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Australia), "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egotia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3).

137) 2017년 11월 현재 RCEP 협상의 회의체는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정점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등 8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이하 WG)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 WG 산하에는 원산지, 통관, SPS, TBT(STRACAP) EMD 4개의 소작업반(sub-working group)을 두고 있고 서비스 WG에는 금융, 통신 등 2개의 소작업반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RCE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 참고.

138) 산업통상자원부(2017a),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고베) 논의 결과」(2017. 3. 6) 보도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2017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 협상 개최」(2017. 10. 23) 보도자료 참고.

139) 라미령, 김제국(2017), p. 7.

에게 적용되는 공통양허안은 적용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협상인 2017년 10월의 20차 협상에서도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140] 이처럼 관세양허를 놓고 합의가 어려운 것은 일례로 인도 정부가 2016년 12월 RCEP이 공통양허율을 80%로 합의한다 해도 중국에 대해서는 74% 이상의 관세양허율은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일부 RCEP 참여국들의 대중(對中)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다.[141]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도 기체결 FTA보다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 양허안 교환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품·서비스·투자를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일괄타결(one package)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협상의 중점이 관세철폐에 집중되어 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데다, 시장개방도에 대한 이견이 커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인도의 경우 국경간무역, 해외소비(관광, 의료),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of a service supplier), 숙련노동자의 일시적 이동 등 모든 서비스 무역 협상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를 위시한 여타 ASEAN 국가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142]

그 외에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 분야의 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체결 ASEAN+1 FTA에 포함되어 있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한 분야이다. 일례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등 관련 규칙의 정비를 요구하는 일본과 국외 데이터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 및 일부 ASEAN 회원국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143]

---

140) "RCEP deal unlikely this year: South Korean official"(2017. 10. 27).

141) 이와 같은 인도 정부의 입장은 RCEP 협상 초기단계에서 피력한 '3블록화' 관세양허 전략, 즉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최고 42.5%의 관세양허율을 허용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최고 65%, 그리고 ASEAN 국가들에게는 최고 80%의 관세양허율을 허용한다는 전략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RCEP: Members worried about giving more market access to Chinese goods"(2016. 11. 1) 및 "India may offer China tariff removal on over 70% goods"(2016. 12. 19) 참고.

142) "RCEP: Members worried about giving more market access to Chinese goods"(2016. 11. 1) 및 라미령, 김제국(2017), p. 11.

143) 「RCEP年内合意断念、2018年以降も交渉閣僚会合」(2017. 11. 12).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인도 정부가 2017년 6월 RCEP 협상의제로서 정부조달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RCEP 참여국 중에서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만 WTO의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황에서 정부조달 범위와 조달 기준액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RCEP 협상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144]

3) 일본 입장에서 RCEP의 의의

일본정부(외무성)는 2017년 1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이후 TPP11과 동시에 RCEP 협상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RCEP에 대해서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일본경제의 성장지속, 무역확대, 참여국 간 무역·투자 촉진에 따른 역내 서플라이 체인 확대, 무역·투자·지재권 등 비관세분야에서의 규범 정비를 통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익에 주목하고 있다.[145]

첫째,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일본경제의 성장지속에 대한 기대감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경제성장으로 결부시킨다는 일본의 FTA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RCEP 협상의 주축인 ASEAN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 및 천연자원에 더하여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중산층의 확대 등으로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146] RCEP 참여국의 이런 성장가능성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내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주요 교역 대상국인 한국, FTA 미체결국인 뉴질랜드 등이 RCEP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무역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본과 RCEP 참여국 간 교역은 일본의 총교역액의 절반에

---

144) "India agrees to government procurement talks in regional trade pact"(2017. 6. 19) 및 라미령, 김제국(2017), p. 12 참고.
145) 外務省(2017), 「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0).
146) 小針(2015), pp. 35~36.

가까운 5,9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과 RCEP 참가국과의 무역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RCEP 협정이 일본에게 갖는 의미가 크다.[147][148] 다만 일본은 대부분의 RCEP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물론 RCEP 협상 결과 여하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RCEP을 통해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기대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일본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 RCEP의 의의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일본기업의 해외거점의 절반 이상(59.6%)이 RCEP 참여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70% 이상이 RCEP 참여국 내에 위치하고 있다.[149] 특히 RCEP 타결로 RCEP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무역·투자 관련 규범 및 절차가 정비되면 기체결 ASEAN+1 FTA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개선 및 각 FTA 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릴 수 있다.[150] 구체적으로 ASEAN+1 FTA 등 지역 내 복수의 FTA 체결로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파게트볼 효과'의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RCEP이 제창하는 '기존의 ASEAN+1 보다 진일보한 협상 수준'이 실현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에서 역내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

147) 大木(2016)는 RCEP 참가국의 총교역액에서 RCEP과 TPP12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율이 TPP보다 높았으며, 2000년과 2014년을 비교해본 결과 TPP12 무역 비율은 수출(-11.4%p), 수입(-8.1%p)에서 모두 줄어든 반면, RCEP 무역비율은 상승(수출 +14.9%p, 수입 +7.7%p)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48) 大木(2016), pp. 217~219.

149) 助川(2017), p. 3 및 [표 3-9] 참고.

150) 2012년 7월 ASEAN일본인상공회의소연합(FJCCIA) 의장은 ASEAN 사무국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RCEP을 통해 더 유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5개의 ASEAN+1(한, 중, 일, 인도, 호주·뉴질랜드) FTA가 통합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助川 2016, p. 79)하였는데, 일본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 원산지규정이 갖는 중요성과 아울러, FTA의 이용조건이나 상이한 신청양식 등 행정비용 등에서 비롯되는 기체결 FTA의 스파게티 볼 개선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표 3-9. RCEP의 역내수출입비율(무역액 기준·RCEP 소재 日제조업 기업)

		對RCEP 수출비율		RCEP의 수입비율		일본기업의 RCEP 조달비율
		(2016년)	일본기업	(2016년)	일본기업	
ASEAN		55.3	83.6	64.0	90.1	94.1
	브루나이	91.6	-	73.7	-	-
	캄보디아	32.2	91.5	82.0	95.0	95.7
	인도네시아	60.0	84.7	71.8	89.2	93.6
	라오스	44.3	96.2	60.1	96.9	97.6
	말레이시아	60.7	82.6	63.4	87.3	92.0
	미얀마	81.0	90.0	96.1	91.5	94.4
	필리핀	51.9	79.4	66.5	87.0	91.1
	싱가포르	56.3	85.2	51.5	92.3	93.9
	태국	55.9	81.5	64.4	90.0	95.7
	베트남	43.2	84.6	72.8	90.8	94.0
인도		17.6	64.4	36.3	86.6	93.8
오스트레일리아		69.7	85.0	56.8	80.1	90.3
뉴질랜드		56.9	83.8	58.9	66.6	85.4
중국		27.7	72.5	40.4	91.4	97.2
한국		49.2	69.7	49.0	88.0	93.9

주: 1) 조달비율은 수입조달을 100으로 상정하여 산출.
2) RCEP 내 일본기업: 수출: 2486개사, 수입: 1875개 사.
자료: 助川(2017), p. 3.

나.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 개요 및 협상 동향

한·중·일 FTA는 2003~09년에 민간 공동연구 및 2010~11년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151] 한·중·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이창재 외(2005)는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규제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편

익이 있으며, 양자간 FTA 증가, 유럽 및 미주대륙의 무역블록 대두 등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FTA가 필요하고, 비경제적 요인인 역내 공동체의식 제고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역내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52]

한·중·일 FTA 협상은 2013년 3월에 시작되어 2017년 4월까지 총 열 두 차례 개최됐는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하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3국이 모두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 유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53]

2013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기본지침·틀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고,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상운영세칙에서는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 방식, 협상구조 및 협상 주기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협상 범위는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되,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협상 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양허 방식과 관련해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 3자 협상 진행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의 분야에 대해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 여부는 전문가 대화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54]

2015년 1월에 개최된 제6차 협상부터는 협상 진전을 위하여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협상을 분리해 개최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2016년 6월 제10차 협상까지

15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2012), pp. 3~4.
152) 이창재 외(2005), p. 26, p. 31, p. 34.
153) 산업통상자원부(2017d),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2017. 4. 7)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한중일 FTA 제3차 협상 결과」(2013. 12. 2) 보도참고자료.
154)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한·중·일 FTA-보도자료: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5).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이외에도 규범, 협력 분야 등 약 20여 개의 작업반 및 전문가회의에서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었다(표 3-10 참고).

2017년에는 1월에 제11차, 4월에 제1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의 주된 이슈는 상품 협상지침(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유보 협상 등이었다.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이 반영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조성의 지속 추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통신·자연인 이동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 주요 규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155]

표 3-10. 한·중·일 FTA 협상의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12년	-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5월)에서의 합의에 따라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한중일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
2013년	- 3월,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 협상의 범위 및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
	- 8월, 제2차 협상 개최(베이징) -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와 지재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Expert Dialogue)를 개최.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달리티 논의를 진행
	- 11월, 제3차 협상 개최(도쿄) - 상품 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교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개최 -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재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전문가대화를 개최하여 협정 포함 요소들에 대하여 협의, 협상 대상 범위 포함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 - 3국이 모두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중·일 FTA와 RCEP 협상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

155) 산업통상자원부(2017c),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결과」(2017. 1. 12)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d),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2017. 4. 7) 보도자료.

표 3-10. 계속

시기	주요 내용
2014년	- 3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제3차 협상과 유사하게 상품 분야 및 상품 이외 분야에 대해 논의
	- 9월, 제5차 협상 개최(베이징) -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SPS, 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논의가 진행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모달리티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나 여전히 3국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가기로 함. - 전자상거래·환경 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하여 산업협력·ICT 및 기타 각국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2015년	- 1월, 제6차 수석대표협상 개최(도쿄) - 3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제6차 협상부터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협상을 분리 개최 - 상품, 서비스, 투자,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협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 5월, 제7차 수석대표협상 개최(서울)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
	- 9월, 제8차 수석대표협상 개최(베이징)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
2016년	- 1월, 제9차 수석대표협상 개최(도쿄) -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의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 6월, 제10차 수석대표협상 개최(서울) -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의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2017년	- 1월 제11차 공식협상 개최(베이징) - 상품 협상지침(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3국간 진전 방안을 집중 모색함. •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함. • 11차 협상부터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주요규범 분야를 포함해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함.
	- 4월 제12차 공식협상 개최(도쿄) - 상품 협상지침(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 • 11차 협상에서 논의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에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의 분야별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

주: 제7차 및 제8차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보도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일본 외무성의 자료를 참고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한·중·일 FTA - 보도자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5); 外務省, 「日中韓F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5).

2) 주요 성과 및 쟁점

한·중·일 FTA 협상은 12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 분야의 확대와 같은 일정한 진전을 보인 측면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주요 쟁점 분야에서의 3국간 이견으로 논의의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 먼저 성과 측면에서 보자면, 협상 분야별로 작업반 회의와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7년 1월의 제1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총 19개 분야까지 확대되었다.[156] 상품 분야에서는 상품 협상지침(Modality),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부 협정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기타 분야에서는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식품, 기타 협력 분야 등에 대해 3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제11차 협상에서는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를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했으며, 제12차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을 추가로 개최함으로써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표 3-10 참고).

반면 제5차 협상부터는 상품시장의 개방수준을 정하는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또는 포지티브), 투자 유보 등의 핵심 분야가 3국간의 이견에 따라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이후 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157] 첫째, 상품 분야는 제6차 실무협상(2014년 11월)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품목 기준 90% 이상의 자유화율을 일본 측에 제시했으나, 일본은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한·중 FTA에서 민감품목 분야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외했는데, 한·중·일 FTA에서 일본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이 분야를 제외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참여할 유인이 약하

156) 산업통상자원부(2017c),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결과」(2017. 1. 12) 보도자료.
157) 산업통상자원부(2014), 「동아시아 시장개방 및 자유화 방식 심층 논의」(2014. 9. 1)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d),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2017. 4. 7) 보도자료.

다고 할 수 있다.[158] 또한 원산지규정(누적 조항)에 대해서도 3국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FTA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했는데, 한·중·일 FTA에서는 자유화 수준이 더 높은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3국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투자 분야에서는 2014년 5월에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이보다 수준이 높은 한·일 투자협정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협정문의 장(chapter)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9]

3) 일본 입장에서 한·중·일 FTA의 의의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과 한국은 제1위와 제3위의 무역 상대국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통합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본 입장에서 한·중·일 FTA가 갖는 의의는 경제적 및 제도적 측면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포괄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주요 수출품의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일본이 관심이 높은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은 중국의 경우 승용차 25%, 액정패널 5~12%, 공작기계 9.7%이고, 한국은 판유리 8%, 기어박스 및 부품 8%, 화학품·조정제품 5~6.5%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160] 특히 일본은 자국 농업 등의 민감 부문의 보호와 함께 투자·서비스무역,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 관심 분야의 자유화·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161] 한편 한·중·일 3국은 2015년 11월 한·중·

158)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보고서와 관련한 일본 도쿄 출장(2017년 11월 8~10일)을 통해서도 뚜렷이 확인되었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경제산업연구소를 방문(9일)했을 때 이 기관의 연구자는 만약 한국이 일본과의 양자 FTA, TPP에의 참여 등을 고려한다면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필수라고 하였다. 또한 RCEP 및 한·중·일 FTA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이 아니라면, 즉 일본 입장에서 중요 품목이 빠진 FTA라면 관심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159) 김재덕(2015), p. 57, pp. 60~62.
160) 外務省, 「日中韓FTA, 日中韓FTAについて(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10).
161) 阿部(2012), p. 104.

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62)]

162) 산업통상자원부(2017d),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2017. 4. 7) 보도자료. 우리정부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중·일 FTA 협상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163)]

Petri *et al.*(2017)는 2017년 10월 현재 미국, 아시아 등 태평양지역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가 될 수 있는 메가 FTA를 TPP, 미·일 FTA, RCEP 세 가지로 보고, TPP는 미국이 잔류하는 경우(TPP12)와 탈퇴하는 경우(TPP11), 나아가 미국이 탈퇴하되 과거에 TPP에 관심을 표명한 아시아 5개국, 즉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는 경우(TPP16)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메가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 TPP12는 2017년부터 발효되고, TPP11 등 나머지 4개 메가 FTA는 모두 2018년에 발효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관세철폐율의 경우 TPP에서는 모두 TPP12의 99%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미·일 FTA에서는 TPP처럼 99%, RCEP에서는 85%로 상정하고 있다. 셋째, 비관세장벽(NTB)의 자유화율 및 농업 자유화율, 서비스 부문 자유화율, 외국인투자(FDI) 자유화율의 경우 TPP에서는 모두 한·미 FTA 수준을 상정하였고, 미·일 FTA에서는 TPP12를 기준으로 NTB 자유화율은 3/4 수준, 농업 자유화율은 2배, 서비스 부문 자유화율은 3/4 수준으로 상정하였고, RCEP에서는 최근 체결된 ASEAN+1 FTA의 3/4 수준을 상정하였다.

Petri *et al.*(2017)의 추정 결과 중 일부는 아래 [표 4-1]에 인용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TPP11은 TPP12에 비해 모든 TPP 국가에 경제적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PP12는 그만큼 다른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164)]을 반증하는데,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캐나다, 칠레, 멕시코,

163) TPP12와 RCEP의 대일 경제적 효과에 관한 CGE 모형 추정 연구로는 Kawasaki Kenichi(2014)도 참고할 수 있다.

호주 등 미주·오세아니아 국가들에 비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효과가 급감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협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TPP11은 TPP12에 비해 각각 0.5% 포인트

표 4-1. TPP의 경제적 효과(1): TPP vs. 기타 메가 FTA

(단위: 10억 달러, %)

구분	국가	2030년 실질소득[1]	TPP12[2] (2017년)	TPP11[2] (2018년)	TPP16[2] (2018년)	미·일 FTA[2] (2018년)	RCEP[2] (2018년)
미주	미국	25,754	0.5	0.0	0.0	0.2	0.0
	캐나다	2,717	1.3	0.8	1.1	0.0	0.0
	칠레	463	0.9	0.7	1.1	0.0	0.0
	멕시코	2,169	1.0	0.7	1.5	0.0	0.0
	페루	442	2.6	2.2	2.5	0.0	0.0
아시아	일본	4,924	2.5	0.9	2.0	1.2	1.1
	브루나이	31	5.9	2.6	3.7	0.1	0.9
	싱가포르	485	3.9	2.7	3.8	0.0	0.0
	말레이시아	675	7.6	3.1	5.4	0.0	0.9
	베트남	497	8.1	2.2	5.1	0.0	0.5
	인도네시아	2,192	-0.1	-0.1	0.8	0.0	0.0
	필리핀	680	-0.1	0.0	1.9	0.0	0.2
	대만	776	0.2	0.0	7.8	0.0	-0.4
	태국	812	-0.8	-0.6	3.6	-0.1	0.3
	한국	2,243	-0.3	-0.1	3.8	-0.1	1.1
	중국	27,839	-0.1	0.0	-0.2	0.0	0.4
오세아니아	호주	2,590	0.6	0.5	0.7	0.0	0.2
	뉴질랜드	264	2.2	1.1	2.0	0.0	0.6

주: 1) 201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는 10억 달러.
2) 괄호에 표기된 연도에 발효한다는 가정. TPP16은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과 TPP에 관심을 표명한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을 합한 것임.
자료: Petri *et al.*(2017), p. 14, Table 2에서 발췌.

164) TPP12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미국 의존도는 TPP12와 TPP11의 수출 효과 추정치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TPP12에 따른 2030년 수출 효과는 23.2%인데 미국이 탈퇴한 TPP11에서는 8.1%로 급감하고, 말레이시아도 각각 20.1%에서 8.6%로 떨어지며 베트남의 경우는 무려 30.1%에서 8.8%로 급감한다. Petri *et al.*(2017), p. 16, Table 3 참고.

와 0.3% 포인트씩 경제성장 기회가 낮아지지만, 일본은 1.6% 포인트, 말레이시아는 4.5% 포인트, 베트남은 5.9% 포인트씩 경제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중간재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조달하여 최종재는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삼각무역'에서 기인함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TPP11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Kawasaki Kenichi(2017)의 추정 결과 역시 Petri *et al.*(2017)와 문맥을 같이 하지만, TPP12와 TPP11은 관세삭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비관세조치(NTM) 삭감에 따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Kawasaki Kenichi(2017)는 미국이 TPP에 복귀하지 않으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미국 수출시장을 놓치게 됨에 따라 일본은 0.26% 포인트, 말레이시아는 2.82% 포인트, 베트남은 무려 7.31% 포인트의

표 4-2. TPP의 경제적 효과(2): TPP12 vs. TPP11

(단위: %[1])

구분	국가	관세 삭감		비관세조치 삭감		Total	
		TPP12	TPP11	TPP12	TPP11	TPP12	TPP11
미주	미국	0.05	-0.01	0.72	0.15	0.77	0.14
	캐나다	0.50	0.25	1.48	0.80	1.97	1.06
	칠레	-0.12	0.06	0.89	0.86	0.77	0.92
	멕시코	-0.19	0.16	9.19	5.47	9.00	5.63
	페루	-0.05	0.01	0.85	0.72	0.80	0.73
아시아	일본	0.24	0.07	1.13	1.04	1.37	1.11
	브루나이	-0.23	0.06	7.97	7.97	7.74	8.03
	싱가포르	0.04	0.13	15.93	14.58	15.96	14.72
	말레이시아	0.91	0.24	22.57	20.41	23.47	20.65
	베트남	6.79	1.10	10.90	9.29	17.70	10.39
오세아니아	호주	-0.03	0.07	1.11	1.11	1.08	1.18
	뉴질랜드	0.71	0.89	3.56	3.41	4.27	4.29

주: 1) 관세 삭감과 비관세조치 삭감에 따른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Kawasaki Kenichi(2017), p. 8, Table 3에서 발췌.

실질 GDP라는 경제적 기회를 상실하는데, TPP12이든 TPP11이든 TPP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삭감보다는 비관세조치 삭감에서 기인하고 있다(표 4-2 참고). 예를 들어 일본은 TPP11에서도 관세삭감 효과와 비관세조치 삭감 효과가 각각 0.07% 대 1.04%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는 각각 0.24% 대 20.41%, 베트남은 각각 1.10% 대 9.29%로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Petri *et al.*(2017, p. 2)는 TPP16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게 RCEP을 능가하는 대안임을 강조한다. 물론 TPP16은 TPP1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RCEP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RCEP보다 TPP11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 역시 RCEP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TPP11보다는 크지만, 향후 미국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과 미국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기 아시아 5개국이 합세하여 TPP16에 '성공'하면 RCEP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4-1 참고).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 분야

TPP 협상 결과 일본의 수입자유화율, 즉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5%(무역액 기준도 95%)로 1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8개국이 품목 수 및 무역액 기준으로 100% 관세철폐를 약속하였고 캐나다와 페루가 품목 수 기준 99%, 무역액 기준 100%의 수입자유화를 약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TPP 참여국들은 관세철폐율을 계산할 때 다른 FTA와 달리 WTO가 규정하는 '발효 후 10년 이내의 관세철폐 품목 비율' 정의에 따르지 않고, 10년 이내이든 30년 이내이든 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하였다.[165]

165) 畠山(2016), p. 88.

TPP 협정에서 일본의 수입자유화율 95%는 자신의 기체결 FTA, 예를 들어 일·호주 FTA의 89%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없지만, 공산품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WTO 협상을 통해 거의 무관세 혹은 1~3%의 저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수산품의 고관세 구조를 TPP 협상에서도 관철시켰음을 알 수 있다. [표 4-3]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TPP 참여국의 관세철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다른 TPP 11개국에 대한 계획이고 다른 TPP 11개국의 경우는 대일 관세 철폐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TPP 협상에서 전체 9,018개 품목(HS 코드) 중 44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443개는 모두 농림수산품이고, 나아가 그중 439개 품목은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관세철폐를 약속한 바 없는

표 4-3. TPP 참여국의 농림수산품 관세철폐 계획

(단위: %)

국가	품목 수[1]	즉시철폐율[2]	발효 후 2~11년의 철폐율[3]	발효 12년 이후의 철폐율	관세철폐율[2]	비철폐율 (TRQ·삭감 등)
미국	2,058	55.5	37.8	5.5	98.8	1.2
캐나다	1,566	86.2	7.9	0.0	94.1	5.9
칠레	1,634	96.3	3.2	0.0	99.5	0.5
멕시코	1,387	74.1	17.2	5.1	96.4	3.6
페루	1,155	82.1	11.9	2.0	96.0	4.0
일본	2,328	51.3	27.5	2.2	81.0	19.0
브루나이	1,400	98.6	1.4	0.0	100.0	0.0
싱가포르	1,400	100.0	0.0	0.0	100.0	0.0
말레이시아	3,324	96.7	1.2	1.7	99.6	0.4
베트남	1,431	42.6	52.3	4.5	99.4	0.6
호주	941	941	99.5	0.5	100.0	0.0
뉴질랜드	1,287	97.7	2.3	0.0	100.0	0.0

주: 1) 국제적인 상품분류 코드인 HS2007 code상 농림수산품의 품목 수(tariff lines)를 의미함. HS 7자리(digit)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코드 분류가 달라 품목 수에 차이가 있고, 주류와 담배도 포함.
2) 즉시철폐율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율이 100% 삭감되는 품목과 이미 무관세인 품목을 합한 품목의 비율을 의미하고, 관세철폐율은 협정 발효 후 10년이든 20년이든 체결국이 궁극적으로 철폐를 약속한 품목 비율을 의미함.
자료: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b), 「TPPにおける関税交渉の結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6).

품목이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과거 FTA 협상은 물론이고 TPP 협상에서도 소위 농산물 5대 '성역품목'의 관세철폐 유예라는 대국민 약속을 미국과의 TPP협상에서도 관철하였는데, 5대 성역품목 586개 중 412개는 관세철폐를 유예하는데 성공한 것이다.[166][167] 단, 5대 성역품목이란 쌀, 밀·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을 의미한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일본의 TPP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TPP 참여국의 관세삭감 효과에 관한 추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高橋(2017)[168]는 TPP 12개국 중 미국,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가 자신을 제외한 TPP 11개국으로부터 수출·수입 시 TPP 협정 발효 1년 후에 어느 정도 관세 삭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추정하였다. 이때, 특정 국가의 기발효 FTA의 관세삭감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관세율차', 즉 각 품목별 MFN 세율에서 TPP 세율을 뺀 차율을 사용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일본은 TPP 11개국 중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 3개국을 제외한 8개의 FTA 기체결·발효국과의 수출·입 시에는 기체결 FTA 세율에서 TPP세율을 뺀 차율을 활용하였다. 일본 이외의 6개 국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삭감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에 인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수입 측면에서는 일본, 수출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각각 최대의 수혜국이라는 점이다. 즉 일본은 기존 MFN 관세율이 제조업 제품 중심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TPP 세율과의 차이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산물 시장을 거의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최대의 '수혜국'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66) 2013년 3월 아베 일본 총리는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일본정부의 협상 6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① 농산물 5대 품목의 관세철폐 유예 ②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치목표(수입할당) 수용 불가 ③ 공적 의료보험제도 유지 ④ 식료품의 안전 기준 고수 ⑤ ISDS 조항 도입 반대 ⑥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 공세였다. 김규판(2013), p. 6 참고.

167)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b), 『TPPにおける関税交渉の結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6), p. 3.

168) 高橋(2017)는 일본기업이 ASEAN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와의 무역에서 기존 양자간 FTA, AFTA, 중·ASEAN FTA(ACFTA), TPP 중 어느 FTA를 활용하는 것이 수출과 수입에서 유리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각각에 대한 관세삭감률을 계산·비교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전체 관세삭감률 혜택은 4.7%로 단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베트남이 TPP를 활용하여 다른 TPP 6개국(미국,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에 수출할 때 100만 달러 당 4.7만 달러의 수입 관세삭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베트남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섬유제품과 신발의 관세삭감 효과가 매우 크고, 전체적으로 발효 1년 후 베트남의 대미 수출 시 TPP 이용에 따른 관세삭감률은 15.2%(MFN 세율 16.4%-TPP 세율 1.2%)에 달한다.[169] 이와 같은 사실은 역으로 미국이 탈퇴한 TPP11 협상에 베트남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TPP12 협상 결과 수출 측면에서 베트남 못지않게 일본이 관세혜택을 크게 볼 수 있음도 주목할만 하다. [표 4-4]에 따르면 일본은 TPP를 활용하여 다른 TPP 6개국(미국,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에 수출할 때 1.7%의 관세삭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트남, 캐나다에 이어 3번째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TPP12 협상 결과 다른 11개국으로부터 공산품(약 19조 엔) 99.9%에 대

표 4-4. TPP 참여국의 관세삭감 효과

(단위: 2016년, 가중평균)

국가	대(對)TPP11 수입 시 관세인하(양허)[1]			대(對)TPP6 수출 시 관세삭감 혜택[1]		
	수입액 (100만 달러)	관세삭감액 (100만 달러)	관세삭감률 (%)	수출액 (100만 달러)	관세삭감액 (100만 달러)	관세삭감률 (%)
미국	794,645	20,326	2.6	357,429	5,369	1.5
캐나다	264,227	3,983	1.5	290,875	5,361	1.8
칠레[2]	19,067	1,128	5.9	17,801	178	1.0
일본	166,820	1,617	1.0	193,825	3,262	1.7
말레이시아	60,059	771	1.3	73,684	651	0.9
베트남	33,834	644	1.9	67,447	3,169	4.7
호주	129,224	2,540	2.0	53,044	439	0.8

주: 1) 수입과 수출 시 대상 국가 수가 다름에 유의할 것. TPP6=미국,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2) 칠레의 수입 관세삭감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TPP 협상에서 일률적으로 6%의 관세율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자료: 高橋(2017), p. 148(표 3) 및 p. 149(표 4).

169) 高橋(2017), p. 148.

한 관세철폐를 약속받았는데, 즉시철폐율도 76.6%에 달한다. 특히 일본의 FTA 미체결국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TPP 발효 시점에서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비율을 미국의 경우 현행 38%에서 67%,[170] 캐나다의 경우 47%에서 68%, 뉴질랜드의 경우 79%에서 98%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이들 3국 합계 약 7조 8,000억 엔에 해당하는 일본산 공산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171]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TPP 협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유보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유보분야(예외분야)는 현재 유보분야와 미래 유보분야로 구분하는데, 후자(미래 유보분야)에 대해서는 '톱니조항(Ratchet Clause: 자유화를 실시한 경우 그 후 자유화를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적용하지 않는다.[172]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관점에서 일본 재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에서의 외자규제 완화는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TPP 발효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유통업의 출점에 대해 베트남 전역에 걸친 '경제수요테스트(Economic Needs Test, 출점지역의 점포 수나 해당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한 출점심사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편의점에 대한 외자출자 금지를 출자 상한 30%로 확대하는 등 소매업

170) 일본의 대미 공산품 수출액(약 10조 엔) 100%가 관세철폐 대상인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가전, 산업용기계, 화학제품 등 일본의 주력 품목은 99% 이상이 즉시철폐 대상임.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a),「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9.

171)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a),「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9.

172) 石川(2016a), p. 21.

에 대한 외자규제를 완화하고 소매업의 제반 절차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173]

기타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경우 전기통신업의 외자출자비율 규제를 65%에서 75%로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은행에 대한 외자출자비율 규제도 15%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수의 상한을 8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외국은행의 점포 외 신규 ATM 설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국영 재보험사업체로부터의 재보험 구입 의무 비율을 30%에서 2.5%로 대폭 완화하며, 현행 상한 49%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외자출자비율 규제를 철폐하며, 부미푸트라(Bumiputera) 정책에 관한 유보를 대폭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는 투자 사전심사의 임계치를 3억 6,900만 캐나다 달러에서 15억 캐나다 달러로 인상하였다. 일본의 쿨 저팬(Cool Japan) 추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캐나다는 온라인에 제공되는 외국 음향 영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베트남은 극장, 라이브하우스 등 오락서비스의 외자규제를 현행 49%에서 51%로 완화하고 국내영화우선지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174]

2) 정부조달

일본정부는 TPP의 정부조달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WTO의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일본기업의 진출 기회를 처음으로 약속하였고,[175] GPA 가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는 GPA 이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173)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a),「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11.

174)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a),「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p. 11~12.

175)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통신사(Vietnam News Agency), 호치민국가정치학원(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베트남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 베트남과학기술원(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34개의 공립병원이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투자개발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말레이시아무역개발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말레이시아중소기업공사(SME Corporation Malaysia), 말레이시아생산성공사(Malaysia Productivity Corporation)이고, 보건부 산하 공립병원, 교육부 산하 공립학교는 본 협정 대상임.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TPPの内容:(15)政府調達-付属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5). p. 31.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176]

표 4-5. TPP 정부조달의 적용 기준액

(단위: 10,000SDR)

국가	구분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기관		기타 기관	
		물품·서비스	건설	물품·서비스	건설	물품·서비스	건설
일본	TPP	10[2]	450	20[2]	1,500	13[2]	450/ 1,500
	GPA	10[2]	450	20[2]	1,500	13[2]	450/ 1,500
칠레	TPP	9.5	500	20	500	22	500
	FTA	10	500	20	1,000	30	1,000
페루	TPP	9.5	500	20	1,000	30	1,000
	FTA	13[2]	500	20[2]	1,500	16[2]	1,500
뉴질랜드	TPP	13	500	-	-	40	500
	GPA	13	500	20	500	40	500
호주	TPP	13	500	35.5	500	40	1,500
	FTA	13	500	35.5	500	45	500
캐나다	TPP	13	500	35.5	500	35.5	500
	GPA	13	500	35.5	500	35.5	500
멕시코[4]	TPP/ FTA	5.3	689.1	-	-	25.8	826.1
싱가포르	TPP	13	500	n.a	n.a	40	500
	FTA	10	-	n.a	n.a	10	-
	GPA	13	500	n.a	n.a	40	500
브루나이	TPP	13[1]	500	n.a	n.a	13[1]	500
베트남	TPP	13[1]	850[1]	-	-	200[1]	1,500[1]
말레이시아	TPP	13[1]	1,400[1]	-	-	15[1]	1,400[1]
미국	TPP	13	500	-	-	16[3]	500
	GPA	13	500	35.5	500	16[3]	500

주: 1) 경과조치의 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의 최종 기준액. 기준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여야 함.
2)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액 설정.
3) 25만 달러의 환산액.
4) 멕시코의 기준액은 2014년 2월 시점의 추계치임.

자료: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 「TPPの内容: (15)政府調達-付属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5), pp. 30~31.

176)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a),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12 및 石川(2016a), p. 21.

GPA 가입국이자 기체결 FTA에 정부조달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는 TPP의 정부조달 장(章)과 부속서(Annex 15-A)에 의거하여, GPA 또는 기체결 FTA의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던 기관을 각각 6개, 10개, 10개, 4개씩 추가하고, 캐나다와 호주는 대상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정부조달 기준액 측면에서도 GPA 가입국(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은 GPA와 같은 금액이지만,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호주가 기체결 FTA에 비해 조달 기준액을 일부 인하하여 외국인에 개방하는 정부 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177] [표 4-5]는 TPP 협정의 정부조달 적용 기준액을 보여주고 있다.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178]

가. 원산지규정

일본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업계가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본국에서의 부품 조달이 중요한 상황에서, 첫째 TPP 원산지 규정이 완전 누적제도를 도입한 점, 둘째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당초 자신의 주장에 근접하게 RVC(역내원산지 비율(Regional Value Content)를 설정한 점, 셋째, 원산지 증명에 관한 자율신고제를 도입한 점을 TPP 원산지 규정의 의의로 들고 있다.

첫째, TPP 원산지 규정은 체결국별로 원산품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누적 제도가 아니라 어느 영역(지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누적을 한 다음 원산품 여부를 판단하는 완전 누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어떤 생산품의 최종 조립

177) 藤井, 根本, 「15 . 政府調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8), pp. 6~7.
178) 상품교역(규범분야), 서비스무역(규범분야), 노동 및 환경 분야도 TPP협정의 주요 규범을 구성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쟁점도가 낮아 지면한계상 생략한다.

을 실시하는 체결국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이 역내 원산지 비율보다 낮은 경우 만일 누적제도가 없으면 원산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완전누적제도라면 TPP에 속하는 다른 체결국가에서 제조한 기간부품 등의 부가가치 비율의 합산이 가능하여 역내원산지 비율을 충족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 체결한 FTA에서도 완전 누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FTA가 양자간 협정인 데 반해 TPP는 12개 국가를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누적제도의 채택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179]

둘째, TPP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 기준의 공제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내 원산지 비율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TPP 협상과정에서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이 중국 등 TPP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NAFTA의 RVC 60~62.5%를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중국, 태국 등 TPP 역외를 포함하는 공급망(supply chain)을 유지하기 위해 TPP RVC를 30% 정도로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였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80] TPP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은 [글상자 4-1]을 참조할 수 있다.

글상자 4-1. TPP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 TPP 원산지 규정에서 실질적 변경기준(① 관세분류 변경기준 ② 가공공정 기준 ③ 부가가치 기준) 중 첫 번째 관세분류 변경기준은 세계세관기구(WCO)의 HS 조약에 의거하여, 특정 생산품별로 관세분류 변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을 따르고 있고, 두 번째의 가공공정 기준에 따르면 HS 코드 28 챕터(chapter)에서 38 챕터에 해당하는 화학공업의 생산품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체결국 영역에서 화학반응이 행해진 것을 원산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의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원산지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요건으로서 중점가격 방식, 공제방식, 적립방식, 순비용방식[181]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3D의 B절(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어떤 생산품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점가격 방식과 순비용 방식은 TPP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기도 하다.

179) 河野, 早野, 近藤, 「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 10 및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a),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자료(검색일: 2017. 8. 12), p. 14.
180) 河野, 早野, 近藤, 「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 9.

- 승용차에 대해 공제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내 원산지 비율이 55% 이상이어야 하고, 순비용 방식을 이용할 경우 역내원산지 비율은 45% 이상이다. 다만 승용차에 대해 관세분류변경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분류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RVC를 45~55%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구성 부품에 대해 협정에 명기된 가공공정 중 하나라도 TPP 역내에서 이뤄지면 원산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 2015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14).[182] 다만 상기 공제방식 외에도 순비용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역내원산지 비율은 35~45% 이상이다(표 4-6 참고).

표 4-6. 자동차 관련 TPP 누적원산지 규정

구분	HS 코드	관세분류 변경기준	순비용방식	공제방식
엔진	8407.33-8407.34	무	45%	55%
완성차	8702-8705	무	45%	55%
샤시(엔진부착)	8706	무	45%	55%
차체	8707	유	35%	45%
범퍼·시트벨트	8708.10-8708.21	유	45%	55%
브레이크·기어박스	8708.30-8708.40	유	45%	55%
차축	8708.50	유	40%	50%
호일	8708.70	유	35%	45%
서스펜션	8708.80	유	45%	55%
라디에이터 등	8708.91-8708.93	유	35%	45%
핸들	8708.94	유	45%	55%
에어백 등	8708.95-8708.99	유	40%	50%

주: 적립방식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순비용방식과 RVC가 동일함.
자료: 河野, 早野, 近藤, 「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p. 13~14.

181) 중점가격 방식은 생산품 가격에서 특정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뺀 부분이 생산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고, 순비용방식은 순비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뺀 부분이 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중점가격 방식은 일부 광공업 제품에 적용하는데, 공제방식과의 차이는 생산품 가격에서 공제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특정 주요 재료로 한정한다는 데 있다.

182) 엔진, 샤시(엔진부착), 범퍼, 시트벨트, 기타 차체 부분품, 브레이크, 기어박스 등 12개 자동차부품(예: 엔진)은 해당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예: 엔진 재료)가 체결국 내에서 상기 자동차의 유연메커니즘에서 언급한 가공공정 11개(복잡한 조립, 복잡한 용접, 주도, 열처리, 적층, 절삭 등) 중 하나라도

셋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수입자가 TPP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수입국)에 해당 생산품이 TPP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품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TPP에서는 무역절차의 간소화 관점에서 생산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생산품이 원산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는 ① 제3자 증명제도[183] ② 인증수출자의 자율증명제도 ③ 자율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율신고제도는 2015년 1월 발효된 일·호주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다만 일·호주 FTA에서는 제3자 증명제도를 자율신고제도와 병행하고 있는 데 반해, TPP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신고제도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84]

TPP 원산지 규정은 자율신고제도와 함께 수입국(체결국)에 대해 원산지(원산성)를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입국에 대해 ① 수입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정보 요구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정보 요구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 방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시설 방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은 TPP 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입국의 원산지 사후 확인 절차는 일·호주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185]

TPP 역내에서 이뤄지면 해당 재료를 해당 부품의 RVC 산정시 원산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 때 RVC에 산입할 수 있는 해당 재료의 가격은 해당 부품 가격 또는 순비용의 5~10%로 제한한다. 河野, 早野, 近藤, 「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p. 14~15.

183) 제3자 증명제도란 수출국(체결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일본은 일본상공회의소)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고, 인증 수출자의 자율증명제도는 수출국(체결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하는 제도이며, 자율신고 제도는 생산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하는 제도임.

184) 河野, 早野, 近藤, 「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 11 및 内閣官房 TPP政府対策本部(2015a),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13.

185) 河野, 早野, 近藤, 「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p. 11~12.

나. 전자상거래

일본정부는 TPP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WTO 협정에는 전자상거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스위스 FTA나 일·호주 FTA, 일·몽골 FTA 등 일본의 기체결 FTA나 협상 중인 미국·EU FTA(TTIP)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186] 그 중에서도 첫째, 체결국 간에 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둘째, 디지털 상품[187]의 무차별 대우, 셋째,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개인정보 포함), 넷째, 컴퓨터 관련 설비의 소재지 요구에 대한 원칙적 금지, 다섯째,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source code) 이전 또는 접근 요구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기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항은 기체결 FTA에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188] 각각의 규범에 대한 설명은 [글상자 4-2]에 정리하였다.

글상자 4-2. TPP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범

가. 관세 부과 금지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체결국이 전자적인 송신(콘텐츠 포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TPP 협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은 예외다.

나. 디지털 상품의 무차별 대우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체결국이 다른 체결국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체결국 및 비체결국의 디지

186) 藤井, 河合, 「14. 電子商取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 4.

187) 디지털상품(digital product)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어 상업적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생산되고 전자 송신이 가능한 것을 지칭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비디오, 영상, 녹음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상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금전 포함)은 제외한다. TPP 협정문 14.1조.

188)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 「TPPの内容:(14)電子商取引-ルール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0).

털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내외차별 금지) 및 비체결국을 포함하는 최혜국대우 원칙(내외차별 금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18장) 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에 저촉되는 부분은 예외이고, 방송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경간 정보 이전(유통)과 개인정보 보호

TPP 전자상거래 장 14.8조는 각 체결국이 관련 국제기관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4.11조는 각 체결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이전에 대해 규제를 설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결국이 자의적·차별적·허위적이지 않고 필요 이상의 제한이 아니라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경간이전은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189)]

라. 컴퓨터 관련 설비의 소재지 요구에 대한 원칙적 금지

TPP 협정 14.13조 2는 자국 내 사업 요건으로서 '대상자'에게 데이터를 처리·보존하기 위한 컴퓨터 서버나 기억장치 등 컴퓨터 관련 설비를 체결국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는 기업의 설비 배치 최적화나 비용 최소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기업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경간 정보이전 항목과 마찬가지로 체결국이 자의적·차별적·허위적이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컴퓨터 관련 설비의 이용·설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제는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규정상 '대상자'가 아니므로 체결국이 이들에게 현지 서버 설치를 요구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마.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이전 또는 접근 요구에 대한 원칙적 금지

TPP 협정 14.17조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source code) 이전 또는 접근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스 코드의 경우 과거 중국 등지에서 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고, WTO 협정과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다만 TPP의 이 규정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에 적용되고, 핵심 기반(critical infrastructure)을 위해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예외다.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와 핵심기반을 위해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 체결국의 에너지, 교통 또는 통신 등 주요 인프라 설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체결국이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藤井, 河合, 「14. 電子商取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8), pp. 1~7.

189) 국경간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가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이전을 보장한 'Safe Harbor' 협정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시되는 경향이다. 일본에서도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개정하여 해외의 제3자에 개인 정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요하도록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정비한 국가에 대한 정보 이전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다. 국영기업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TPP 협정은 관련 시장을 특정하고 상품·서비스 무역, 대상투자재산(국영기업의 해외투자) 별로 상세한 무차별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 FTA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190]

TPP 협정은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 규제'를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투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WTO 규범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191] 다시 말해 WTO GATS 규정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에서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 조항은 존재하지만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모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TPP 협정의 국영기업 장(章)은 규제 대상이 국영기업에 국한되지만, 해외투자 국영기업에 대한 원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아닌 국영기업에 의한 비상업적 원조에 대해 WTO의 SCM 협정(보조금 및 상쇄조치에 관한 협정)은 국영기업의 정부기관으로서의 성질 또는 지원에 대해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위탁·지시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TPP 협정에서는 그 증명을 요하지 않고 국영기업에 의한 비상업적 원조라면 SCM 협정과 유사한 손해 규율을 직접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WTO+ 규범이라 평가된다.[192]

그러나 TPP 협정 17.2조는 국영기업·지정독점기업의 활동 중 체결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 의무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93] 나아가 부속서

190) 川瀬, 川島(2016), 「17. 1. 国有企業及び指定独占企業(本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3), pp. 8~9.
191) 川瀬, 川島(2016), 「17. 1. 国有企業及び指定独占企業(本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3), p. 9.
192) 川瀬, 川島(2016), 「17. 1. 国有企業及び指定独占企業(本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3), pp. 10~11.
193) 즉, 독립연금기금이나 정부조달, 정부기능 수행을 위한 국영기업의 물품·서비스 제공 등은 적용에서 배제하고,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WTO 서비스일반협정(GATS) 조항(1조 3(c)) 및 금융서비스 부속서 1절(b)과 마찬가지로 TPP 국영기업에 관한 핵심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Annex Ⅳ)에는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미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이 유보표를 통해 국영기업·지정독점기업의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각종 규범을 유보하고 있다(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경우는 후술). TPP 협정에서 규정하는 국영기업의 범위가 협소하며 유보 대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영기업 규범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194] [글상자 4-3]은 TPP의 국영기업 관련 주요 규범을 정의, 적용범위, 국영기업의 상업적 고려 및 무차별 대우 원칙, 비상업적 원조 규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글상자 4-3. TPP의 국영기업 관련 주요 규범

가. 국영기업 정의 및 적용범위

- TPP 국영기업 장(章)(제17장)은 국영기업(SOE:State-owned Enterprise)을 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의결권의 과반을 지배하거나,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에 대해 임명권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17.1조). 지정 독점기업(designated monopoly)이란 첫째, 어떤 물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입자로서 체결국 정부가 TPP 협정 발효 후에 지정한 민간 기업 및 둘째, 체결국이 독점으로 지정하는 또는 지정한 정부 기업을 가르킨다.

나. 국영기업의 상업적 고려 및 무차별대우 원칙

- TPP 협정은 체결국의 국영기업과 지정독점기업이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업적 고려에 입각하여 물품·서비스를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업적 고려란 가격, 품질, 시장성, 운송 등 매매조건 또는 민간기업이 상업상 의사결정 시 평소 고려하는 기타 요소를 가르킨다.
- TPP 협정은 국영기업과 지정독점기업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체결국은 국영기업의 물품·서비스 구입 시 다른 체결국은 물론 비체결국의 물품·서비스와의 무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자국내에 설립된 체결국 및 비체결국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서비

않는다. 나아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17.2조 5)와 독립연금기금이 지배·소유하는 기업(17.2조 6(b))은 이들 펀드·기업을 통한 또한 이들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후술)에 관해 17.6조 1 또는 3 조항을 적용하지만, 그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Khazanah Nasional)에 대해서는 TPP 발효 후 2년간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7.2조 5의 각주). 나아가 국영기업·지정독점기업이 규제상, 행정상 등의 이유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업이 TPP 협정상의 의무에 반하지 않고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17.3조)함으로써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94) 川瀬, 川島(2016), 「17. 1. 国有企業及び指定独占企業(本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3), p. 8.

글상자 4-3. 계속

스와의 무차별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국영기업의 물품·서비스 판매 시에도 위와 동일한 무차별을 보증해야 한다. 지정독점기업에 대해서도 독점이 인정된 물품·서비스의 구입·판매에 대해 위와 동일한 무차별 대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점이 인정되지 않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반경쟁적 행위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 규제

- 비상업적 원조란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원조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인 자금이전 및 자금·채무의 이전 가능성(증여·채무면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보다 유리한 융자·채무보증, 민간의 투자관행에 적합하지 않는 출자),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품·서비스(단, 인프라 제외)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는 체결국 정부가 직접 또는 위탁·지시에 의해 다른 비국영기업이 국영기업에 대해 비상업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자국 국영기업에 의한 물품의 생산·판매나 자국 국영기업에 의한 다른 체결국으로의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다른 체결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17.6조(비상업적 원조) 및 17.7조(비상업적원조의 악영향)의 적용 확대 여부를 재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라. 비상업적 원조에 의한 손해 규제

- TPP 협정은 특정 체결국의 국영기업이 정부의 원조하에 다른 체결국(투자수용국) 시장에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해당 체결국(투자수용국)의 국내산업에 손해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란 실질적 손해(material injury)를 의미하는데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 내지는 그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 비상업적 원조 규제에 대한 예외규정

- TPP 협정은 상기 17.2조에 명시한 예외 규정 외에도 첫째 17.6조(비상업적 원조)의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경제위기 상황(17.13조 1) 및 수입 2억 SDR 이하(17.13조 5, 부속서 17A)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차압이나 투자보험지불에 따라 일시적으로 역외기업의 소유권을 국영기업이 인수하는 경우도 17.6조(비상업적 원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川瀨, 川島(2016),「17. 1. 国有企業及び指定独占企業 (本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3) 참고.

라. 지재권

TPP 협정의 지재권 장(章, 18장)은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의장, 저작권, 비공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범은 WTO TRIPS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와 지재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195] 주요 내용은 [글상

자 4-4]에 정리하였다.

TPP 협상 과정에서는 특허 관련 의약품 등의 시험 데이터 보호 기간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첫째, TPP 18.47조는 체결국이 신규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 승인 조건으로서 해당 화학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비공개 시험 데이터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규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 승인 일자로부터 적어도 10년간 제3자가 그 정보 또는 해당 판매 승인에 기초하여 동일 내지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업용 화학품에 대한 비공개 시험데이터 보호 조항이다. 둘째, 마찬가지로 TPP 18.50조는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도 비공개 시험 데이터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신규 의약품의 경우에는 판매승인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도 최소 5년의 보호 조항을 두고 있고, 신규 임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년(미승인 화학물질을 포함한 신규 의약품의 경우는 최소 5년)의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셋째, TPP 18.51조는 신규 의약품처럼 생물제제(製剤)에 대해서도 최소 5년간의 비공개 시험 데이터 보고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인간의 질병 예방·치료에 사용되고, 바이오 기술 공정으로 생산되는 단백질 의약품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6]

글상자 4-4. TPP의 지재권 관련 주요 규범

가. 의약품의 지재권 보호 강화
- 특허기간 연장제도(판매승인절차의 결과에 따른 특허기간의 불합리한 단축에 대해, 특허권자 보상 차원에서 특허기간 조정을 인정)
- 신약의 데이터 보호기간에 대한 규범의 구축
- 특허연계(patent linkage) 제도(복제의약품 승인 시 유효 특허를 고려하는 제도)[197]

나. 상표
- 상표권 취득의 원활화: 국제적 표준의 일괄 출원을 규정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말레이시아, 캐

195)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 「TPPの内容:(18)知的財産-ルール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 p. 1.
196) 鈴木, 「18.3 知的財産権(特許及び不開示データ)」,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18), p. 3.

글상자 4-4. 계속(1)

나다, 페루 등이 미체결) 또는 상표 출원 절차의 국제적 제도 조화와 간소화를 추구하는 싱가포르상표법 조약(말레이시아, 캐나다, 페루, 멕시코 등이 미체결)의 체결을 의무화
- 상표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다. 특허
- 특허기간 연장제도(출원 후 5년, 심사청구 후 3년을 경과한 특허 출원이 권리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특허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의무화
-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특허 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표한 경우 등에는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도입 의무화

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방지
-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위해, 권리자로부터 통보를 받아 프로바이더 사업자가 대응함으로써 배상 면책을 얻는 제도를 도입. 프로바이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방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담보

마. 지재권 보호의 권리 행사
- WTO의 TRIPS 협정이나 ACTA(위조품 거래 방지 협정)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범을 도입.
  예: 부정 상표 혹은 저작권 침해 의심이 있는 상품·물품의 수출입 또는 국경 통과시 당국이 직권으로 차압 등의 국경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상표를 침해하는 라벨이나 팩키지의 사용, 영화 무단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의무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의 시청을 제한하는 암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기기의 제조·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구제조치 도입

바. 저작권
- 저작물(영화 포함), 실연 또는 레코드의 보호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함. 첫째, 자연인의 생존기간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의 사후 최소한 70년, 둘째 자연인의 생존기간에 기초하여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1)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레코드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최초의 공표 년도 말부터 최소한 70년, (2)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레코드 창작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공표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레코드의 창작 년도말부터 최소한 70년 중 하나를 적용
-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물의 위법적 복제 등을 비친고죄로 함. 단, 시장에서 원저작물 등의 수익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197) TPP는 의약품 판매 승인과 관한 이른바 특허연계(patent linkage)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대부분 제3자의 의약품 판매 개시를 막기 위한 일정한 권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TPP에서는 해당 의약품이 판매되기 전에 제3자의 의약품 판매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거나, 특허권자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및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교적 느슨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Ibid.*, p. 4).

글상자 4-4. 계속(2)

- 저작물 등의 침해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사. 지리적 표시(GI)

- GI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정하는 경우, ①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없이 신청 등을 처리할 것, ②신청 등 대상이 되는 GI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할 것, ③GI의 보호 또는 인정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할 것 등을 규정함.

자료: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TPPの内容: (18)知的財産-ルール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 pp. 1~2.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1) TPP11 협상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198]하자 일본은 미국을 배제한 TPP는 의미가 없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2017년 3월 칠레에서 개최된 TPP11 각료회의에서 TPP11의 의의를 확인하고, 5월의 각료회의에서는 11월의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기본합의를 도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TPP11의 협상 타결을 주도했다.[199][200] 단, 이 과정

19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PP 탈퇴는 일부 TPP 협정문에 대한 미국 재계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 의약계는 바이오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미국 국내법 8년 vs. TPP 8년/5년 중 택일)에 불만이 높았고, 금융업계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조항과 ISDS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이 높았다. 2016년 1월 미국 하원의원 63명이 재무장관과 USTR 대표, NEC(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에게 상기 조항의 금융업계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였다. 滝井(2016), p. 37.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이자 민관포럼인 ITAC10(서비스 및 금융 분야)은 TPP 협정의 금융서비스 장 11.2조 2가 금융서비스업에 대해 ISDS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2).

199) 미국 탈퇴 이후 TPP11의 협상 경위에 대해서는 外務省,「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TPP)協定交渉

에서 일본은 미국이 배제된 TPP11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설득작업에 주력하였다. [글상자 4-5]와 [글상자 4-6]은 각각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TPP12 협상 쟁점에 대한 견해와 합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베트남은 국영기업과 섬유분야 누적원산지 조항에 불만이 여전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영기업 관련 부미푸트라 정책[201]과 정부조달 규정에 불만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글상자 4-5. 베트남의 TPP12에서의 핵심 쟁점

가. 투자·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 조치

표 4-7. 베트남의 투자·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 조치[1)]

분야	규제항목	자유화·유보조치	유보 대상 의무[2)]
서비스 일반 (유보 기재방법)	-	-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3)] - 조치·규제 내용을 모두 서술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NT, MFN, MA, LP, PR, SMBD
유통	경제수요 테스트 (ENT)	- TPP 협정 발효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매업 판매점(편의점, 수퍼마켓 등)의 설립(두 번째 점포 이후)에 대한 ENT 면제 • 단, 지정 상업지구(호치민과 같은 도시권)내 500㎡ 미만의 소규모 점포의 출점에 대해서는 발효 후 즉시 폐지	NT

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0) 참고. 단, TPP11의 기본합의 도출 과정에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TPP11에 적극적(동결 최소화)이었고 칠레와 페루는 소극적(동결 최대화)이었던 반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TPP 협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TPP11半歩前進」(2017. 9. 23).

200) TPP 11개 국가 중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먼저 '동결' 항목을 제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NAFTA 재협상을 시작하였는데, TPP 협상을 빨리 종결하여 NAFTA 재협상에 주력하고, 미국이 NAFTA 재협상에서 일부 TPP12 합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조기에 동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유제품 등 수입쿼터 확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TPP11 협상에서 조기 동결 혹은 수입쿼터 축소를 희망하였다. 「TPP11凍結項目で溝」(2017. 8. 31).

201) 부미푸트라(Bumiputera, 말레이시아인이라는 뜻) 우대정책은 1969년 화교계와 말레이시아계간 경제격차를 배경으로 폭동이 발생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1971년 도입한 정책인데, 부마푸트라의 기업 출자비율을 최소 30%로 규제하고 고용비율을 종족별 인구비율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石川(2016b), p. 33.

글상자 4-5. 계속(1)

표 4-7. 계속(1)

분야	규제항목	자유화·유보조치	유보 대상 의무[2]
전기통신	외자규제	- 서비스: 아래 규제를 철폐 •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고정·휴대 지상파 서비스 제공은 국제전기통신 서비스 면허를 보유하고, 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 - 투자 • (비설비 베이스의 서비스 투자) TPP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JV(합작투자) 요구 또는 외자출자 규제(65% 이내)를 철폐 • (설비 베이스의 서비스 투자) TPP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기본 서비스에 대한 49%(부가가치 서비스는 50%) 외자출자제한을 65%까지 인상	NT
음향영상서비스 (영화상영)	외자규제	- 투자 장: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규제 이외는 자유화[4] • 베트남의 주요 기념일에는 베트남 영화를 상영해야만 함. • 베트남 영화의 상영 비율을 '1년간' 20%로 하고, 영화관은 18시부터 22시까지는 적어도 한 편의 베트남 영화를 상영해야 함.	PR
음향영상 (영화 제작, 배급, 상영)	거점형태	- 베트남 기업의 주식 구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케 됨. • 현재는 JV 또는 업무제휴 계약 형태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	NT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외자출자 제한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전자 게임 서비스: TPP 발효 후 2년 이내에 49% 외자출자 제한을 51%로 완화하고 발효 5년 후에는 제한 철폐	NT
오락 서비스 (극장, 라이브 하우스, 서커스 등)	JV 요구 및 외자출자 제한	- 극장, 라이브하우스, 서커스 등 오락 서비스 제공: TPP 협정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행 49% 이하의 외자출자 제한을 51%로 완화	NT
해상운송서비스	외자규제	- 해상운송(여객·화물) 분야에서 외국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 • 단,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JV 또는 베트남기업의 주식취득(49% 이하)만 가능하고, 외국선원은 전체 종업원의 1/3 이하여야 하며 선장 등은 베트남인이어야 함.	NT

글상자 4-5. 계속(2)

표 4-7. 계속(2)

분야	규제항목	자유화·유보조치	유보 대상 의무[2]
부동산	외자규제	- 부동산 임차 및 전대를 자유화[5] • 단, 외국기업은 유보표에 열거한 형태의 건설, 구입, lease purchase(임차만기구입), 임차 등만 가능	NT
금융	외자출자 제한	- 외국인 '전략투자자'[6]의 지방 은행에 대한 출자 비율 제한을 15%에서 20%로 완화	NT,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주: 1) TPP 협정의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베트남의 자유화 및 유보내용을 정리. 단,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용한 것임. 모든 자유화·유보조치 내용은 아래 TPP等政府対策本部 자료 참고.
2) NT: 내국민대우, MFN: 최혜국대우, MA: 시장접근, LP: 거점설치요구 금지, PR: 특정조치의 이행요구 금지, SMBD: 경영간부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금지 의무
3) 베트남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TPP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
4) 일·베트남 투자협정에서 베트남은 음향·영상 서비스 분야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특정 조치의 이행요구를 유보 대상으로 함.
5) 전대(sublease)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과 자가이용 또는 전대 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을 의미함. 이로써 외국의 대형 수퍼마켓이나 백화점이 다른 전문점을 임차인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케 됨.
6) 전략투자자란 베트남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는데, 정책 방향성(예: 부실채권 처리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임.

자료: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TPPの内容: (9)投資 : 各国の留保の主な改善項目」,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5). pp. 17~21 및 梅津, 柴田(2016),「10.2 投資·サービス章留保表(付属書Ⅰ&Ⅱ): ベトナ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5).

나. 섬유·의류제품의 원산지 규정: Yarn Forward Rule에 대한 반발

-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국내에서 직물(布)을 짜서 재단·봉제하는 두 공정을 거친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TPP에서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이 주도하여 'Yarn Foward Rule'이라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 즉, 상기 2공정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실까지 제조해야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베트남은 실이나 직물의 생산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TPP의 'Yarn Foward Rule'을 충족하지 못함.
- 물론 TPP11 협상에서 섬유분야의 TPP 원산지규정을 동결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섬유분야의 관세철폐 규칙 전체가 기능하지 않게 되어 수정할 필요성도 대두. 낙타털실(camel-hair yarn)처럼 역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예외품목 리스트(공급부족리스트, short supply list)를 확대하는 대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수정을 허용하면 다른 국가의 불만이 분출하여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는 우려도 제기. 거기다 'Yarn Foward Rule' 수정에 대한 면화산출국인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

자료:「TPP11繊維で溝」(2017. 9. 10).

글상자 4-6. 말레이시아의 TPP12에서의 핵심 쟁점

□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하자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 장관은 미국·캐나다·멕시코와의 양자간 FTA 협상과 RCEP 조기 체결을 선언하는 등 매우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있음.

가. 투자·서비스 자유화: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유지하되 투자 자유화·서비스 자유화는 일부 시행

- TPP 협정에서 용인된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① 백화점, 하이퍼마켓, 수퍼스토아, 편의점에 대한 부미푸트라의 지분 비율을 최소 30% 유지 ② TPP 발효 후 3년 이내 백화점, 하이퍼마켓, 수퍼스토아, 편의점 각 점포에서 진열대에 전시되는 재고품 단위의 30%를 부미푸트라 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할당 ③ 유통업계에서 외자기업은 부미푸트라의 이사 임명, 말레이시아 인구구성 비율을 반영한 고용비율의 준수, 부미푸트라 인재육성 계획 책정 등의 부미푸트라 육성책 실시 ④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미푸트라주식신탁(ASB: Amanah Saham Bumiputera) 등 신탁투자 용인 ⑤ 해운분야에서 말레이시아 선적은 최저 30%의 부미푸트라 출자 비율 유지 ⑥ 일반보세창고는 최저 30%의 부미푸트라 출자비율 유지 등임.

표 4-8. 말레이시아의 투자·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 조치

분야	규제항목	자유화 조치	유보 대상 의무[1]
서비스일반 (유보 기재방법)	-	-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2] - 조치·규제 내용을 모두 서술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NT, MFN, MA, LP, PR, SMBD
유통	외자출자 제한	- 백화점 및 전문점에 대한 외자출자 비율 상한 철폐. 편의점은 30%, 하이퍼마켓 및 수퍼스토아는 70%까지 출자 가능. - 편의점의 2번째 점포 이후의 출점 시 최소한 3년 전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의무 폐지	NT
금융	외자규제	- 외국은행의 지점 수 상한 확대: 8개 → 16개 - 외국은행의 점포 외 신규 ATM 설치 제한을 원칙상 철폐 - 이들 제한에는 톱니(Rachet)조항을 적용	NT, MFN,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금융(손해보험)	외자규제	- 외국손해보험회사의 국영재보험사업체로부터의 재보험 구입 의무 비율 완화: 30% → 25%. 톱니조항 적용	NT
금융	외자출자 제한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외자출자비율 상한(49%) 철폐	NT
제조업	외자출자 제한	- 오토바이, 승용차, 상용차의 외자출자 제한 완화 • 1,800cc 미만 자동차 제조 및 조립에 대해 외자 49%까지 허용 • 단, 1,800cc 이상 및 RM150,000 이상의 고급 승용차, 픽업트럭, 상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2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제조 및 조립에 대해서는 외자규제 철폐	NT

글상자 4-6. 계속(1)

표 4-8. 계속

분야	규제항목	자유화 조치	유보 대상 의무[1)]
제조업	외자출자 제한	- 바틱(Batik) 직물·의류의 제조에 대해 외자 30%까지 허용	NT

주: 1) NT: 내국민대우, MFN: 최혜국대우, MA: 시장접근, LP: 거점설치요구 금지, PR: 특정조치의 이행요구 금지, SMBD: 경영간부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금지 의무
2) 말레이시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TPP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
자료: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TPPの内容: (9)投資 : 各国の留保の主な改善項目」,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25), pp. 21~24.

나. 자동차 수입: 부미푸트라 정책을 위협

- 말레이시아는 2010년부터 AFTA하에서 ASEAN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 역시 2015년부터 무관세임.
  -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민차보호 관점에서 수입관세 철폐를 상쇄하는 형태로 승용차의 경우 75~105%에 달하는 고율의 물품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음.
  - TPP12 협상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발효 후 12년째에 완성차(CBU: Complete Business Unit)의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합의
  - 물품세나 완성차 수입 등 여타 부분에서의 협상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2021년(발효 3년 후)부터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기업에 대한 물품세 환급조치(부미푸트라 기업 중 현지조달 비율이 30% 이상이면 물품세를 환급받고,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에 따라 물품세를 감면)를 철폐하고, TPP 발효 후 말레이시아는 미국 신차에 대해 수입 라이센스제, 수입수량제한, 신규 또는 추가 과징금 부과 등을 전면 폐지하는 데 합의.

다. 정부조달: 부미푸트라 정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말레이시아가 TPP 협정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개도국인 브루나이, 베트남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대해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 경과조치 기간 중에는 가격우대조치, 조달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 특정 기관·분야의 단계적 추가, 통상 기준액보다 높은 기준액 설정 등을 인정
  - 정부조달 대상 범위(기관)에서도 지방정부 기관과 농촌개발 및 치안 관련 프로젝트, PPP 계약, 준설공사 및 경사대책 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고, 기준액 측면에서도 이행기간(물품 7년간, 서비스 9년, 건설 20년)을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지만 최종 기준액이 건설의 경우 1,400만 SDR로서 선진국의 450만~500만 SDR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음.
  - TPP 협정의 정부조달 규정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조달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TPP 체결국 기업에도 개방되지만 건설공사 하청 총액의 30%는 부미푸트라 기업에 할당하도록 인정하고 있고,

글상자 4-6. 계속(2)

둘째 정부조달 입찰 시 부미푸트라 업자(납품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해 1.25%에서 10%까지의 가격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음.

라. 국영기업: 대부분 적용 배제

- 정부계 기업(GLC)이 약 200개 이상 존재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TPP 국영기업 규제가 배제되고 있고, 부미푸트라 육성에 종사하는 사업체나 주 정부기업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계 기업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정부계 투자펀드 카자나 내셔날(Khazanah Nasional Bhd.)은 TPP 협정이 국영기업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의무에서 면제. 부미푸트라 육성에 핵심적인 MARA, TERAJU, EKUINAS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영기업의 재화·서비스의 연간 조달액 중 최대 40%를 부미푸트라 기업, 중소기업, 사바주(州)·사라와크주(州) 3자에 할당·발주하는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임.

자료: 小野沢(2017), pp. 50~58.

2) 기본합의 내용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 등 11개국은 TPP11에 관한 기본합의를 발표하고 명칭도 CPTPP(포괄적 및 선진적 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바꾸었다.[202][203] TPP11의 기본합의 도출은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는 점과 TPP12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동결'하여 미국의 복귀

202) 일본 내각부의 'TPP 정부대책본부'가 공개한 TPP 각료회의의 공동성명 부속서 I 은 TPP11이 전문(preamble)과 7개 조(article)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조의 제목만 공표하였을 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조는 TPP 협정의 수용(incorporation)인데 TPP11이 TPP12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조는 특정 규정의 적용 정지이고, 그 동결 항목은 공동성명 부속서Ⅱ에 제시하였다. 3조는 효력발생 요건인데, TPP12의 GDP 요건(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을 삭제한 대신 11개국 중 6개국 비준으로 대체하였다. 4조와 5조는 각각 탈퇴와 가입에 관한 규정이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6조는 TPP11 협정의 재검토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일부 농산물의 수입쿼터(TRQ)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일부 농산물의 시장접근 규정)의 동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미·일 FTA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TPP11이 규정한 일부 농산물의 시장접근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6조는 이러한 재협의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7조는 Authentic Texts인데, TPP12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Authentic Texts로 인정하되 각자 번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텍스트에 따르기로 정하였는데 TPP11도 같은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2017b), 「TPP11協定の合意内容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3).

203) 「TPP19年発効目指す」(2017. 11. 12).

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TPP11의 일부 협정문 동결은 미국의 탈퇴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이 대미 수출확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가로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다. 2017년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TPP11의 실현에 합의하였고, 그 후 일본 주도하에 동결항목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동결협상 과정에서는 후보 항목이 최대 60개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2017년 11월의 기본합의에서는 20개 항목을 동결하고 4개 항목은 협정문 서명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204]

[글상자 4-7]은 TPP 협정문 중 TPP11 기본합의에서 도출된 동결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관세양허, 서비스무역·투자, 정부조달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허표, 유보표, 약속표 등이 그대로 유지된 점, 그리고 2017년 7월 이후 TPP11 협상과정에서 동결 후보 항목으로 거론되었던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동결항목에서 제외된 점은 일본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TPP 3원칙'이라 부르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자유의 확보,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이용 요구의 금지,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접근 요구 금지 조항은 모두 유지되었다.[205]

대신 동결항목은 지재권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요구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바이오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원칙 8년), 저작권의 존속기간(저작자의 사후 70년) 등 지식재산에 관한 것이 11개 항목(TPP 협정문의 제18장, [글상자 4-7]의 8~18번 항목)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TPP의 투자 장(章)(제9장)의 ISDS 관련 규정이 동결(글상자 4-7의 2번 항목)되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채굴·판매, 발전·배전, 정수·배수, 전기통신 서비스, 도로·교량 등 인프라 정비 사업을 하는 외국인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국 정부의 합의 위반에 의해 손실을 입더라도 ISDS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4) 菅原(2017), pp. 2~3.
205) 菅原(2017), pp. 4~5.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일본에게 요구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투명성 및 절차의 공정 실시에 관한 규정(글상자 4-7의 20번 항목)과 특급우편서비스에 관한 규정(글상자 4-7의 3번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206]

글상자 4-7. TPP 협정문 중 동결 및 계속협의 항목

가. 20개 동결 항목
1. 급송소액화물(Express Shipments) 제5.7조 1(f) 두 번째 문장
2. ISDS(투자허가, 투자합의) 관련 규정(제9장)
   - 제9.1조 정의. '투자에 관한 합의, '투자 허가' 및 관련 각주 5~11
   - 제9.19조 1. 청구의 중재 의뢰. (a) (i)B 및 C, (b) (i)B 및 C(투자 허가 또는 투자에 관한 합의), 말미 단서, 각주 31
   - 제9.19조 2. 청구의 중재 의뢰. 각주 32
   - 제9.19조 3. 청구의 중재 의뢰. (b) '투자 허가 또는 투자에 관한 합의'의 삭제
   - 제9.22조 5. 중재인의 선정
   - 제9.25조 2. 준거법
   - 부속서 9-L. 투자에 관한 합의
3. 특급우편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s): 부속서 10-B 5 및 6
4. 금융서비스 최저기준 대우 관련 규정. 제11.2조의 대우에 관한 최저기준. 2(b), 각주, 부속서 11-E
5. 전기통신 분쟁 해결. 제13.21조 1(d)
6. 정부조달(참가 조건). 제15.8조 5. 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약속
7. 정부조달(추가 협상). 제15.24조 2.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3년 이내에'*
8. 지식재산의 내국민대우. 제18.8조 각주 4. 마지막 두 문장
9. 특허 대상 사항. 제18.37조 2 및 4(두 번째 문장)
10. 심사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특허를 부여하는 당국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의 조정. 제18.46조
11. 의약승인심사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불합리한 단축에 대한 특허기간의 조정. 제18.48조
12. 일반 의약품 데이터 보호. 공개되지 않은 시험 내지는 기타 데이터의 보호. 제18.50조
13. 바이오의약품(생물제제)의 데이터 보호. 제18.51조
14.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제18.63조
15. 기술적 보호수단(TPMs). 제18.68조
16.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RMI). 제18.69조
17. 위성·케이블 신호의 보호. 암호화된 위성 방송용 및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보호. 제18.79조
18.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법적 구제조치 및 면책. 제18.82조, 부속서 18-E, 부속서 18-F
19. 보존 및 무역(무역과 '다투기 위한(to combat)' 조치). 제20.17조 5, '또는 다른 관련 법령' 및 각주 26

206) 菅原(2017), pp. 5~6.

글상자 4-7. 계속

20.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투명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투명성 및 절차의 공정성. 부속서 26-A, 제3조 절차의 공정성

나. 4개 계속협의 항목

1. 국영기업 장(章) 유보표(말레이시아)[207]
2. 서비스·투자 장(章) 유보표(부속서Ⅱ)의 석탄산업(브루나이)
3. 노동 장(章)의 분쟁처리(제재조치 부분)(제28.20조)(베트남)[208]
4. 문화예외(캐나다)[209]

주: * 체결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결국은 제15.24조 2에 규정하는 협상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 후 5년 이내에 개시되는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협상은 어느 한쪽의 체결국이 요청하면 개시한다.

자료: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2017a),「平成29年11月のダナン(ベトナム)における閣僚会合について : 付属書Ⅱ停止(凍結)される規定のリス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3) 및 内閣官房TPP等政府対策本部(2017b),「TPP11協定の合意内容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3).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1) 한·일 간 관세율 격차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미국이 탈퇴한 TPP11에 단독으로 추가 참여할 것인지, 다른 아시아 4개국, 즉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과 함께 참여할 것인지, 또는 미국이 다시 TPP에 복귀할 것인지, 나아가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협상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 좌우

207)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국영기업의 활동 중 적용제외로 열거한 유보표(부속서Ⅳ)와 서비스·투자 장의 석탄산업 유보표(부속서Ⅱ)에 대해 각각 동결이 아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菅原(2017), p. 5.

208) 베트남은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제28.20조)을 모두 동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장(章)(제19장)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만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조달 장(章)에서 조달기관이 조달 참여조건을 정할 때 "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15.8조 5)은 별도의 동결 항목으로 지정됨(글상자 4-7의 6번 항목). 菅原(2017), p. 5.

209) 캐나다가 요구하고 있는 문화예외는 대상 규정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국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은 캐나다의 요구는 서비스·투자의 국별약속(유보표)의 수정을 수반할 수도 있어 상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요구처럼 국별약속의 유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菅原(2017), p. 6.

될 것이다. 다만 2017년 12월 현재로선 구체적인 TPP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상기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한 고려해야 할 최대변수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라 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pp. 65~75)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TPP12에 한국이 참여(협상 가능, 대일 제조업 94%, 농업 95% 양허, 시나리오 2) 또는 가입(협상여지 없음, 시나리오 5, 99% 관세감축)하는 경우로 나눈 다음, 전자(참여)의 경우 대(對)TPP 순수출이 약 1.09억 달러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지는 13.03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후자(가입)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대TPP 순수출이 약 0.61억 달러 감소하고 대일 수지는 14.32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대TPP 수입증가액의 절반 이상이 대일 수입증가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210]

이하에서는 한국이 한·미 FTA의 관세양허 수준으로 TPP11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대일 관세삭감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이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일본과 FTA 체결을 고려한다면 관세감축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4-9]는 2016년 기준 HS 코드상 21개 산업(section)별 한국과 일본의 기준 관세율(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값)을 보여주고 있다. 가중평균이란 각 산업별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 즉 한국의 경우 각 산업별 대일 수입액을 가중치로 하여 기준 관세율의 가중평균을 구한 것이다. 다만 한국의 기준 관세율은 2016년 기본세율(관세법)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대일 수

210) 단 이와 같은 추정은 SMART 모형이라는 부분균형 모형에 기초한 것이어서 경제전체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격탄력성과 같은 파라미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SMART 모형이란 FTA와 같은 한 국가의 무역정책에 의해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감축되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재 상대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입재 소비 증가는 무역창출효과(해당 국가의 수입재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분, 단 가격탄력성이 변수)와 무역전환효과(다른 국가의 수입재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해당 국가의 수입재 소비 증가분, 단 수입재간 대체탄력성이 변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pp. 58~63.

입 세번(tariff line) 중 약 95.7%가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값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시장여건 및 정책적 이유로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가 적용돼 이를 반영할 경우 관세삭감 효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 12월 TPP 협정문 조인 시 공개한 관세양허표

표 4-9. 한국과 일본의 기준 관세율(2016년)

(단위: %)

HS code	품목	일본		한국		한·일 간 관세율 격차	
		단순평균 (a)	가중평균 (b)	단순평균 (c)	가중평균 (d)	단순평균 (c-a, %p)	가중평균 (d-b, %p)
01-05	동물	5.82	4.96	16.91	16.83	11.1	11.9
06-14	식물	5.10	5.31	18.56	5.30	13.5	0.0
15	동식물유지	4.12	2.58	7.70	7.31	3.6	4.7
16-24	조제식품	13.54	4.98	20.01	14.79	6.5	9.8
25-26	광물	0.32	0.28	2.52	2.86	2.2	2.6
27	광물성 연료	1.60	0.59	5.09	4.03	3.5	3.4
28-38	화학제품	2.56	1.74	5.74	4.63	3.2	2.9
39-40	고무·플라스틱	2.68	3.16	6.65	6.61	4.0	3.5
41-43	원피·가죽 등	10.87	6.87	7.75	5.79	-3.1	-1.1
44-46	목재	2.75	3.21	5.60	2.62	2.9	-0.6
47-49	펄프종이	0.00	0.00	0.00	0.00	0.0	0.0
50-63	섬유·의류	6.88	5.72	9.54	9.15	2.7	3.4
64-67	신발·모자 등	11.52	4.91	10.10	10.73	-1.4	5.8
68-70	돌·도기·유리	1.02	0.32	7.77	7.80	6.8	7.5
71	귀석·귀금속	2.11	0.23	5.20	3.14	3.1	2.9
78-83	금속	0.93	0.42	4.18	2.24	3.3	1.8
84-85	기계	0.07	0.06	5.68	4.54	5.6	4.5
86-89	운송장비	0.00	0.00	5.77	6.39	5.8	6.4
90-92	정밀기기	0.16	0.30	6.81	7.30	6.7	7.0
93-96	무기·잡품	1.94	0.95	4.96	7.30	3.0	6.4
97	기타 제품	0.00	0.00	0.00	0.00	0.0	0.0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2016년도 대한민국 관세율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7);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6년 품목별 국가별 수입 통계(월간) 최종 확정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7); 일본 TPP 협정문 관세양허표(Japan Tariff Elimination Schedu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8); 財務省 貿易統計, 国別品別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Japan Tariff Elimination Schedule)에 제시된 기본세율(base rate)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기준 관세율이 일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농수축산물(동물, 식물)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비해 10%p 이상 높다. 단순평균 기준으로 동물은 11.1%p식물은 13.5%p 높다. 단 한국의 식물에 대한 관세율은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맥주보리(30%), 마늘(50%)과 같이 관세율은 높으나 대일(對日) 수입이 없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광공업 제품의 경우 조제식품(단순평균 13.54%), 원피·가죽제품(단순평균 10.87%), 신발·모자 제품(단순평균 11.52%), 섬유·의류 제품(단순평균 6.88%)을 제외하면 일본의 관세율은 0~3%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운송장비(단순평균 0.00%), 기계(단순평균 0.07%), 광물(단순평균 0.32%), 금속(단순평균 0.93%), 기계(단순평균 0.07%), 정밀기기(단순평균 0.16%)는 거의 무관세 수준이다. 이것을 반영하여 광공업 제품에서 한·일 간 관세율 격차는 단순평균 기준으로 돌·도자기·유리제품(6.8%p), 정밀기기(6.7%p), 조제식품(6.5%p), 운송장비(5.8%p), 기계(5.6%p). 고무·플라스틱(4.0%p), 광물성 연료(3.5%p), 화학제품(3.2%p)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높게 나타난다.

2) 관세율 삭감 효과

[표 4-10]은 앞에서 추정한 기준 관세율의 가중평균값에 기초하여 한국이 TPP11에 참여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상대에게 양보해야 할 관세 수입(tariff incomes), 즉 관세삭감 효과를 다음과 같은 절차와 가정에 입각하여 추정한 것이다.[211] 첫째, 한국의 TPP11 가입 시 관세양허 스케줄은 한·미 FTA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한국이 TPP11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대일 수입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양허한 관세양허 스케줄을 적용하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입은 일본의 TPP 관세율양허 스케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211) 기준관세율 중 단순평균 값에 기초한 관세삭감 효과 추정결과는 지면한계상 생략한다.

다. 단, 한미 FTA 관세양허율이 일본의 기본 세율(TPP schedule 상 base rate)보다 높은 품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12] 둘째, 종가세(ad valorem tax)를 기준으로 과세가 부과되는 품목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종가세와 종량세(unit tax) 중 선택 관세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절관세, 저율 관세할당 등은 단순평균 값을 사용한다. 즉 한·미 FTA와 TPP의 관세양허표에서 미양허 품목, 종량세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한국의 대일 수입 통계 중 하나의 세번(tariff line)에서 복수의 관세 기준이 적용된 경우에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사용했고, 일본의 TPP 관세양허표상 하나의 세번 내에 다른 품목에 대해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단순평균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추정결과를 볼 때, 2016년 기준 관세율이 높은 한국에서 관세 삭감이 더 크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평균으로 보면, 한국은 'TPP 발효 5년차'에 동물 9.52%p, 동식물유지 7.30%p, 식물 4.75%p 등 현행 기준 관세율이 높은 농수축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대일(對日) 관세양허가 대폭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제품의 경우에도 조제식품(11.85%p), 신발·모자(10.73%p), 섬유·의류(9.15%p), 돌·도기·유리(7.8%p), 고무·플라스틱(6.28%p)은 물론 한국의 주력제품이라 할 수 있는 운송장비(6.39%p), 정밀기기(7.20%p), 기계(4.26%p) 등의 제품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양허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TPP에 참여한 후 5년차에 일본은 대한(對韓) 수입 품목 중 섬유·의류(5.68p%), 조제식품(3.04%p), 동물(3.11%p), 원피·가죽(2.83%p), 식물(2.53%p)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1%p 미만의 낮은 관세양허만 허용하고 있다.

212) 이는 한·미 간 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5년차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품목은 분석대상의 0.5%를 차지한다.

표 4-10. 일본과 한국의 관세삭감 효과(가중평균)

(단위: %)

HS code	국가	일본				한국			
	품목	5년차		10년차		5년차		10년차	
		삭감분 (%p)	관세 (%)	삭감분 (%p)	관세 (%)	삭감분 (%p)	관세 (%)	삭감분 (%p)	관세 (%)
01-05	동물	3.11	1.85	4.45	0.51	9.52	7.31	15.32	1.50
06-14	식물	2.53	2.78	2.99	2.32	4.75	0.55	5.16	0.13
15	동식물유지	2.34	0.25	2.58	0.00	7.30	0.01	7.31	0.00
16-24	조제식품	3.04	1.95	3.91	1.07	11.85	2.94	14.46	0.33
25-26	광물	0.28	0.00	0.28	0.00	2.86	0.00	2.86	0.00
27	광물성 연료	0.59	0.00	0.59	0.00	4.02	0.01	4.03	0.00
28-38	화학제품	1.74	0.00	1.74	0.00	4.31	0.32	4.57	0.06
39-40	고무·플라스틱	3.16	0.00	3.16	0.00	6.28	0.33	6.55	0.07
41-43	원피·가죽 등	2.83	4.04	5.59	1.28	5.79	0.00	5.79	0.00
44-46	목재	3.20	0.01	3.20	0.00	2.13	0.49	2.53	0.10
47-49	펄프종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63	섬유·의류	5.68	0.04	5.71	0.01	9.15	0.00	9.15	0.00
64-67	신발·모자 등	2.54	2.36	3.94	0.97	10.73	0.00	10.73	0.00
68-70	돌·도기·유리	0.32	0.00	0.32	0.00	7.80	0.00	7.80	0.00
71	귀석·귀금속	0.23	0.00	0.23	0.00	3.14	0.00	3.14	0.00
78-83	금속	0.41	0.01	0.41	0.00	2.24	0.00	2.24	0.00
84-85	기계	0.06	0.00	0.06	0.00	4.26	0.27	4.48	0.05
86-89	운송장비	0.00	0.00	0.00	0.00	6.39	0.00	6.39	0.00
90-92	정밀기기	0.30	0.00	0.30	0.00	7.20	0.10	7.28	0.02
93-96	무기·잡품	0.95	0.00	0.95	0.00	7.29	0.02	7.30	0.00
97	기타 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2016년도 대한민국 관세율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7);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6년 품목별 국가별 수입 통계(월간) 최종 확정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7); 일본 TPP 협정문 관세양허표(Japan Tariff Elimination Schedu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8); 財務省 貿易統計, 国別品別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 · 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공식적인 통상관계의 연원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1991년에 「일본·EC 공동선언」을 통해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무역·투자·산업협력·첨단기술·에너지·고용·사회문제 및 경쟁규칙 등의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 양측 간에 다면적으로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213] 이에 따라 1991년부터 개최된 일·EU 정기 정상회의는 2017년 7월에 브뤼셀에서 제24차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일·EU FTA 및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한 기본합의가 발표되었다.[214] 일·EU FTA의 경우 2017년 12월에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215] 또한 양측은 「공동선언」 합의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년에 일·EU 간 새로운 추진력의 필요성에 따라, 미래 지향의 일·EU 협력을 위한 의제(agenda)를 채택한 「일·EU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2001~2010)」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평화와 안전, 모두를 위한 글로벌화의 역동성을 살린 경제·무역 관계의 강화, 지구 차원의 문제 및 사회적 과제에 대한 도전, 인적 문화적 교류의 네 가지를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EU 정기 정상회의를 계기로 필요에 따라 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두 번째 항목에서는 상호인정협정(MRA) 실시 및 규제개혁 대화 강화를 통해 양자간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216] 한편 일본과 EU의 경제관계의 강화를 위해 일본 및 EU의 주요 50개 기

---

213) 外務省, 「日本·EC共同宣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0).
214) 外務省, 「第24回日EU定期首脳協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0).
215) 일·EU FTA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2018년에 함께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 "EU and Japan finali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업이 참여하는 「일·EU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이 매년 1회 개최되어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일·EU 정상회의에 제출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제19차 BRT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217]

이러한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측은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었다. 일본의 대EU 교역은 1990년 12.8조 엔, 2005년 16.1조엔 규모로 확대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2009년에는 12.3조 엔 규모로 감소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16조 엔대로 재차 확대되었다. 수출과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각각 12.4조 엔 및 7.7조 엔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급감(2009년 각각 6.7조 엔 및 5.5조 엔)하였다.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수출(8.0조 엔) 및 수입(8.6조 엔)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확대되었다(표 5-1 참고).

표 5-1. 일본의 대EU 수출입 추이

(단위: 조 엔)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수출입	12.8	11.2	13.5	16.1	13.4	16.6	16.1
수출	7.7	6.6	8.4	9.6	7.6	8.0	8.0
수입	5.1	4.6	5.1	6.5	5.8	8.6	8.1

자료: 財務省, 「財務省貿易統計 - 輸出入額の推移(地域(国)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1).

2016년 기준 일본의 대세계 수출 총액은 70조 엔이었는데, 대EU 수출은 11.4%(8.0조 엔)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미국(20.2%), 중국(17.7%)의 뒤를 이어 세 번째 규모이다. 또한 2016년 일본의 대세계 수입 총액은 66조 엔이었는데, 대EU 수입은 12.3%(8.1조 엔)으로 중국(25.8%)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이다.

216) 外務省, 「日EU協力のための行動計画(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0).
217) 外務省, 「日·EUビジネス·ラウンドテーブル」,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5).

표 5-2. 2016년 일본 및 EU 수출입 현황

(단위: %)

일본					EU				
순위	수출		수입		순위	수출		수입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0.2	중국	25.8	1	미국	20.8	중국	20.1
2	중국	17.7	EU	12.3	2	중국	9.7	미국	14.6
3	EU	11.4	미국	11.1	3	스위스	8.1	스위스	7.1
4	한국	7.2	호주	5.0	4	터키	4.5	러시아	6.9
5	대만	6.1	한국	4.1	5	러시아	4.1	터키	3.9
6	홍콩	5.2	대만	3.8	6	일본	3.3	일본	3.9

자료: 財務省,「財務省貿易統計 - 月分·年分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2); European Commission(2017a), p. 1.

또한 EU의 입장에서 2016년 대일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3.3%, 3.9%로, 모두 여섯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5-2 참고).

한편 일본의 대EU 수출(금액 비중)에서 최대를 차지하는 품목은 단연 자동차 분야이다. 2016년에 자동차(승용차·버스·트럭, 15.7%)와 자동차부품(5.8%)이 대EU 수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 2007년 정점(2.2조 엔, 109.3만 대) 대비 2012년 32% 수준(7천억 엔, 43.3만 대)까지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57% 규모(1.25조 엔, 65.3만 대)로 회복하였다. 중분류에서는 일반기계 23.2%(원동기 4.4%, 전산부품 2.9% 등), 수송용기기 26.9%(자동차 15.7%, 자동차부품 5.8% 등), 전기기기 17.8%(전기계측기기 3.3%, 반도체 2.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EU 수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의약품(19.0%, 1.55조 엔)과 자동차(11.7%)이다. 의약품의 수입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였다. 자동차의 수입은 2016년까지 지속 확대되었고,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중분류에서는 화학제품 30.9%(의약품 19.0%, 유기화합물 5.2% 등), 수송용기기 15.1%(자동차 11.7%, 자동차 부품 1.5% 등), 기타 14.2%(과

표 5-3. 2016년 일본의 대EU 수출입 10대 품목별 비중

대EU 수출			대EU 수입		
순위	상위 10대 품목	비중	순위	상위 10대 품목	비중
1	자동차	15.7%	1	의약품	19.0%
2	자동차 부품	5.8%	2	자동차	11.7%
3	원동기	4.4%	3	유기화합물	5.2%
4	전기계측기기	3.3%	4	과학광학기기	4.3%
5	과학광학기기	3.0%	5	원동기	3.6%
6	전산 부품	2.9%	6	육류	2.3%
7	펌프·원심분리기	2.6%	7	가방류	2.3%
8	반도체 등 전자제품	2.4%	8	전기계측기기	2.2%
9	유기화합물	2.3%	9	유기화합물	2.3%
10	전기회로 등 기기	1.7%	10	의류 및 부속품	1.9%

자료: 財務省,「財務省貿易統計 - 月分·年分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2).

학광학기기 4.3%, 가방류 2.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218]

다음으로 투자 측면을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EU로 나타나고 있다. JETRO에서는 일본의 대내외 투자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EU의 대일 투자는 잔액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까지 재차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일본의 FDI 잔액은 2,377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EU의 투자 잔액은 1,047.1억 달러로 전체의 44.0%를 차지하였다. 2013년에는 신규진출 감소와 퇴출 지속 등에 따라 EU의 투자 잔액은 684.6억 달러(비중 40.1%)로 감소하면서 전체 대일 투자액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219]

한편 2013년 현재 EU의 대일 투자 잔액(positions)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413.0억 유로이고 제조업이 382.5억 유로인바, 비제조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금융·보험

218) 財務省,「財務省 貿易統計- 月分·年分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2).
219) JETRO,「日本の直接投資(残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2).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투자 잔액은 2016년에 34.3억 달러이다.

(194.8억 유로), 정보·통신(115.6억 유로) 분야에, 제조업에서는 주로 자동차 등 수송 장비(178.7억 유로), 화학·의약(67.8억 유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5-1.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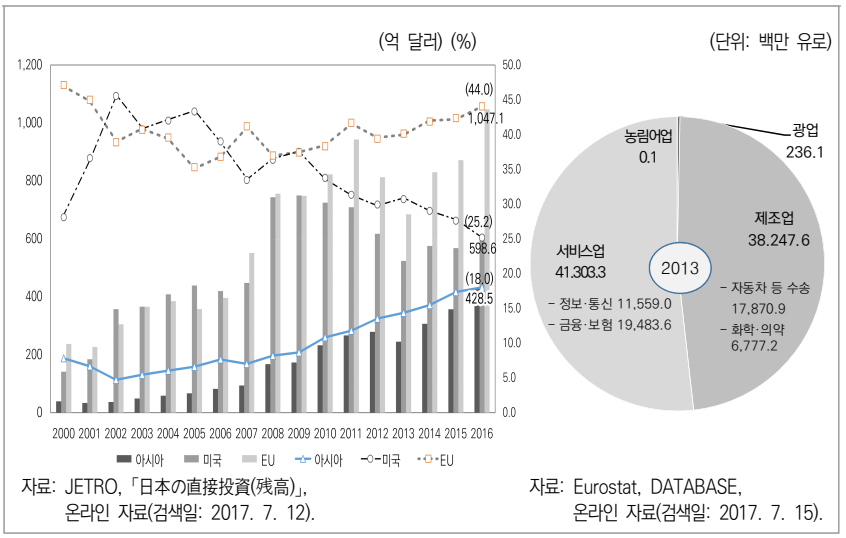

자료: JETRO, 「日本の直接投資(残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2).

자료: Eurostat,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5).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일본과 EU는 2009년 제18차 정상회의에서 「일·EU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2001~2010」의 종료에 따라 향후 1년간 새로운 일·EU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2010년 제19차 정상회의에서는 일·EU 경제관계의 포괄적 강화 및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단(Joint High-Level Group)을 설치하고, 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 등의 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2011년 제20차 정상회의에서는 이 연구단의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일·EU FTA 협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220]

220) 外務省, 「日EU定期首脳協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5).

표 5-4. 일·EU FTA 협상 경과

일시	주요 내용
2011년 5월	일본·EU 정기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의 큰 틀을 정하는 scoping 작업 착수에 합의함.
2012년 11월	EU 외무이사회에서 협상권한(mandate)이 채택되어 일본·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환경이 정비됨.
2013년 4월~ 2014년 4월	제1~5차 협상 개최(장소: 도쿄 또는 브뤼셀)
2014년 4~6월	아베 총리는 유럽(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방문 시 2015년 중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 타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 EU 각국과 조기 타결의 중요성에 일치
2014년 7~10월	제6차(도쿄) 및 제7차(브뤼셀) 협상 개최
2014년 11월	G20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일본·EU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중의 기본합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일치
2014년 12월	제8차 협상(도쿄) 개최
2015년 1월	기시다 외무장관은 유럽 방문시 멜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 2015년 중의 기본합의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실현가능한 것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실현을 위한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을 확인
2015년 2~4월	제9~10차 협상 개최
2015년 5월	일본·EU 정상회의에서 스피드와 질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2015년 중에 기본합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에 일치
2015년 7~11월	제11~13차 협상
2015년 11월	G20 안탈랴(터키) 정상회의 시 일본·EU 정상회담에서 2016년 조기에 기본합의 타결 목표에 일치
2015년 11월~ 2016년 3월	제14~16회 협상 개최
2016년 5월	G20 이세시마 정상회의 시 관계 정상(일본,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2016년 조기에 기본합의에 도달하기로 한 commitment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 발표
2016년 7월	제11차 ASEM 정상회의 시 일본·EU 정상회담에서 2016년 조기에 기본합의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에 일치
2016년 9월	제17차 협상 개최
2016년 12월	기시다 외무장관과 멜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 전화 통화에서 가능한 조기의 기본합의를 목표로 2017년 1월 신속하게 협상을 개최하는 것에 일치
2017년 2월	기시다 외무장관과 멜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기본합의에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2017년 3월	아베 총리 유럽 방문(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시 각국 및 EU와의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기본합의에 도달한다는 강한 commitment를 재확인
2017년 4월	제18회 협상 개최
2017년 7월	제24차 일본·EU 정상회의에서 기본합의를 정상 간에 최종 확인
2017년 12월	양측 정상은 전화 통화로 일·EU FTA 협상의 타결을 확인

자료: 外務省, 「日EU経済連携協定 (EPA) 交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이후 2012년 EU 외무이사회에서 협상권한이 채택됨에 따라 일·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었다. 양측은 2013년 4월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17년 4월까지 4년에 걸쳐 총 1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7년 7월 제24차 정상회의에서 일·EU FTA의 기본합의를 최종 확인하였다. 일본은 2015년 및 2016년에 기본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양측간에 쟁점 부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후 영국의 EU 탈퇴 및 미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EU는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양자간 FTA 기본합의를 확인했으며, 이로부터 5개월 후인 12월에 양측 정상은 일·EU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투자분쟁의 해결제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최종 타결을 확인하였다.[221]

EU는 일본과의 FTA를 준비하기 위해 2010년에 영향평가단(impact assessment steering group)을 설치하고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두 가지 및 야심적인 관점에서의 두 가지 등 모두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전자의 관점은 비관세조치에 따른 비용을 25% 이내로 삭감한다는 가정 하에 일본과 EU가 비대칭적으로 삭감(EU의 상품 6.6% 및 서비스 20% 축소, 일본 전체 20% 축소)하는 것과 동등하게 삭감(양측 전체 20% 축소)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이다. 후자의 관점은 비관세조치에 따른 비용을 50% 정도 삭감한다는 가정 하에 일본과 EU가 비대칭적으로 삭감(EU의 상품 16.5% 및 서비스 50% 축소, 일본 전체 50% 축소)하는 것과 동등하게 삭감(양측 전체 50% 축소)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의 최소치는 보수적 관점의 비대칭적 시나리오이며, 최대치는 야심적 관점의 동등 삭감 시나리오이다.[222]

영향 평가의 추정 결과는 EU와 일본 모두에 이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도출되

221) 「日欧EPA交渉妥結」(2017. 12. 9).

222) European Commission(2012), p. 33. 최대치와 관련해 총수출과 양자간 수출은 야심적 관점에서 동등 삭감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이 관점에서의 비대칭적 삭감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었다. [표 5-5] 및 [표 5-6]에서 보듯이 EU와 일본은 2020년까지 GDP가 각각 최대 1.88%, 0.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자간 수출은 각각 최대 32.7%, 2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는 양자간 수출에서 EU의 경우 가공식품, 화학제품, 기타 수송 장비, 사업서비스 등의 순으로, 일본의 경우 기타 수송 장비, 가공식품, 기타 기기, 자동차 등의 순으로 일·EU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5. 일·EU FTA의 경제적 효과

구분	EU	일본
GDP	0.34~1.88% 증가	0.27~0.67% 증가
총수출	1.2~6.7% 증가	3.8~7.4% 증가
양자간 수출	22.6~32.7% 증가	17.1~23.5% 증가

주: 영향평가를 위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p. 37.

표 5-6. 일·EU FTA의 산업별 경제적 효과: 양자간 수출

구분	최소치	최대치*
(EU → 일본 수출)		
가공식품	182.6%	202.2%
화학제품	21.9%	51.8%
기타 수송 장비	20.6%	47.3%
사업서비스	8.9%	22.2%
전기기기	8.1%	20.8%
자동차	8.2%	18.1%
(일본 → EU 수출)		
기타 수송 장비	31.1%	50.4%
가공식품	36.7%	45.8%
기타 기기	20.7%	34.4%
자동차	24.6%	28.2%
전기기기	13.8%	19.4%

주: * 최대치는 야심적 관점에서의 비대칭적 삭감의 결과임.
자료: 위의 자료, p. 40.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1) 개관

일·EU FTA 타결에 따라 상품 시장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으로 EU는 99%, 일본 94%에 대한 수입관세를 최종(15년 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일본과 EU 모두 최종적으로 100% 철폐하기로 했으며, 농림수산물의 경우 EU는 98%, 일본은 82%를 최종 철폐하기로 하였다(표 5-7 참고).

표 5-7. 일·EU FTA 자유화율의 주요 내용

(단위: %)

구분			EU	일본
전체 (품목 수 기준, 최종 단계)			99	94
공업 제품	품목 수 기준	즉시 철폐율	96.3	96.0
		최종 철폐율	100	100
	무역액 기준	즉시 철폐율	81.7	96.2
		최종 철폐율	100	100
농림수산물 (품목 수 기준)	관세 철폐	즉시 철폐율	95	54
		2~11년째 철폐	1	26
		12년째 이후 철폐	2	2
		합계	98	82
	비철폐(관세할당, 삭감 등)		2	18

자료: 外務省, 「日EU·EPA関税交渉の主な結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5); 経済産業省(2017), 「日EU経済連携協定(EPA)における工業製品関税(経済産業省関連分)に関する大枠合意結果について」, p. 3; 農林水産省, 「日EU·EPAにおける農林水産物の関税交渉の結果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5).

EU는 일본에 비해 관세철폐율이 높지만, 대신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국제표준 수용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얻어냈다.[223]

223) 그런데 일본과 EU의 관세철폐율과 관련해 EU측 자료에서는 일본은 최종 단계에서 품목 수 기준으로

2)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

상품시장 접근과 관련해 일본은 EU의 공세에 대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종 수입관세 철폐율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4%, 농림수산품 82%, 공업제품 100%이다. 쌀과 해조류(김, 다시마 등)는 관세 인하 및 철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리·유제품의 국가무역제도, 설탕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절하는 당가조정제도, 돼지고기의 차액관세제도 등의 기본 제도는 유지되었다. 관세할당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의 국경 조치를 획득하여 일본의 입장에서 농림수산업의 재생산이 지속가능하게 되었다.[224]

농산물 분야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유제품 중에서 소프트계 치즈는 TPP에서 관세 철폐 및 인하로 했으나, 일·EU FTA에서는 할당 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6년째에 철폐하는 횡단적인 관세할당을 유지하였다. 할당 수량은 국산과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소비의 동향을 고려하고 국산 생산 확대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였다. 하드계 치즈(체다, 고다 등)는 TPP와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16년째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탈지분유, 버터는 국가무역을 유지하고 민간무역의 한도 규모를 설정했으며, TPP에서는 관세가 철폐된 유장(whey)을 관세 인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쇠고기는 장기의 관세인하 기간(관세 인하는 16년째에 9%)과 수입급증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보하였다. 임산물은 구조용 집성재 등의 즉시 관세 철폐를 회피하고, 단계적인 관세 철폐 기간(8년째에 철폐)을 거치도록 하였다.[225]

97%(무역액 기준 99%)이고 EU는 99%(동 100%)로, 일본측 자료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다. European Commission(2017b), p. 2. 한편 일본측 자료에서는 EU 측의 철폐율이 협상에서 사용된 2012년 HS코드에 기준한 것이므로, 2017년의 최신 HS코드로 전환했을 경우 수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外務省(2017), p. 3.

224) 위의 자료, p. 3.

225) 위의 자료, p. 3.

표 5-8. 일본의 농산물 시장 접근에 관한 약속(소프트계 치즈)

치즈의 종류		TPP 합의내용	현행 관세	한도 수량 및 한도 내 세율	한도 외 세율
내추럴 치즈	크림치즈(유지방 45% 이상), 모짜렐라 등	관세유지	29.8%	- 한도 수량 20,000톤(최초년도) → 31,000톤(16년째) [17년도 이후 한도 수량은 국내 소비의 동향을 고려해 결정] - 한도 내 세율 단계적으로 16년째에 철폐	현상 유지
	블루치즈	관세인하	29.8%		
	숙성치즈 중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	관세유지	29.8%		
내추럴 치즈를 가공한 치즈	조각(shred)치즈	관세철폐	22.4%		
	분말치즈		40.0%		
	프로세스치즈	관세할당	40.0%		

자료: 農林水産省(2017), 「日·EU EPA 大枠合意における農林水産物の概要」①(EUからの輸入)(平成29年7月), p. 8.

또한 재무성 소관인 와인은 TPP에서 협정 발효 후 8년째에 철폐하기로 했는데, 일·EU FTA에서는 협정 발효 시 즉시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일반 담배는 협정세율로 무세화하고, 수제 담배 및 가열식 담배(6년째 철폐) 및 엽궐련(11년째 철폐)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청주와 소주, 정제염은 협정 발효 후 11년째에 철폐하기로 하였다.[226]

경제산업성 소관인 공업제품은 현재 대EU 수입의 77.3%가 무관세인데, 무역액 기준으로 무관세 비율은 협정 발효 시에 96.2%로 되고 최종적으로는 100%로 된다. 석유·화학 제품, 섬유·섬유제품, 비철금속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가죽·신발은 11년째에, 모피는 16년째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공업용 알콜은 11년째에 철폐한다.[227]

한편 EU의 산업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일본시장의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되어 자동차(수소연료 자동차 포함), 의약, 식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EU 자동차업체가 제기해온

226) 財務省(2017).
227) 外務省(2017), pp. 5~6 및 経済産業省(2017), p. 13.

일본의 비관세조치[228]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기로 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이 UN ECE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비관세조치를 도입할 경우 EU는 관세 혜택을 철회(snap-back)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EU는 국제표준화 포럼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EU의 수소연료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판매된다. 즉, EU에서 형식승인된 수소연료자동차는 일본에서 추가 변경이 없는 가운데 제한된 라벨부착 의무만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된다. 다음으로, EU 입장에서 일본의 식품 첨가물 승인 문제도 해결되어 표준적인 가공시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었다. 마지막으로 일·EU 양측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의 범위를 면역학, 백신을 비롯한 활성제약 성분 및 생물의약품 등의 새로운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EU 제약산업의 입장에서 일본은 주요 시장 중의 하나인데, 이 합의에 따라 향후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29]

228) EU위원회에 따르면, EU산 자동차의 대일 수출 시 일본의 비관세조치에 따라 1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uropean Commission(2012), p. 44.

229) European Commission(2017b), pp. 4-5. 한편 EU는 일본시장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2013년 4월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1년간의 협상 진척과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일본의 약속 이행을 검토한 후 협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EU는 협상 개시 후 1년여가 경과한 2014년 5~6월에 일본의 약속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2014년 7월에 제6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이슈와 관련해 협상 초기에 주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2014), p. 164.

표 5-9. EU 농림수산물의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

(1) 쌀
- 관세 인하·철폐 등으로부터의 '제외(full exclusion)'

(2) 보리
- 현행 국가무역제도를 유지하고, 한도 외 세율을 유지
- 극소량의 관세할당 물량(EU한도: 총 수입량의 약 0.005%)을 설정(국가무역·SBS방식)

(3) 맥아(엿기름)
- 현행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고, 한도 외 세율을 유지
- EU에서의 현행 수입 실적을 밑도는 관세할당 물량(EU 한도: 무관세, 수입실적의 약 3/4)을 설정

(4) 설탕
- 현행 당가조정제도(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조정을 통해 국내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유지
- 막설탕(조당) 및 정제 설탕에 대해서는 소량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험수입량(무관세·무조정금)을 설정

(5) 전분(녹말)
- 현행의 당가조정제도를 유지하고, 한도 외 세율을 유지
- 최근의 수입실적에 상당하는 관세할당물량(EU 한도)※를 설정
  ※ 당화·화공전분용은 조정금을 징수하며, 당화·화공전분용 이외의 감자 전분 중에서 녹말가루용 등에 대해서 국산 감자 전분의 구입을 조건으로 면세

(6) 돼지고기
- 차액관세제도를 유지(분기점 가격(524엔/kg)을 유지)
- 장기의 관세인하 기간(10년)과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종량세 감축 부분의 발동 기준 수량: 5년째 6만 3,000톤 → 10년째 10만 5,000톤)를 확보

(7) 쇠고기
- 관세를 인하하여 16년째에 9%로 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발동 기준 수량: 첫 해 4만 3,500톤 → 16년째 5만 3,195톤)를 확보

(8) 유제품
- 탈지분유, 버터 등
  • 국가무역을 유지하고 민간무역에 의한 EU 한도를 설정. 수량(첫 해 1만 2,857톤 → 6년째 1만 5,000톤, 생우유 환산)은 최근 추가 수입물량의 범위 내로 결정
- 유장(whey)
  • 탈지분유(단백질 함유량 34%)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유장(단백질 함유량 25~4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TPP에서는 관세 철폐), 11년째 이후에도 TPP에서 정한 최초연도 관세 수준의 30%를 유지
  •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발동 기준 수량: 21년째 8,011톤, 탈지분유 국내 생산량의 6% 수준)를 확보

표 5-9. 계속

- 치즈
  - 소프트계 치즈는 TPP에서 관세 철폐·인하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횡단적인 관세할당(할당 내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 16년째에 무관세)으로 하고, 할당 수량(첫 해 2만 톤→16년째 3만 1,000톤, 17년째 이후의 한도 수량은 국내 소비의 동향을 고려해 설정)은 국내 소비의 동향을 고려하고 국내산 생산 확대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함.

TPP에서의 합의 내용		EU와의 합의 내용
- 조각(shred) 치즈, 갈은 고형치즈: 관세 철폐 - 숙성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 관세 유지 - 일부 신선치즈(모짜렐라 등): 관세 유지 - 블루치즈: 관세 인하 - 재가공(process) 치즈: 관세할당	⇒	횡단적인 관세할당

- 주로 원재료로 사용되는 숙성 하드계 치즈(체다, 고다 등)와 크림 치즈(유지방 45% 미만) 등은 TPP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철폐하지만, 장기의 철폐 기간을 확보(16년째에 철폐)
- 프로세스치즈 원료용 치즈는 국산품 사용 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유지

(9) 파스타, 초콜릿 과자 등 가공품)
- 파스타(마카로니, 스파게티), 초콜릿 과자 등 가공품은 장기의 철폐 기간을 확보(파스타, 초콜릿 과자, 사탕은 11년째, 비스킷은 6~11년째에 각각 철폐)

(10) 임산물
- 구조용 집성재, SPF제재 등의 임산물 10개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지만, 즉시 철폐를 회피하고 일정한 철폐 기간을 확보(단계적 인하를 거쳐서 8년째에 철폐)

(11) 수산물
- 해조류(김, 다시마 등)는 관세 철폐 등에서 '제외(full exclusion)'를 확보.
- 전갱이, 고등어 등은 장기의 철폐 기간을 확보(16년째에 철폐 등).
- 어업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

(12) 주류
- 와인(병 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청주, 소주 등은 관세를 11년째에 철폐

(13) 담배
- 일반 담배(현재는 잠정 세율로 면세)는 협정 세율로 면세
- 수제 담배(rolling tobacco), 가열식 담배는 관세를 6년째에 철폐
- 엽궐련(cigar)은 관세를 11년째에 철폐

(14) 소금
- 정제염에 대해서는 관세를 11년째에 철폐

자료: 外務省(2017), pp. 3~5.

2)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

EU는 대일본 수입제품 중 공업제품 96.3%, 농산물 95%(품목 수 기준)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이며, 최종적(15년의 경과 후)으로는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인 쇠고기, 차(茶), 수산물 등 대부분의 농림수산물 품목에 대해 EU가 관세를 즉시 철폐(조개의 일종인 가리비만 8년째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입장에서는 5억 명이 넘는 EU시장에 대한 농림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환경이 정비되었다. 단, 쌀은 상호간에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유제품 등 현재 일본에서의 수입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여전히 존재한다.[230]

표 5-10. 일본 농림수산물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

품목	현행 관세	합의 내용
간장 등 조미료	7.7%(간장)	즉시 철폐
가리비	8%(냉동)	관세 철폐(8년째)
녹차	3.2%(3kg 이하의 소량용)	즉시 철폐
쇠고기	12.8%+141.4~304.1€/100kg	즉시 철폐
화훼	6.5%, 8.3%(식목·분재·화분), 8.5%, 10%(꽃꽂이용)	즉시 철폐
방어	15%(냉동 필레)	즉시 철폐
청과물	12.8%(감귤, 유자 등) 9.5€/100kg(참마)	즉시 철폐
임산물	6%~10%(합판 등)	즉시 철폐
돼지고기*	46.7~86.9€/100kg	즉시 철폐
닭고기*	6.4% , 18.7~102.4€/100kg	즉시 철폐
달걀*(알가루 등 포함)	16.7~142.3€/100kg	즉시 철폐
유제품*	118.8€/100kg 등(탈지분유) 189.6€/100kg 등(버터)	즉시 철폐

주: *는 현재 수출금지에 대해 협의 중인 품목.
자료: 外務省(2017), p. 6.

230) 外務省(2017), p. 6.

일본은 자국산 주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 철폐와 함께 수입규제 철폐 및 일본산 주류의 지리적 표시(GI) 보호를 확보하였다. 먼저 EU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류, 담배, 소금의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둘째, EU의 비관세조치였던 '일본 와인'의 수입규제가 철폐되었다. 그동안 EU 역외에서 EU 역내로의 수출은 EU 와인 양조 규칙에 적합한 것만 인정됐으며, 적합하다는 요지의 공적기관에 의한 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번 일·EU FTA를 통해 EU는 '일본 와인'의 양조 방법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후에는 EU에서 '일본 와인'의 자유로운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주류업체의 자율증명제도의 도입에 따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주의 용기 용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700㎖, 1,750㎖ 등의 정해진 용량 이외의 용기는 유통이 불가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소주 사홉병(720㎖)이나 한됫병(1,800㎖±15㎖)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의 상호 보호에 따라, GI '일본술'이 보호됨으로써 일본술과 타국에서 제조된 청주가 EU 역내에서 차별화되는 등 향후 일본술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전망이다.[231]

EU는 현재 대일 공업제품 수입의 38.5%가 무관세인데, 무역액 기준으로 즉시 철폐율은 81.7%(품목 수 기준으로는 96.3%)로 되고 최종적으로는 수입액 및 품목 수 기준 모두에서 100%로 된다. 일·EU FTA 협상에서 주목을 받은 승용차(현행 관세율: 10%)는 협정 발효 후 8년째의 철폐, 자동차부품(동 2.2~4.5% 등)은 대일 수입의 92.1%(무역액 기준)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TPP에서 미국의 양허 내용 및 한·EU FTA에서 유럽의 양허 내용을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이어 일본의 주력 수출 분야인 일반기계는 무역액 기준으로 86.6%, 화학공업 제품은 88.4%, 전기기기는 91.2%를 즉시 철폐하고, 14%의 고관세가 부과되던 컬러TV는 6년째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232]

---

231) 財務省(2017); 外務省(2017), pp. 6~7.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일·EU 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의 대상으로 삼고 자유화를 유보하는 조치와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233] 서비스의 분야별 자유화의 내용도 GATS와 비교하여 EU 측이 자유화 약속 분야를 확대하였다. 일본은 사회사업서비스(보건,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초등·중등 교육 서비스,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추진하여 필요한 정책의 재량을 확보하였다.[234]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는 일·EU 모두가 기업 설립목적의 상용방문자, 투자자, 기업 내 전근자,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자, 독립적인 자유직업인, 단기의 상용방문자,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약속하였다. 이 가운데 투자자, 독립적인 자유직업인, 단기 상용방문자,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GATS에서 EU가 약속하고 있지 않는 분야이다.[235]

투자 분야는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칙 허용 및 예외 유보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사회사업서비스(보건,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초·중등 교육 서비스,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추진하여 필요한 정책의 재량을 확보하였다.[236] 일본은 그동안 EU회원국과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일·EU FTA를 통해 EU회원국에 대해 새롭게 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7년 4월 시점에 38건의 투자협정

---

232) 주요 FTA에서 자동차 부품의 즉시 철폐율은 일·EU에서 품목 수 91.5%, 수출액 92.1%, TPP에서 품목 수 87.4%, 수출액 81.3%, 한·EU에서 품목 수 92.7%, 수출액 90.2%이다. 外務省(2017), pp. 7~8 및 経済産業省(2017), pp. 8~9.

233) 한·EU FTA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한·미 FTA에서 도입)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외교통상부(2012), p. 94. 또한 금융서비스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충분히 개방되어 EU로부터 시장개방 요구가 적었으며, 통신서비스와 환경서비스 등은 한·미 FTA 수준 이상으로 개방하였다. 이종규 외(2009), p. 10.

234) 外務省(2017), p. 10.

235) 위의 자료, p. 10.

236) 위의 자료, p. 10.

(FTA의 투자장 포함)을 체결하고 있지만, 독일 186건, 중국 128건, 한국 103건, 미국 90건 등 타국과 비교해 체결 건수가 적은 편이다.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100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투자협정을 서명·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37]

정부조달은 일본과 EU 모두 새로운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여 이미 일정 정도의 정부조달을 상호 간에 개방하고 있다. 이번 일·EU FTA에서 일본은 48개 중핵도시(인구 20만 명 이상)에서 EU기업이 일본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을 새롭게 대상으로 추가하였다.[238]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EU의 요구가 강했던 분야가 일본정부조달 시장의 추가 개방이었다. EU의 관심이 많았던 철도 분야의 협상 결과 일본은 GPA에서 운전상의 안전과 관련된 조달은 대상 외로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업무안전조항'에 대해, 40만 SDR(약 6,240만 엔) 이상인 조달에 한하여 EU기업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이 업무안전조항은 ① 철도 시설을 구성하는 제품 ② 차량 및 차량용 제품 ③ 유지 보수용 상품·보수용 기기 ④ 철도 시설 건설·개량·수리 ⑤ 선로 건설·개량·수리에 적용되는데, 향후 이 분야에 EU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도 분야는 EU측도 GPA에서 일본기업에 대해 제외하였던 차량을 포함한 철도제품 조달의 일부에 대해 개방을 약속했다. EU는 GPA의 철도분야 조달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도 제외하고 있으므로, EU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기업보다 일본기업이 우위의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239]

---

237) Deloitte Tohmatsu,「日EU·EPA交渉のビジネス影響～大枠合意を受けて経営者が持つべき視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5).

238) 外務省(2017), p. 11.

239) Deloitte Tohmatsu,「日EU·EPA交渉のビジネス影響～大枠合意を受けて経営者が持つべき視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5). 이 업무안전조항과 관련해 일본은 WTO 정부조달협정 및 TPP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菅原(2017), p. 4.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일본과 EU는 양자간에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규범을 확립하였다. 일·EU FTA에서 규범 분야는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 기업지배구조, 규제협력, 농업협력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표 5-11 참고).[240][241] 이 중에서 기업지배구조와 농업협력은 TPP에는 없는 분야이다. 일본은 일·EU FTA를 계기로 상호간 투자 촉진과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규제·표준의 책정에서 협력해나가고자 한다.[242] 이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국유기업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에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자율증명제도'의 도입이다. 기업이 FTA를 이용해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입국 당국에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정부기관 등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신고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일·EU FTA에서 도입되었다. 일본이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주로 '제3자 증명제도'가 채택되어 일본에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일본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서 증명서 작성까지의 기간 단축 및 발생 비용 감소가 가능하게 된다.[243][244]

---

240) 일·EU FTA 협정문은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세관·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조치,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자본 이동·지불·이전, 정부조달, 반독점·기업결합, 보조금, 국유기업, 지식재산, 기업지배구조,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투명성, 규제협력, 농업협력, 중소기업, 분쟁해결, 제도적 규칙, 최종규정의 23개 장(chapter)과 부속서로 구성된다. 外務省, 「日ＥＵ・ＥＰＡ(協定の全体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241) 한편 한·EU FTA 협정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식재산(지리적 표시 포함),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4장 분쟁해결,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원산지 증명 포함).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42) 西村(2017), p. 27.

243) Deloitte Tohmatsu, 「日EU·EPA交渉のビジネス影響～大枠合意を受けて経営者が持つべき視点～」,

전자상거래 분야는 2015년 10월에 합의된 TPP와 같은 규정(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의 비부과 등)이 포함되었다. 단 'TPP 3원칙'인 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의 자유 확보 ②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이용 요구의 금지 ③ 소스코드의 이전·접근 요구의 금지 중에서는 ③에 대해서만 규정되었다. ①은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토한다는 규정이 설정되었다.[245]

EU가 합의 체결한 FTA에서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chapter)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준용하여 EU 및 일본에서의 이 분야와 관련된 모범사례(best practice)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 주주에 대한 설명책임, 주주의 권리, 인수 거래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에 관한 기본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246] 이 규정의 기본적인 방침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일·EU 모두의 기존 제도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으므로,[247] 양국간에 추가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분야는 일·EU 모두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지식재산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도 높은 수준의 또는 상세한 규율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제도 운영의 투명화,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체적 권리 보호(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에 관계된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저작자의 사후 70년 등], 신약 데이터 보호, 영업 비밀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5).

244) 한·EU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도를 기 적용하고 있다. 협정문의 의정서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부(원산지 증명) 제16(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항에 따르면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 주체는 '인증수출자, 탁송화물 수출자'로 명기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45) 菅原(2017), p. 3.

246) European Commission(2017b), p. 9.

247) 外務省(2017), p. 16.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표 5-11 참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GI)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양측은 특히 농산품과 주류 GI를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보호 대상인 제품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생산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해당 지역 이외의 생산자가 제품에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일·EU FTA에서 일본은 EU의 200개 이상에 달하는 알코올류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합의했다. 또한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보호 대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알코올류는 협정 발효 후 5년간, 식품은 7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248][249]

표 5-11. 일·EU FTA 협정문과 규범 분야

(1) 총칙
이 협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

(2) 상품 무역
상품 무역에 관해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상품의 분류, 내국민대우, 수출입 제한, 재(再)제조품의 취급, 수출입 허가 절차, 수출입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수출세, 수출 경쟁 등 상품 무역과 관련한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규정
이외에 이 분야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규정

(3) 원산지 규정
수입 상품이 관세 철폐 또는 인하(관세 상의 특혜 대우) 대상의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특혜 대우를 받기 위한 증명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
또한 이 협정에서는 원산지 제품 누적과 생산행위 누적의 쌍방이 이용가능한, 이른바 완전누적제도를 채택하고,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의 취득 절차가 불필요한 자율신고제도를 채택

(4) 세관·무역 원활화
관세법령 등에 대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있는 적용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상품의 신속한 거래를 인정하고, 세관 절차의 요건 및 작업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사전교육, 리스크 관리, 사후조사 등에 대해 규정

248) Deloitte Tohmatsu, 「日EU·EPA交渉のビジネス影響～大枠合意を受けて経営者が持つべき視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15).
249) 한·EU FTA에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64개 및 EU 162개에 대해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통상부(2012), pp. 133~134.

표 5-11. 계속(1)

이외에 무역원활화의 촉진과 관세법령 위반의 방지를 위한 세관당국 간 협력에 대해서도 규정

* 양측은 EU의 제안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준수하지 않고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부정금지조항(Anti-Fraud Clause)을 도입(European Commission 2017b, p. 3).
* 한·EU FTA에서는 이를 기 적용하고 있다. 협정문의 의정서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부(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7항에서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로 명시되어 있다(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5) 무역구제

본 협정에 의거한 관세 양허에 따라 특정 생산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긴급 조치(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그 발동과 관련한 필요한 절차적 요건(발동 기간 등의 조건 및 제한, 조사 시 통보, 협의 등)에 대해 규정

이외에 전세계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

(6) 위생검역(SPS)조치

사람,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학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실시할 권리를 인정하고, 각 체약국이 실시하는 위생검역조치가 무역에 대해 부당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설정함. 구체적으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재확인, 위험성의 평가, 수입 조건 및 절차, 감사, 시설의 목록화, 지역의 상황에 대응한 조정,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술적 협의, 조치의 동등, 긴급조치 등에 대해 규정. 이외에 이 장의 효과적인 실시 및 적용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규정

* 이에 따른 일본의 제도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의 식품안전이 위협받는 일도 없음.

(7) 무역기술장벽(TBT)

강제 규격, 임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및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규정. 구체적으로는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재확인 및 반영, 강제 규격, 임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입안·제정·적용 시 절차의 적정화, 의견수렴 기간의 명확화, 양측의 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강제규격, 임의규격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규정

이외에 이 분야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규정

(8)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경간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수량제한 금지 등) 등에 대해 규정.

표 5-11. 계속(2)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조치와 분야를 부속서에 열거하는 방식(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협정 발효 후에 자유화의 정도를 확대한 경우에는 그 후의 개정에 의해 자유화의 정도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래칫 조항을 설정. 이외에 국내규제(면허 및 자격 절차의 요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운용 등), 금융 서비스(금융규제 협력을 포함), 전기통신 서비스, 우편·택배(courier) 서비스,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개별 규칙을 설정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해서는 체결국 간 상용 목적의 자연인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의 허가, 허가 요건, 신청 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향상, 체류 중 활동 등에 대해 규정. 신청 절차의 신속화에는 EU 역내에서 일본인의 전근에 관한 절차 간소화를 포함함. 또한 정당한 정책 목적 등에 근거한 규제 조치의 채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정

이외에 이 분야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규정

[투자 자유화]

투자재산 설립 단계 및 설립 후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특정 조치의 이행요구 금지, 공정 형평 대우, 정당한 보상 등을 동반하지 않는 수용의 금지 등에 대해 규정

* 일본은 지금까지 EU 회원국과 투자 관련 협정(투자협정 및 FTA 투자장)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EU 회원국과 투자 보호 규정을 새롭게 설정함(에너지 분야의 투자 보호를 규정한 에너지 헌장조약을 제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자 재산의 설립 단계 및 설립 후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② 시장접근(투자의 시장 진입 시 수량 제한, 형태 제한, 외자 제한을 채택 및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 기존 투자 관련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임.)

③ 투자가에 대한 특정 조치의 이행 요구를 금지(예: 로컬 콘텐츠 요구, 기술이전 요구, 투자자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로열티 규제의 금지(예컨대 특정한 로열티 비율 채택의 의무화를 금지), 특정 기술사용 요구 금지 등)

또한 투자 수입국이 정당한 정책 목적 등에 근거한 규제 조치의 채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정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ISDS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계속.

[전자상거래]

일·EU 간 전자적인 송신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금지, 소스 코드 공개에 대한 요구 금지, 전자상거래의 이용과 관계된 소비자보호조치 채택·유지의 중요성, 전자인증·전자서명이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한 법적 유효성의 부정 금지 등에 대해 규정

이외에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제 조치, 스팸메일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해 규정

(9) 자본 이동·지불·이전

일·EU 간 자본 이동이나 자금 지불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일정한 특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규정

표 5-11. 계속(3)

(10) 정부 조달

이 협정의 대상인 조달기관이 기준금액 이상의 상품·서비스를 조달할 때의 규율을 규정

구체적으로는 일·EU가 함께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규정한 입찰에서의 무차별 원칙 등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입찰 절차, 조달 절차의 투명성·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 적용 범위의 수정·정정 절차 등을 규정.

이외에 이 장(chapter)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조회소의 설치를 규정

(11) 반독점 및 기업결합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당국 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 등을 규정

(12) 보조금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보조금에 대해 통보, 협의 및 일정 유형의 보조금 금지 등을 규정

(13) 국유기업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 상대국의 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점, 규제의 틀, 정보교환 등을 규정

(14) 지식재산

[지식재산 일반]

이 장(chapter)은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및 관련된 권리, 지리적 표시, 식물의 신품종, 영업 비밀 및 의약품 등의 공개되지 않은 시험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등의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함. 일·EU 모두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지식재산에 대해 WTO 협정의 일부인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도 고도의 또는 상세한 규율을 정한다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제도 운영의 투명화,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체적 권리 보호(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에 관계된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저작자의 사후 70년 등], 신약 데이터 보호,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보호)를 확보.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행사(민사상의 구제에 관련된 권리 행사 절차 및 국경 조치에 관련된 권리 행사), 협력 및 협의 메커니즘 등을 규정

[지리적 표시(GI)]

농산물 및 주류GI(일본술 등)의 보호를 위한 양측의 제도와 보호의 대상을 확인하고, TRIPS 협정 제23조와 거의 동등한 높은 수준에서의 상호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 상호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확인

(15) 기업지배구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일·EU 모두의 기존 제도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목적, 정의, 일반 원칙을 정하는 것과 함께 주주 권리, 이사회 역할, 주식공개매수 등에 관한 기본적 요소를 규정

표 5-11. 계속(4)

(16)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련된 환경 및 노동 분야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권(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 존중, 무역 또는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환경 및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의 일탈의 금지, 다수 국가 간 환경협약과 같은 환경·노동에 관련된 국제 약속의 중요성 확인, 환경기술의 촉진 등 일·EU 간 협력 촉진을 규정

이외에 이 분야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나, 시민사회와의 공동대화 개최 등을 규정

(17) 투명성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법령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는 것,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한 조회 및 행정절차, 행정상 행위의 심사 및 시정을 위한 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나 행정재판소 또는 이들 기관에서의 소송 절차 확립·유지 등을 규정

(18) 규제 협력

이 협정의 대상인 일·EU 각각의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조치 방안의 사전 공표,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 사전·사후의 영향 평가, 규제 관련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규제협력 활동, 계획 중이거나 또는 기존의 규제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규정. 이외에 일·EU 간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규정

동물 복지에 관해서는 일·EU가 상대국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양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협력하며, 작업 계획 작성,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작업반 설치를 규정

(19) 농업협력

일·EU 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농림수산품·식품 등의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일·EU 정부 간의 대화 틀에 대해 규정. 또한 안전하고 양질의 농림수산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준 높은 생산을 하고 있는 일·EU 간의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

(20) 중소기업

일·EU는 이 협정에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한 자신의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EU 각각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연락부서 설치 등을 규정

(21)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일·EU 간 분쟁을 해결할 때의 협의, 중개, 패널 절차 등을 규정

(22) 제도적 규칙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합동위원회의 설치, 그 산하의 특별위원회 설치, 연락사무국 지정 등을 규정

(23) 최종 규정

이 협정의 개정, 효력 발생, 본문 등을 규정

이 협정의 실시, 운용 등에 관한 문제의 검토 등을 실시하는 합동위원회 설치 및 그 임무·의사결정 방식, 합동위원회 산하에 두는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일·EU 간 원활한 연락을 연락부서의 지정 등 조직적 사항을 규정

주: 협정문의 장(chapter) 순서는 일·EU FTA 협상 타결 후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임.
자료: 外務省(2017), pp. 12~17; 外務省, 「日ＥＵ·ＥＰＡ(協定の全体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2017년 12월 일·EU FTA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으나, 분쟁해결절차,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잔존과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투자 분야에서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TPP나 지금까지의 FTA 투자협정에서 이른바 ISDS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EU FTA에서도 그 채택을 주장했지만, EU는 ISDS는 이미 과거의 것이라고 하면서 채택을 거부하고 대신 투자법원제도(ICS)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베트남과 캐나다와의 FTA에서 이미 ICS를 채택하고 있어 일본과의 FTA에서도 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였다.[250] 일본과 EU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이를 협정문에서 제외·분리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251]

둘째, 일본이 TPP에서 합의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3대 요소 중에서 일·EU FTA에서는 '소스코드의 이전·접근 요구 금지'만 합의되었고, 개인정보 이전(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자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EU는 이 조항에 대해 3년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252][253] EU는 역외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분야와 관련해 TPP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EU FTA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을 거시경제 및 산업 차원에서 검토한다. 선험적으로 EU 및 일본시장에서 한국·일본 및 한국·EU 간 주력

---

250) 菅原(2017), pp. 4~5.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와 투자유입국 간에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에 제소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며, 중재인 3명은 그때마다 임명된다. 이에 반해 ICS(Investment Court System)는 상설의 법원이며, 2심제라는 점이 ISDS보다 장점이라고 EU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251) 「妥結優先難題棚上げ」(2017. 12. 9).

252) European Commission(2017b), p. 9.

253) EU집행위원회는 협상 타결에 대한 보도자료(8 December 2017)에서 FTA와 별도로 다루어지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가능한 2018년 내에 양측의 데이터보호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EU and Japan finali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수출품목의 무역경합 관계 및 관세 차이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조동희 외(2017)에 따르면, 일·EU FTA 발효 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실질GDP 0.011~0.012% 감소 및 소비자후생 1.2억~1.3억 달러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일·EU FTA 자유화율을 95% 및 99%(TPP 자유화율) 수준의 두 가지로 상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일·EU 간 교역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일 및 대EU 교역 축소(무역전환), 한·EU FTA의 특혜이익 소실 등에 기인한다.[254]

또한 산업별 생산 측면에서는 최종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대EU 및 대일 수출이 감소하여 국내 생산도 감소하는 반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수출 증가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의 산업인 기타 수송기기(-0.13%~-0.136%), 자동차(-0.118~-0.126%), 섬유(-0.098~-0.1%)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후자의 산업인 기계(0.07~0.071%), 금속(0.04~0.043%), 철강(0.034~0.035%) 등에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255] 한편 김은영, 이준원, 민경실(2017)에 따르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EU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크고, 한·일 간 관세 차이가 큰 수송기기(EU MFN 관세율 5.0%), 화학제품(4.4%), 전기기기(3.1%) 등에서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시장에서는 우리나라와 EU 간 주력 수출품목의 경합도가 낮아 일·EU FTA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56]

254) 조동희 외(2017), pp. 15~16.
255) 위의 자료, p. 17.
256) 김은영, 이준원, 민경실(2017), p. 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2. 일본의 FTA 정책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비춰 본 연구는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이 1980~90년대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공정무역'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통상압력을 행사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연구목적에 비춰 이하에서는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과 '2. 일본의 FTA 정책' 2개 소절로 나누어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WTO 출범 이전 GATT 체제하에서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회색' 수입제한조치라고 불리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 다자간섬유협정(MFA) 등은 물론, 통상법(Trade Act)에 의거한 무역보복조치도 불사하였다. 실제 미국 행정부(USITC)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한 품목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한 비

중을 보더라도 레이건 행정부 시대 0.27%(평균), 조시 부시 행정부 시대 0.38%(평균), 클린턴 행정부 시대 0.07%(평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대 0.15%(평균) 등 1995년 WTO 출범 이전 시대에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두드러졌다. 게다가 1985년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보복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74년 통상법(Trade Act) 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통상정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포괄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규제 시행 권한을 대통령에서 USTR로 이전하고, 슈퍼301조를 통해 외국정부의 특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며, 스페셜 301조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였다.

1980~90년대 미국의 '통상협상' 상대국은 주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전까지 미국의 최대 무역불균형 상대국이었다.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공식적으로 협상기구를 조직하여 대일 통상압력에 나선 것은 1985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MOSS(Market-Oriented Sector Selective:시장지향형 분야별 협상)가 처음이었다. MOSS는 과거 일본산 섬유, 철강, 컬러 TV,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기통신, 전자, 의약품·의료기기, 목재제품, 운송기기 분야로 대상 분야를 재정비하여 관세철폐와 상관행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철폐에 협상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1988년 제정된 포괄무역법에 집대성되었는데, 1989년 USTR은 슈퍼301조에 의거하여 일본을 인도, 브라질과 함께 소위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소해야 할 '우선국가'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재조정이나 MOSS(Market-Oriented Sector Selective)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으로는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1989년 시작한 미·일 구조문제협의

(SII) 역시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이 일본의 구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축·투자 패턴, 토지이용, 유통, 배타적 거래 관행, 계열관계, 가격메커니즘 등 6개 항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 협의는 기존 통상압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의 대규모 재정지출, 미국계 유통업체의 일본시장 진출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1993년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3년 후에 1~2%대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정부조달, 규제완화, 경쟁정책, 유통분야 구조개혁 등 상기 미·일 구조문제협의(SII)에서 다루었던 일본의 구조개혁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아예 일본의 전기통신, 주택, 의료기기·의약품, 금융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제완화로 협의 의제를 좁히는 미·일 규제완화대화를 개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지면상 제약이 있지만 당시의 통상협상을 산업분야별로 개괄해 보면,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산 섬유,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자율규제(VER) 요구(1960년대 말~1980년대 중반), 컬러 TV 제품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포함한 시장질서유지협정 체결과 같은 일본의 대미 수출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통상법 301조 등을 배경으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였는데,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에 걸친 수출자율규제를 비롯하여 1986년 MOSS 협의에서는 일본기업의 외국산 자동차부품 구입 촉구, 외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무차별 촉구, 1995년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

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시장 접근 촉진 및 부품의 판매기회 확대 촉구 등 시장개방 요구로 확대되었다.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진행된 미·일 소고기 오렌지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쿼터 설정, 관세인하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장개방에 나섰는데, 자동차·부품 분야로 시장개방 영역을 넓혀간 것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미 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미·일 반도체 협정이 상징하듯 반도체 분야에서 절정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수입 관세율 인하 요구를 시작으로 1984년 미국 반도체 업체의 일본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소송 제기, 1985년 미국 반도체공업협회의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반덤핑 제소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했고 1986년에는 외국 반도체 기업의 대일 시장접근 강화와 일본기업의 덤핑방지책 등을 담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도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미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1991년에는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 목표치를 20%로 책정하는 신(新)반도체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일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95년부터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0%선으로 확대하였고, 무엇보다 당시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던 일본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제약에 묶여 한국, 대만의 'Catch-up'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자유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고 법률·규정이 투명하지 못한 소수의 국가들 때문에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환경

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행 국제규범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이전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USTR(2017)의 무역정책 보고서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표 6-1]에 정리한 바와 같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표 6-1.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통상정책	주요 내용
WTO보다 국내법 우선	- WTO의 분쟁해결 패널이 미국에게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WTO의 결정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 무역확대법 232(b)조(관세부과 등)
해외시장 개방	- 자유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법률 및 규정이 투명하지 못한 주요 국가들 존재 -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방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 TPP 탈퇴 - NAFTA 재협상 - 한미 FTA 재협상

자료: USTR(2017), pp.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통상법을 활용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확대해가고 있는데, 각종 무역구제조치 외에도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각종 통상법(statutes of trade law)에 기초한 행정 권한을 발휘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역구제조치(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조사건수가 급증했으며, 부과 건수 역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의 경우에는 현재 통상법 201조에 기초한 태양광패널 및 세탁기 대상 세이프가드, 301조에 기초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그리고 무역확대법 232조에 기초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제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역확대법 232조와 같은 경우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발동되는 조치로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활용되는 것이며, 정부가 이에 기초하여 자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1991년 이후 26년 만이다. 거의 사문화되었던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는 비전통적인 조치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부활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마찰은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국별 수입규제 조치를 보면 2017년 10월 현재 전체 416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중 한국(반덤핑조치 23건, 상계관세 7건)은 중국(반덤핑조치 111건, 상계관세 44), 인도(반덤핑조치 20건, 상계관세 14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반덤핑조치 19건, 상계관세 0건으로 대만에 이어 5번째를 차지하였다. 물론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상계관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었으나, 최근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까지 비화되는가 하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예비 관세 부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의 중장기 대미 통상전략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정부로서는 WTO 다자통상 규범과 규율 원칙을 준수하고 공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체결 FTA 재협상 추진 역시 우리정부의 대미 통상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6월에는 한·미 FTA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현재 재협상이 진행·준비 중이다. 단,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對韓) 무역적자 확대, 특히 자동차, 철강, 정보통신 등 분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은 대미 교역량 증가,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미국내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2016년 12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일 통상관계가 과거 1980~90년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일 경제대화는 2017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협의 의제가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무역·투자 규범, 분야별 협력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되었다. 그간 미·일 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나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검사절차), 감·감자의 수출해금 문제, 지리적표시(GI)제도의 투명성 제고,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 많은 분야에서 극단적인 마찰양상을 모면하거나 상호 협력 양상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주요 쟁점이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서는 미국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씨'가 남아 있고, 미국의 TPP 탈퇴 후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는 일본과 미·일 양자간 FTA 협상을 추구하는 미국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태이다.

표 6-2.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

의제	현황	주요 쟁점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 미국 재무부, 2017년 상·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연속 일본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	- 미국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 포함 요구. 단, 일본 재무성은 반발
무역·투자 규범	- 일본이 PHP 제도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소음·배기가스 검사 간소화에 합의 - 일본산 감(생과일)과 미국 아이다호주(州)산 감자의 상호 수출금지 해제 - 일본은 지리적표시(GI) 제도에 대한 투명성·공평성 제고에 합의	- 미국이 미·일 FTA 협상에 강한 '의욕' 표명. 단, 일본은 소극적 자세 견지. 미국의 TPP 복귀를 기대 -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부 - 일본의 약가 인하→미국의 발발에도 일본은 정책 고수
분야별 협력	-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각서 서명 • 미·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 일본정부(외무성)와 미국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아나주)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 각서 서명	- 일본기업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일본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

자료: 본문 내용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협상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즉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불균형 상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미(對美) 통상정책 기조를 경제협력으로 급전환하였는데, 차관급 회의인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2001~09년)'이라는 통상협의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미·일 경제대화는 이와 같은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미·일 경제대화가 전적으로 일본 측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재무성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을 포함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엔화약세는 G-7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가 '용인'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미·일 FTA 협상을 통해 농산물,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예고하는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배제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선제적으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점,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은 1980~90년대처럼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끌려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우리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정부가 대미 경제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은 중장기 대미 통상전략 관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전술한 미·일 통상협의체,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2001~09년)' 이후에도 2015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일 협력에 관한 Factsheet'를 토대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본의 고속철도(신칸센)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거나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과 미국 주(州)(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애나 주)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 각서 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본정부는 미국 주(州)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와의 협력 각서의 경우, 첨단 제조업 및 소재산업 협력사업과 공동 R&D, 스마트카·자율주행차 공동개발, 항공기 공동 개발, 인프라 공동개발 등을 담고 있어 한·미 정부 간 산업협력 의제를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하다.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1) FTA 전략

2017년 7월 현재 일본은 15개의 FTA(다자간 FTA 및 양자간 FTA)를 17개국과 체결(발효 기준)하였으나, 한 국가의 무역총액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FTA 비율을 보면, 한국 67.9%, 미국 47.5%, EU 33.0%에 비해 일본은 22.4%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중국(2016년 무역 비중: 21.59%), 미국(15.77%)과 어떠한 형태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2017년 7월 EU와 FTA 체결 기본합의에 도달하였고,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다른 국가와의 FTA 비율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성과'를 의식한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이 FTA를 체결(발효 기준)한 국가·지역은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호주(2016년 무역 비중: 3.57%), 인도(1.03%)를 제외하

면 ASEAN 지역·국가가 거의 유일한 FTA 전략 지역이다. 일본은 1990년대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주력한 나머지 NAFTA나 EU의 경제통합 가속화와 같은 '지역주의(regionalism)' 추세에 둔감하였다.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한·중·일 간 ASEAN과의 FTA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을 FTA 전략 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WTO에 정합적인 국내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고율의 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FTA 체결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가 2004년 채택한 FTA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나아가 현재의 FTA 정책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일본은 FTA 체결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일본의 민감품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국이 WTO나 FTA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는 점이고, 둘째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상품·서비스의 수출 확대와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지재권 보호 등 일본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셋째 TPP나 일·EU FTA 협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국가(특히 한국)와의 FTA 체결 경쟁을 의식하여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FTA 정책기조는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일·ASEAN FTA(AJCEP)와 ASEAN과는 별도로 체결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AJCEP은 사실상 상품무역의 시장접근과 원산지규정, 경제협력이 핵심 내용인데, ASEAN 5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민감품목(농수산물)을 보호하는 대신, 이들 ASEAN 국가에 경제협력이라는 '댓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FTA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예를 들어 AJCEP 86.6%(일본측 자유화율, 품목 수 기준), 일·

필리핀 FTA 88.4%, 일·태국 FTA 87.2%, 일·말레이시아 FTA 86.8%, 일·인도네시아 FTA 86.6%처럼 '자유화율은 낮지만 협상분야는 포괄적'인 일본식 EPA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때 일본은 철저하게 FTA를 통해 자국의 공산품 수출확대에 주력하였는데, 철강,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ASEAN 각국의 고율의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데 성공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 중 일본기업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생산네트워크 확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AJCEP이 거의 유일하다. 일본정부가 AJCEP에 누적원산지규정(부가가치 기준(RVC)의 경우 40% 이상)을 도입함에 따라 ASEAN 역내 일본기업(부품·소재)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이며, ASEAN 역내에서 일본산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제품(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역외에서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일·ASEAN FTA의 무역 효과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의 무역효과는 일본의 총수출·입 및 주요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대(對)ASEAN과 대(對)세계, 2007년 이전 추세와 2008년 이후 추세를 통한 비교와 AJCEP, 일·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더미변수로 한 회귀분석(Pooled OLS)을 통해 확인했다. 분석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발효 후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즉, AJCEP,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더미변수로 한 회귀분석(Pooled OLS)의 결과 AJCEP 및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일본과 ASEAN 간 총수출과 총수입이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 중 철강, 자동차의 수출, 전자기기의 수입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

의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전자기기의 대ASEAN 수출과 농축수산물의 대ASEAN 수입에도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AJCEP 및 다수의 양자 FTA가 발효된 2008년을 기준으로, 1996~2007년, 2008~16년 기간 동안의 수출·입의 연평균증가율을 볼 때, 2008년 이후 일본의 대ASEAN 교역 감소추세는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보다 더딘 것을 확인했다. 일본의 수출·입은 1996~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증가하던 것에 비해 2008~16년 기간 총수출·입의 연평균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세계 총수출·입의 연평균증가율 감소(각각 -7.53%, -8.21%)에 비해 대ASEAN 총수출·입의 연평균증가율 감소폭(각각 -2.55%, -6.51%)이 낮아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FTA가 일본의 교역감소 추세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기체결 FTA의 효과 중 하나로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를 거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FTA 활용도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를 제시하여 일본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 시에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앞 절에서와 같은 일본 전체의 무역효과를 엄밀하게 계량분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그것만으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한 FTA 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관세를 감축·철폐하였음에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정보부족이나 행정 비용 등의 이유로 수출 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FTA의 무역효과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SEAN 지역·국가와 FTA 중에서 일·태국 FTA와 일·인도네시아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베트남 FTA, AJCEP 순

으로 일본기업의 FTA 활용이 2012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은 철강,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 등 일본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ASEAN 각국의 고율의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데 주력한 일본정부의 FTA 전략이 주효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보는 것도, 앞의 FTA 활용도와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설령 이들 지표가 개선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FTA의 효과인지 그 인과관계를 해명하지 않는 한 엄밀한 평가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법인 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이 30~40%를 차지하는 등 일본 제조업 기업의 미국 '의존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 24.5%, 중국 24.2%, ASEAN4 18.6%로 중국과 ASEAN4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일본정부의 FTA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4 및 아시아 역내 조달 비중이 1997년 각각 41.4%, 56.4%에서 2015년에는 각각 65%대, 70% 후반대로 상승하고, 판매 비중 역시 1997년 각각 47.8%, 61.9%에서 2015년에는 각각 50.5%, 77%로 상승하고 있음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FTA 전략, 특히 AJCEP을 통한 누적 원산지규정 도입, 특혜관세 적용 등이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제조업 업종 중에서도 철강, 운송기계, 화학분야의 ASEAN 역내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본정부가 ASEAN 국가들과 양자간 FTA 협상을 추진할 때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의 시장접근에 주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일본정부가 FTA 협상에서 주력했던 상대국·지역의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규제완화나 규제의 투명성 확보에 힘입어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

자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ASEAN 5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000억 엔 정도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그 이후에는 연평균 1조 5,000억 엔 정도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일본기업이 직접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은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가 극심하였던 1990년대 말과 2000년(84억 엔의 손실 발생), 태국 홍수가 발생한 2011년을 제외하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ASEAN 5개국에서 일본기업은 연평균 1조 5,000억 엔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15% 정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5% 이하였으나 최근에는 10%를 넘어섰다.

위와 같은 일본기업의 태국을 중심으로 한 ASEAN 생산네트워크 확충은 기업의 자발적인 해외전략거점 선정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정부의 FTA 정책과 다른 해외투자지원 정책이 결합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를 해외직접투자로 극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상수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전체 거시경제 관점에서 FTA 정책이 경상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RCEP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간 커다란 쟁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정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RCEP 전략(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대체적으로 동조하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자국 기업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낮은 자유화 수준의 '조기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RCEP 협상이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2012년 8월의 상기 협상지침이 표명한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ASEAN 일부 국가가 TPP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RCEP은 TPP에 견줄만한 수준이나 범위의 통상규범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257]이 팽배한 가운데, RCEP의 통상 규범을 보다 충실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258]

셋째, ASEAN의 기체결 FTA에는 '완전누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FTA 정책이 자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RCEP 협상에서도 부가가치의 '완전누적' 개념 도입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정부도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 협상에 협상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259]

5) 한·중·일 FTA

한·중·일 FTA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한·중·일 FTA에 대한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경

---

257) 助川(2016), p. 74.

258) 예를 들어 TPP는 해외진출기업이 상대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이 직접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는 ISDS 조항을 담고 있는 점, 통관절차에서는 TPP 가입국의 화물이 도착하면 원칙상 48시간 이내에 통관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한 점, 지재권 보호에서는 모조품 적발권한을 당국에 부여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라벨이나 팩키지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무화하는 등 WTO의 TRIPs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규율을 담고 있는 점, 국유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에 대해 무차별대우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하는 등 경쟁조건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助川(2016), pp. 73~74.

259) 2015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일·ASEAN 경제장관 회의에서 일본 재계는 RCEP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범과 관련하여 ① RCEP 하에서 수입국은 동일한 관세율을 모든 수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통양허'를 채택할 것 ② 원산지규정으로서 '완전누적'을 도입할 것 ③ 기체결 ASEAN+1보다 부가가치기준(RVC)의 임계치를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助川(2016), pp. 80~81.

과하는 동안 한·중·일 FTA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7년에는 3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한국), 정권의 안정화(중국과 일본)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들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더딘 진전, 일본이 집중했던 TPP11과 일·EU EPA에서의 일정한 성과 달성[260]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한·중·일 FTA에 집중함으로써 3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자유무역 기조의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261]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이 새롭게 추진동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일 FTA 협상은 현실적으로 타결 방식과 난이도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협상 타결 방식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고려하되, 상품 분야/투자·서비스·규범 분야/협력 분야로 분리하여 타결하는 것이다. 또한 난이도 측면에서는 산업·환경 등 협력 분야 → 규범·제도 분야 → 상품(관세)·투자·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협상의 진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262]

셋째,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3국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SPS, TBT, 경쟁, 지재권 등 총 19개 분야를 다루었다. 여기에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운송규제, 기준인증, 산업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분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263] 다만 최근 중국의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본의 비

---

260)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경제산업정책의 다섯 가지 중점의 하나로 '대외경제정책 전개'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일·EU EPA, TPP, 미일경제대화, RCEP의 네 가지 전선(Front)이 있다. 2017년에 일본은 11월 TPP11 기본합의 도달, 12월 일·EU EPA 타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経済産業省(2017), p. 11.

261) 이와 관련해 기요카와(清川佑二)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 고문은 한·중·일 3국이 한·중·일 FTA 추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RCEP 협상의 진전과 동아시아 발전에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清川(2015), p. 115.

262) 정환우(2013), p. 39. 이처럼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자는 방안은 일본의 후쿠가와(福川伸次) 일·중산관학교류기구(日中産學官交流機構) 이사장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清川(2015), p. 114.

263) 阿部(2012), p. 109.

판은 한·중·일 FTA 협상과는 무관하지만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본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2017년 6월 제정한 중국의 '인터넷 안전법'에 매우 비판적인데, 인터넷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고, 기술혁신을 낳는 빅데이터는 중국 내에 축적하고 정부가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시아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바집단과 텐센트와 같은 중국기업을 정보유통에 제약을 받는 '만리장성' 내부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64]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2017년 1월 미국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은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찾았다. 즉, 첫째 일본은 TPP 12개 국 중 가장 낮은 수준(95%)의 관세철폐율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품 2,328개 품목 가운데 즉시철폐율은 51.3%(최종 철폐율: 81.0%)에 불과하다. 소위 농산물 5대 '성역품목'(쌀, 밀·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총 586개) 중 412개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에 성공하였다. 둘째, Petri *et al.*(2017)에 따르면 일본 입장에서 RCEP의 경제적 효과가 TPP11보다는 크지만, 향후 미국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과 미국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기 아시아 5개국이 합세하여 TPP16에 '성공'하면 RCEP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TPP에 대한 기대감은 일본 재계의 기대감과 동일시할 수 있는

264) 「TPP19年発効目指す」(2017. 11. 12).

데, 일본 자동차 업계의 경우 예를 들어 현재도 일·베트남 FTA가 발효 중이지만 TPP가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사라져 생산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과 FTA 미체결국인 캐나다의 경우에도 캐나다에 완성차 공장을 둔 도요타 자동차나 혼다 등이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 베트남과 말레시아의 경우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 일본 재계의 TPP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265]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은 일본이 TPP를 상찬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AFTA의 '부분누적' 제도를 뛰어넘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266]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267]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

265) 「TPP11企業に追い風」(2017. 11. 12). TPP 협상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외자규제가 자국기업의 현지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두 점포 이후의 출점에 대한 엄격한 심사(경제수요테스트, ENT)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자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政府、ベトナムとマレーシアに外資規制見直し要請」(2013. 9. 1). 협상 결과 베트남은 20개 이상의 분야에서 외자규제를 완화하였고, 말레이시아도 외자기업의 편의점 출자 비율을 30%로 확대하였고, 외국계 은행의 점포 설치 상한을 8개에서 16개로 완화하였다.

266) 일본기업들은 TPP가 전자상거래(EC)의 데이터유통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보관을 위한 기기 설치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았으나 TPP가 발효되면 일본기업이 국내나 제3국에 설치한 서버를 경유하여 통신판매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파나소닉은 명확한 규범 정비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개발에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 해적판 대책이나 지재권 보호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TPP11企業に追い風」(2017. 11. 12).

267) 체결국은 국영기업의 물품·서비스 구입 시 다른 체결국은 물론 비체결국의 물품·서비스와의 무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자국 내에 설립된 체결국 및 비체결국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와의 무차별 원칙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표 6-3]은 일본 입장에서 본 TPP11의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3. 일본 입장에서 TPP11의 주요 합의내용

(2017년 11월 현재)

분야	세분야	합의내용
시장접근 : 관세양허	농림수산품 (일본의 시장개방)	- 586개 농산물 5대 '성역품목'(쌀, 밀·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총) 중 412개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
	공산품(해외의 시장개방)	- 자동차: 캐나다, 6.1% → 발효 후 5년째 0% 베트남, 70% → 발효 후 10년째 0% - 타월: 캐나다, 17% → 즉시철폐
원산지규정		- 완전 누적제 도입
서비스무역·투자	시장접근	-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 도입 - (베트남)소매업 판매점(편의점, 수퍼마켓 등)의 두 번째 이후의 출점에 대한 경제수요 테스트(ENT) 폐지(발효 5년 후). 전기통신, 영화 상영·제작·배급, 오락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유지하되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일부 자유화: 유통·금융·제조업 분야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규범	전자상거래	- 국경 간 정보 이전(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
	정부조달	- WTO의 GPA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부분적으로 정부조달 시장 개방, GPA 가입국들은 대상기관 확대 혹은 적용 기준 금액 완화 방식으로 GPA 이상의 시장개방
	국영기업	- 국영기업 거래의 상업적 고려 원칙 및 무차별대우 원칙 도입.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 규제 조항 도입
	지재권	- 바이오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원칙상 8년(단, 동결) - 지재권 보호 강화: 차압 등 국경조치 행사 가능. 상표권 침해 등에 형사처벌 및 민사상 구제조치 조항 삽입

자료: 본문 제4장 요약.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주도한 TPP11은 기본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TPP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동결'하여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과 TPP 발효 요건을 GDP 요건(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에서 11개국 중 6개국 비준으로 대체한 점에서 TPP는 아직도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2월 현재 지금까지의 TPP11 협상과정과 기본합의 내용에 비춰 볼 때 일본의 TPP 전략은 대체적으로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미국의 TPP 탈퇴를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태동으로 규정하고, FTA 정책 관점에서 TPP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21세기형 FTA의 모범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다른 메가 FTA 협상의 준거 혹은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10월 TPP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TPP에 대해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투자의 자유화, 나아가 지재권,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노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21세기형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268] 2017년 11월 미국이 배제된 TPP11이 기본합의를 발표했을 때에도 일본정부는 TPP의 본질은 상품 무역이나 투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한 디지털 정보를 자국 내에 포위하려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와의 싸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269]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TPP에 대한 인식은 미국 내 정치역학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 통상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설령 미국이 TPP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는 아시아 5개국, 즉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TPP11에 가세할 경우 RCEP을 능가하는 경제

---

268) 일본정부는 TPP를 "보편적 가치,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공유하는 국가와 무역·투자라는 새로운 축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에 관한 새로운 표준(standard)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3.

269) 「TPP19年発効目指す」(2017. 11. 12).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어 한층 확고하게 정착하는 양상이다.

일본정부가 향후 TPP는 물론 다른 메가FTA나 한국과의 양자간 FTA에서 '21세기형 FTA'로서 TPP를 준거로 삼는 서비스무역,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노동 등 제반 통상규범 분야는 우리정부도 일본과 '동조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우리정부의 다른 FTA 협상에도 이들 통상규범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TPP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여타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TPP 협상 과정에서도 자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확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TPP에 대한 기대는 2015년 10월 내각부의 TPP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다. 즉 TPP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거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창출함으로써 역내에서 인적자본·상품·자본·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활약의 장을 넓혀감으로써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270] 나아가 2017년 11월 TPP11의 기본합의 후에 발표한 'TPP 관련 정책대강(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271]에서도 내각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수출대국 컨소시엄'이라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이 강조하였던 콘텐츠, 서비스의 수출촉진, 농림수산업, 식품 분야의 수출촉진,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정부로서도 기체결 FTA는 물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어떻게 FTA를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270)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5),「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p. 3.

271)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2017),「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3).

셋째, 일본정부는 2013년 3월 TPP 참여 표명, 2015년 10월 협상타결, 2017년 11월 TPP11 기본합의 도출이라는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자국의 기체결 FTA는 물론 협상 중인 RCEP, 한·중·일 FTA, 일·EU FTA를 통틀어서도 TPP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현재 협상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2013년 3월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일본 언론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산품 관세철폐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기조를 보인 사례[272]는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우리나라의 대일 FTA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한·미 FTA의 관세양허 수준으로 TPP11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대일 관세삭감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현행 기준관세율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즉 일본은 관세율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고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본다. 물론 우리정부가 TPP 협상에 참여하든 양자간 FTA 협상을 재개하든 일부 제조업의 대일 민감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나 양허제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예상 무역수지 악화 규모는 줄어들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2월 개시된 한·일 양자간 FTA 협상에서도 한국 측은 자동차, 기계산업, 일부 중소기업이 한일 FTA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비관세장벽 제거나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산업협력 등을 이슈로 일본 측의 양보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2004년 11월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273] 그 이후에도 2011년부터 몇 차례 실무급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272) 김규판(2013), p. 12.
27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pp. 4~5.

결국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한국이 일본과 어떠한 형태로든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현행 '비대칭적' 관세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한국 기업이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호무역주의적 관점에서 높게 책정하였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세구조가 한국기업의 대일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일·EU FTA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일본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EU 시장에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일·EU FTA가 실현되면 일본은 인구 5억 명, 역내 GDP 16.4조 달러의 EU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 특히 일·EU FTA이 발효된 후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일본 자동차 업체는 기체결된 한·EU FTA로 EU 시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한국 업체와 동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준·규격의 조화 및 상호승인과 같은 규범 형성에서 일·EU FTA를 바탕으로 양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국제표준화 작업에서 영향력이 큰 EU와 협력하여 일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규제와 기준·규격을 글로벌한 규제·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일·EU FTA 추진에 따라 일본이 통상전략을 재가동할 수가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EU FTA, TPP, 미·일경제대화, RCEP이라는 '4대 메가 FTA'를 추진해야 하는데,[274] 미국의 TPP 이탈에 따라

274) 経済産業省(2017), p. 11.

TPP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통상전략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 도출은 TPP11, RCEP 협상, 미일 경제대화의 동시 병행을 견인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TPP 복귀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FTAAP)을 추진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75]

한편 일·EU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협상 타결(최종합의) 후에도 일본과 EU에서의 의회승인 등의 국내 또는 역내 절차가 필요하다. 원래 일본과 EU는 2018년에 중반에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2019년 초반에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76] 그러나 정식 발효가 이루어지기 위해 EU 전체 회원국의 의회승인을 거쳐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277] 쟁점인 투자보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2017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싱가포르 FTA(2013년 9월 가서명)에 대해 EU집행위원회의 전권사항이 아닌 회원국과 권한을 공유해야 하는 분야의 조항(외국인간접투자 및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조항)도 포함된 복합협정(Mixed Agreement)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EU FTA는 이처럼 곤란한 이슈는 제외하여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EU집행위원회의 권한으로 협상이 가능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조기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EU FTA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양측은 2018년 협정문 서명 및 의회승인, 2019년 관세분야에서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이외 분야는 EU 회원국의 승인 후에 발효된다.[278]

일본과 EU는 2013년 4월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17년 4월까지 4년에 걸쳐 총 1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7년 12월 일·EU FTA의 협상이

---

275) 菅原(2017), pp. 1~2.

276) European Commission, "Key elements of the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Mem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5).

277) 한·EU FTA의 경우 최종합의(협상 타결)에서 정식발효까지 6년 이상의 기간(2009년 7월 최종합의, 2010년 10월 서명, 2011년 7월 잠정적용, 2015년 12월 정식발효)이 소요되었다. 西村(2017), p. 31.

278) 「日欧ＥＰＡが妥結＝「投資」分離、19年発効へ―巨大貿易圏誕生、世界全体の３割」(2017. 12. 8).

타결되었다. 한편, EU는 일본과의 FTA를 준비하기 위해 2010년에 영향평가단(impact assessment steering group)을 설치하고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는데, EU와 일본 모두에 이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EU와 일본은 2020년까지 GDP에서 각각 최대 1.88%, 0.67% 증가하고, 양자간 수출은 각각 최대 32.7%, 2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양자간 수출은 EU의 경우 가공식품, 화학제품, 기타 수송 장비, 사업서비스 등의 순으로, 일본의 경우 기타 수송 장비, 가공식품, 기타 기기, 자동차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하면 [표 6-4]와 같다. 첫째, 일·EU 및 한·EU FTA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둘째, 일·EU FTA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개방은 상호간에 대칭적이었으나, 농산물에서는 비대칭적이었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양자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다. 넷째, EU 시장에서의 공산품 개방과 관련해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 외에도 농산물, 비관세조치 등에서 EU가 요구하는 만큼 일본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자동차 부품은 양쪽 FTA 모두에서 즉시 철폐하였다. 컬러TV는 양쪽 모두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쌀은 양쪽 FTA 모두에서 완전 제외(full exclusion)하였다. 양 시장에서 EU의 관심이 높았던 돼지고기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수입 급증 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치즈는 한국과 일본 모두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양허기간을 15년으로 장기화하였다. 여섯째,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 일본 및 한국에 대한 EU산 자동차 수출 시 양국 모두 UN ECE 규정을 적용하고, EU의 형식승인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표 6-4. 일·EU 및 한·EU FTA의 상품 시장 자유화율(품목 수 기준) 및 양허 비교

(단위: %)

구분		일·EU FTA		한·EU FTA	
		EU	일본	EU	한국
전체 품목 최종 단계		99	94	100	100
공산품	즉시 철폐	96.3	96.0	97.3	90.7
	최종 단계	100	100	100	100
농산물	즉시 철폐	95	54	91.8	42.1
	최종 단계	98	82	100	100
EU 시장 접근	자동차	7년 내 철폐(단계적 인하)		5년 내 철폐(단계적 인하)	
	자동차 부품	즉시 철폐		즉시 철폐	
	컬러TV	5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지리적 표시	일본산 주류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일본/한국 시장 접근	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 유지, 10년 관세철폐		5~10년 관세철폐	
	치즈	15년 관세철폐, 수입쿼터 적용		15년 관세철폐, 수입쿼터 적용	
(비관세조치)	자동차	(일본) UN ECE 규정 적용, EU의 형식승인을 인정		(한국) UN ECE 규정 적용, EU의 형식승인을 인정	
(지리적표시)	주류	GI 상호 보호 확보		GI 상호 보호 확보	

자료: 본문 내용 및 외교통상부(2012), pp. 3~10.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하면 [표 6-5]와 같다. 첫째,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던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공성이 강한 공교육,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는 유보를 확보하였다. 둘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일·EU FTA에서는 일본은 ISDS를, EU는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협상 타결 후에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당시 이에 대한 협상 권한이 EU집행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협정문에 포함하였다. 셋째, 인력이동과 관련해 일·EU FTA에서 EU

는 GATS 플러스로 확대했으며, 한·EU FTA에서는 대졸연수생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넷째, 정부조달과 관련해 일·EU FTA에서 일본은 48개 중핵도시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사업과 철도 분야에 대한 EU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정부조달시장의 철도 분야는 쟁점이 아니었다.

표 6-5. 일·EU 및 한·EU FTA의 비상품 시장 개방 비교

구분	일·EU FTA	한·EU FTA
서비스	- 네거티브 방식 도입 - EU: GATS 이상 확대 - 일본: 포괄적 유보 확보	- 포지티브 방식 도입 - 한국: 전반적으로 한·미 FTA(네거티브 방식)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공공성 강한 분야는 유보 확보 - EU: GATS 이상으로 확대
투자	- 위와 같음 - 단, 분쟁해결절차 미해결(일본은 ISDS, EU는 ICS 주장)	- 투자보호 관련 사항 미포함 (당시 EU 법체계 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외 상황) -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 규정(한국은 EU의 개별 회원국과 BIT 체결한 상태)
자연인 이동	- EU: GATS 이상으로 확대	- 대졸연수생을 신규로 포함해 청년층의 상호 교류 촉진
정부조달	- 일본: 중핵도시, 지방독립행정법인 사업 개방, 철도 분야 개방 - EU: 철도제품 분야 개방	- 민자사업은 양측 모두 1,500만 SDR(284억 원) 이상에 대해 개방 - EU: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 지자체 사업 개방 - 한국: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

자료: 본문 내용 및 외교통상부(2012), pp. 94~129.

일·EU FTA에서 규범 분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해 정리하면 [표 6-6]과 같다. 첫째, 24개 장(chapter)로 구성된 협정문의 규범 분야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규제협력, 중소기업 장(chapter)의 경우 한·EU FTA에서는 별도로 구분(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은 TPP에도 없는 분야이다. 둘째, 일·EU 및 한·EU FTA 모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 분야는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로 하고 있다. 일본은 TPP에서 적용했던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

경간 이전 자유 확보(현재 EU에서는 법으로 역외 이동을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이용 요구 금지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한·EU FTA에는 없는 분야이다. 다섯째, 지적재산에서 GI 상호간 보호는 양측 모두 도입하고 있다.

표 6-6. 일·EU 및 한·EU FTA의 규범 분야 비교

	일·EU FTA	한·EU FTA
협정문 구성	- 전문, 총칙 등 24개 분야로 구성	- 서문, 제1장~제15장, 의정서로 구성
원산지 규정	- 자율증명제도 도입	- 자율증명제도 기 적용
전자상거래	- 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 비부과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 유지
기업지배구조	- 각국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확보	- 미포함
지적재산	-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GI 상호 보호 확보	-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GI 상호 보호 확보

자료: 본문 내용 및 외교통상부(2012), pp. 125~126.

한편 일·EU FTA가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분쟁해결절차,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추가 과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투자보호 관련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ISDS와 EU의 ICS 선호가 충돌함에 따라 우선 나머지를 중심으로 먼저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 부문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소스코드의 이전·접근 요구 금지에만 합의하였고,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의 자유, 컴퓨터 관련 설비의 실치·이용 요구의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한편 일·EU FTA에 따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산업 측면에는 대EU 수출시장에서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EU FTA 타결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 시사점은 일·EU FTA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향후 한·EU FTA 협정문 개정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일·EU FTA 발효에 따라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업종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정책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앞에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별 효과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기 업종 및 전자기기 업종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

한편 한·EU FTA 활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016년 대EU 활용률은 수출 84.8%, 수입 72.1%로, 수출에서는 대캐나다(89.1%), 수입에서는 대칠레(99.3%), 대베트남(88.2%) 등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산업별 대EU 활용률은 수출 70.6~89.4%, 수입 52.8~86.0%로 편차가 크다.[279]

다음으로, 향후 한·EU FTA 개정 작업과 관련해 일·EU FTA 협상 타결로부터 함의를 찾을 수 있는 분야는 비상품 시장 접근과 규범이다.

먼저 일·EU FTA의 비상품 시장 접근 부문에서 기존 한·EU FTA와 상이한 분야는 서비스·투자의 양허 방식(일·EU: 네거티브, 한·EU: 포지티브), 투자자 보호(일·EU: ISDS 또는 ICS 미합의, 한·EU: 협정문 미포함), 자연인 이동(EU의 GATS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상 타결 결과와 EU의 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인력이동 분야에서 EU는 일본에 대해 GATS 이상으로 확대했으므로, 최혜국대우(MFN)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되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EU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국내에서 진행

279) 관세청 FTA 포털, 「FTA 활용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OECD 원칙의 정합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협력 및 중소기업 부문은 협상 타결 결과와 EU의 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EU 및 한·EU FTA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양자간 논의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제1장 서론

[국문자료]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2014.『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14-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봉길. 2011.『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 일본연구 2011-04.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김양희, 정성춘, 이형근, 김은지. 2008.『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08-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근. 2014.「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 – 미일 통상교섭과 일본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日本學報』第98輯(2014. 2). 한국일본학회.

김재덕. 2015.「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주요 쟁점과 예상 전략」.『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우리나라의 대미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2017.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용역보고서.

라미령, 김제국. 201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7. 2. 15, Vol. 17,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면, 김화섭, 김수동, 김재덕, 김바우, 이용호, 김재진, 한정민. 2014.『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과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4-707. 산업연구원.

조정란. 2016.『TPP와 일본 통상정책』. 연구총서 16-01.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정철, 김영귀, 배찬권, 정영식, 최장호, 김원기, 이형근, 강민지. 2017.「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훈. 2007.『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현정. 2016.「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최근 세계수입규제 동향과 원인 분석」.『Trade Focus』, 36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영문자료]

USTR.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March 2017.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국문자료]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2014.『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14-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영민. 2005.『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제도에 대한 비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5-10.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우리나라의 대미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2017.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용역보고서.

정철, 김영귀, 배찬권, 정영식, 최장호, 김원기, 이형근, 강민지. 2017.「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문자료]

阿部武司. 2011.『通商産業政策史 2:通商·貿易政策 1980-2000』. 経済産業研究所.

伊吹英明. 2016.「自動車産業をめぐる構造変化とその対応について」.『日本貿易会月報』. 2016年3月号.

近藤誠. 2011.「石油危機後の経済構造調整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への対応」.『日本経済の記録 - 第 2 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バブル崩壊まで』(1970年代～1996年). 小峰隆夫編. 第4章.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中村明. 2017.「引き続き対日貿易赤字の是正を求める米政権」.『IIMAの目』. 国際通貨研究所.

山口秀樹, 藤城奈緒. 2017.「日米間の貿易·投資関係に関する今後の課題：自動車の貿易·投資を中心として」.『立法と調査』, 2017. 6. No. 389.

[영문자료]

Baldwin, Robert E. 2009. "US Trade Policy Since 1934: An Uneven Path Toward Greater Trade Liber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15397.

Hufbauer, Gary Clyde. 2016. "Could a President Trump Shackle Imports?" *PIIE Briefing,* 16-6.

Gandolfo, Giancarlo. 2014. "The New Protectionism."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Second Edition.* Springer.

Ray, Edward John. 1987. "Changing Patterns of Protectionism: The FAll in Tariffs and the Rise in Non-Tariff Barriers Symposium: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8, Issue 2.

Richardson, J. David, Lione Olmer, and Paula Stern. 1994. "Trade Policy." Martin Feldstein ed. *American Economic Policy in the 1980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Jackson, James K. 2016. "US Trade with Free Trade Agreement(FTA) Partne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ECD, WTO, and UNCTAD. 2017. "18th Report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Schoppa, Leonard J. 1997. *Bargaining with Japan: What American Pressure Can and Cannot Do.* Columbia University Press.

USITC. 2009. "U.S. Trade Policy since 1934." *The Economic Effects of Significant US Import Restraints: Sixth Update,* USITC Publication 4094, Investigation No. 332-325.

_____. 2010. "Import Injury Investigations Case Statistics(FY 1980-2008)."

USTR.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March 2017.

[웹사이트]

Brainard, Lael. 2001. "Trade Policy in the 1990s."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rade-policy-in-the-1990s/(검색일: 2017. 11. 28).

Cimino-Isaacs, Cathleen. 2017. "100 Plus Days of Trade Policy: A Review

of Key Administration Actions." https://piie.com/blogs/trade-investment-policy-watch/100-plus-days-trade-policy-review-key-administration-actions(검색일: 2017. 12. 5).

JETRO. 2017. 「国内法に基づき貿易救済措置を厳格に執行 - USTRがトランプ政権の通商政策を公表 - 」. https://www.jetro.go.jp/biznews/2017/03/69a0bbd6a4965403.html(검색일: 2017. 12. 8).

McBride, James. 2017. "The U.S. Trade Deficit: How Much Does It Matter?" https://www.cfr.org/backgrounder/us-trade-deficit-how-much-does-it-matter(검색일: 2017. 12. 5).

The White House. 2017. "Free and Fair Trade for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https://www.whitehouse.gov/blog/2017/04/13/free-and-fair-trade-american-workers-and-businesses(검색일: 2017. 12. 8).

外務省. 「日米間の新たな経済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枠組み(日米包括経済協議)」. http://www.mofa.go.jp/mofaj/area/usa/keizai/framework/index.html(검색일: 2017. 11. 3).

_____. 1993. 「日米間の新たな経済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枠組みに関する共同発表(1993年7月)」. http://www.mofa.go.jp/mofaj/area/usa/keizai/framework/pdfs/fw_statement_j.pdf(검색일: 2017. 11. 3).

_____. 2010. 「成長のための日米経済パートナーシップの現状」. 2010. 6. http://www.mofa.go.jp/mofaj/area/usa/keizai/pship_g.html(검색일: 2017. 11. 8).

_____. 2012. 「日米通商交渉の歴史(概要)」. http://www.mofa.go.jp/mofaj/gaiko/tpp/pdfs/j_us_rekishi.pdf(검색일: 2017. 10. 20).

_____. 2017a. 「共同声明」. 2017. 2. 10. http://www.mofa.go.jp/mofaj/files/000227766.pdf(검색일: 2017. 11. 12).

_____. 2017b. 「麻生日本国副総理とペンス米国副大統領による日米経済対話に関する共同プレス·リリース」. 2017. 4. 18. http://www.mofa.go.jp/mofaj/files/000248234.pdf(검색일: 2017. 11. 12).

_____. 2017c. 「麻生日本国副総理とペンス米国副大統領による日米経済対話第2回会合に関する共同プレス·リリース」. 2017. 10. 16. http://www.mofa.go.jp/mofaj/files/000298944.pdf(검색일: 2017. 11. 12).

_____. 2017d. 「日本国政府と米国インディアナ州との間の経済及び貿易関係に関する協力覚書」. 보도발표자료. 2017. 9. 8. http://www.mofa.go.jp/mofaj/files/000288991.pdf(검색일: 2017. 11. 15).

経済産業省. 2002.「対日アクセス実体調査報告書(補修用自動車部品)について」. 2002. 3. 28. 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20328d01j.pdf(검색일: 2017. 10. 25).
_____. 2017.「米国との間でエネルギー及びインフラ協力を進めて行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News Release. 2017. 11. 7. http://www.meti.go.jp/press/2017/11/20171107002/20171107002.html(검색일: 2017. 11. 15).
国土交通省. 2017.「米国運輸省と交通インフラ分野に関する協力覚書に署名しました」. 보도발표자료. 2017. 10. 20. http://www.mlit.go.jp/report/press/sogo05_hh_000166.html(검색일: 2017. 11. 15).
農畜産業振興機構.「砂糖の価格調整制度」. http://sugar.alic.go.jp/sugartime/kakaku/kakaku.html(검색일: 2017. 9. 19).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 2015.「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2015. 10. 5. http://www.cas.go.jp/jp/tpp/pdf/2015/10/151005_tpp_gaiyou.pdf(검색일: 2017. 8. 12).

[언론보도자료]

「米、薬価制度の見直し要求:高額な新薬値下げ待った」. 2017.『日本経済新聞』. (4. 21)
「スペイン産豚肉、輸入増」. 2017.『日本経済新聞』. (5. 26)
「冷凍牛乳輸入制限決定 : 米·カナダ産など対象」. 2017.『毎日新聞』. (7. 29)
「米国の薬価引き上げ要求、懸念も聞きながら議論 = 加藤厚労相」. 2017. *REUTERS.* (9. 22)
「日米対話 : 日本, FTAに警戒感.米の主張と平行線」. 2017.『毎日新聞』. (10. 18)
「米、対日貿易切り込む」(2017).『日本経済新聞』. (10. 18)
"Mexican Counteroffer Marks Tit-for-Tat Turn in Nafta Talks." 2017. *Bloomberg.* (11. 21)
"NAFTA Talks Have Hit a Wall After Mexico and Canada Resist U.S. Demands." 2017. *Reuters.* (11. 21)
"Trade Deficits Won't Ruin Us." 1997. *The New York Times.* (11. 24)
"One Reason the Rust Belt Turned Red." 2016. *The Atlantic.* (11. 14)
"The Rust Belt was turning red already. Donald Trump just pushed it along." 2016. *The Washington Post.* (11. 9)
"Read Donald Trump's Speech on Trade." 2016. *TIME.* (6. 28)
"The US, Canada, and Mexico are renegotiating NAFTA — here's what each country wants." 2017. *Vox.* (9. 5)

「수출·통상·금융…'트럼프 보호무역'에 한국경제 폭풍전야」. 2016. 『한겨레』. (11. 9)

[법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시행: 2017. 3. 3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3/31/presidential-executive-order-establishing-enhanced-collection-and (검색일: 2017. 12. 8).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시행: 2017. 4. 18).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18/presidential-executive-order-buy-american-and-hire-american(검색일: 2017. 11. 21).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시행: 2017. 4. 29).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5/01/presidential-executive-order-addressing-trade-agreement-violations-and(검색일: 2017. 12. 5).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Steel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시행: 2017. 4. 20).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20/presidential-memorandum-secretary-commerce(검색일: 2017. 12. 8)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Aluminum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시행: 2017. 4. 2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27/presidential-memorandum-secretary-commerce(검색일: 2017. 12. 8).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시행: 2017. 1. 23).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3/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withdrawal-united-states-trans-pacific(검색일: 2017. 12. 5).

[통계자료]

CEIC DB. https://www.ceicdata.com(검색일: 2017. 11. 11).

USITC. “AD/CVD Orders.” https://www.usitc.gov/trade_remedy/731_ad_701_cvd/investigations.htm(검색일: 2017. 12. 5).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국문자료]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2014.『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14-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재덕. 2015.「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주요 쟁점과 예상 전략」.『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라미령, 김제국. 201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7. 2. 15, Vol. 17,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2.「한·중·일 FTA 체결 계획」.

이창재, 방호경. 2012.「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2012. 11. 20, Vol. 12,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외. 2005.『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Sonya Chum. 2014. “The Impact of Japan's Rivalry with China on Its Willingness to Pursue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 18, No. 3, pp. 215-251.

[일문자료]

阿部一知. 2012.「第6章 日中韓FTA：経過と課題」. 山澤逸平, 馬田啓一, 国際貿易投資研究会 編著.『通商政策の潮流と日本 FTA戦略とTPP』. 勁草書房.

尾池厚之. 2006.「日本のEPA交渉の展開と展望：日本型EPAの確立と新たなる挑戦」. 日本関税協会.『貿易と関税』. 2006年12月号.

大木博巳. 2016.「TPP貿易とRCEP貿易の展望」.『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14章. 勁草書房.

外務省. 2017.「経済連携協定の効果：貿易·投資の動向」. 外務省経済局 2017. 3.

経済産業省. 2013.『通商白書2013』.

_____. 2015.『通商白書2015』.

小林守. 2008.「中国におけるFTA政策の背景および現状と今後の通商戦略」.『我が国の東アジアFTA/EPA形成の在り方』. 第Ⅲ章. 日本機械輸出組合.
小針清孝. 2015.「ASEANにおける新中間層の台頭と日系企業の課題」.『知的資産創造』. 2015년 7월호. 野村総合研究所.
首相官邸. 2013.「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2013. 6. 14.
助川成也. 2016.「RCEPの意義と課題」.『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5章. 勁草書房.
_____. 2017.「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とアジア統合の中核ASEANの役割」.『アジア研究所報』. 第168号.
宋俊憲. 2016.「日本におけるFTAの利用状況と政策的課題」.『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18章. 勁草書房.
高瀬保. 2003.『WTOとFTA：日本の制度上の問題点』. 東信堂.
菅原淳一. 2008.「日·ASEAN包括的経済連携協定:その概要と二国間との比較」.『みずぼ政策インサイト』. 2008. 5. 12. みずほ総合研究所.
通商産業省. 1999,『平成11年版通商白書』. 재인용: 水田慎一. 2008.「日本のFTA/EPA政策の経緯·成果の整理·分析」.『我が国の東アジアFTA/EPA形成の在り方』. 第Ⅴ章. 日本機械輸出組合.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2016.「ASEAN自由貿易協定(AFTA)の物品貿易に関する協定(ATIGA)（AFTA-ATIGA)」.
別所健一. 2013.「日本のEPA·FTAについて」. 外務省·北九州商工会議所主催EPA(経済連携協定)活用セミナー. 2013. 2. 6.
水田慎一. 2008.「日本のFTA/EPA政策の経緯·成果の整理·分析」.『我が国の東アジアFTA/EPA形成の在り方』. 第Ⅴ章. 日本機械輸出組合.
三菱東京UFJ銀行. 2017.「アジアにおけるの進行状況」. AREA Report 485. 2017. 7. 3.

[웹사이트]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Australia). “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egotia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http://dfat.gov.au/trade/agreements/rcep/documents/guiding-principles-rcep.pdf(검색일: 2017. 11. 23).
外務省. 2002.「日本のFTA戦略」. 2002. 10. http://www.mofa.go.jp/mofaj/gaiko/fta/senryaku.html(검색일: 2017. 10. 25).
_____. 2006a.「日·マレーシア経済連携協定の概要」. 2006. 1. http://www.mof

a.go.jp/mofaj/gaiko/fta/j_asean/malaysia/pdfs/renkei_g.pdf(검색일: 2017. 11. 3).
_____. 2006b.「日·フィリピン経済連携協定の概要」. 2006. 9.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philippines/pdfs/gaiyo.pdf(검색일: 2017. 11. 3).
_____. 2007a.「日·タイ経済連携協定の概要」. 2007. 4.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thailand/pdfs/gaiyo.pdf(검색일: 2017. 11. 3).
_____. 2007b.「日·インドネシア経済連携協定の概要」. 2007. 8.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indonesia/pdfs/gaiyo.pdf (검색일: 2017. 11. 3).
_____. 2008.「日·ベトナム経済連携協定の概要」. 2008. 12.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vietnam/pdfs/gaiyo.pdf(검색일: 2017. 11. 3).
_____. 2017.「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ＲＣＥＰ)」(11月 16日). http://www.mofa.go.jp/mofaj/files/000231134.pdf(검색일 2017. 11. 20).
_____.「日中韓FTA」.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jck/index.html(검색일: 2017. 10. 5).
_____.「日中韓FTA, 日中韓FTAについて(概要)」.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jck/index.html(검색일: 2017. 10. 10).
_____.「我が国の経済連携の取組」. http://www.mofa.go.jp/mofaj/files/000282811.pdf(검색일: 2017. 10. 5).
経済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http://www.meti.go.jp/statistics/tyo/kaigaizi/result-1.html(검색일: 2017. 11. 21).
_____.「第一種特定原産地証明書の発給状況」.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coo.html(검색일: 2017. 11. 21).
経済連携促進関係閣僚会議. 2004.「今後の経済連携協定の推進についての基本方針」. 2004. 12. 21. http://www.mofa.go.jp/mofaj/gaiko/fta/hoshin_0412.html(검색일: 2017. 10. 25).
財務省.「日ＡＳＥＡＮ包括的経済連携協定原産地規則の概要」(平成20年11月.平成23年7月一部改訂). 関税局業務課. http://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asean/setsumeikai_gensanchi.pdf(검색일:2017. 11. 23).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タイ: WTO·他協定加盟状況」. https://www.jetro.g

o.jp/world/asia/th/trade_01.html(검색일: 2017. 11. 1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RCEP. http://www.fta.go.kr/rcep(검색일: 2017. 11. 21).
_____. 「FTA 강국, KOREA」. 「한·중·일 FTA-보도자료: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http://www.fta.go.kr/cnjp/apply/1/(검색일: 2017. 10. 5).
_____. 「FTA 강국, KOREA」. 「한·중·일 FTA - 보도자료」. http://www.fta.go.kr/cnjp/paper/1/(검색일: 2017. 10. 5).
WTO. "Particip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ta_participation_map_e.htm(검색일: 2017. 11. 28).
日本銀行. 「国際収支統計」. 時系列統計データ検索サイト. http://www.stat-search.boj.or.jp/index.html(검색일: 2017. 11. 23).

[언론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3. 「한중일 FTA 제3차 협상 결과」. 보도참고자료. (12. 2)
_____. 2014. 「동아시아 시장개방 및 자유화 방식 심층 논의」. 보도자료. (9. 1)
_____. 2017a.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고베) 논의 결과」. 보도자료. (3. 6)
_____. 2017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 협상 개최」. 보도자료. (10. 23)
_____. 2017c.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결과」. 보도자료. (1. 12)
_____. 2017d.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보도자료. (4. 7)
"RCEP deal unlikely this year: South Korean official." 2017. *Nikkei Asian Review.* (10. 27)
"India agrees to government procurement talks in regional trade pact." 2017. *The Economic Times.* (6. 19)
"RCEP: Members worried about giving more market access to Chinese goods." 2016. *The Hindu.* (11. 1)
"India may offer China tariff removal on over 70% goods." 2016. *Livemint.* (12. 19)
「RCEP年内合意断念, 2018年以降も交渉閣僚会合」. 2017. 『日本経済新聞』. (11. 12)

[통계자료]

IMF dat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17. 10. 23).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http://wits.worldbank.org (검색일: 2017. 11. 3~12. 12).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orldbank.org/products/wdi(검색일: 2017. 12. 14).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국문자료]

김규판. 2013.「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3. 4. 11, Vol. 13,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2013. 7.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일문자료]

石川幸一. 2016a.「TPPの概要と評価」.『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2章. 勁草書房.

_____. 2016b.「TPP協定における政府調達規定」.『国際貿易と投資』. Summer 2016. No.104. 国際貿易投資研究所.

小野沢純. 2017.「TPP協定におけるマレーシアのブミプトラ政策：ブミプトラ企業の競争力改善となるか」.『国際貿易と投資』. Spring 2017. No. 127. 国際貿易投資研究所.

菅原淳一. 2017.「大筋合意に至ったTPP11」.『みずほインサイト』. 2017. 11. 13. みずほ総合研究所.

高橋俊樹. 2017.「TPPから日米FTAの関税効果を探る：日本、マレーシア、ベトナム、米国におけるEPA/FTA/TPP利用の効果比較」.『国際貿易と投資』. No. 108. 国際貿易投資研究所.

滝井光夫. 2016.「容易ではない米国のTPP批准: 米国の産業界、労働界は何を問題としているか」.『国際貿易と投資』. No. 104. 国際貿易投資研究所.

畠山襄. 2016.「TPP交渉の成果と評価」.『世界経済評論』. 2016年5·6月号.

[영문자료]

Kawasaki Kenichi. 2014.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EPAs in Asia-Pacific."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4-E-009*. January 2014.

_____. 2017. "Emergent Uncertainty in Regional Integration-Economic impacts of alternative RTA scenarios." *GRIPS Discussion Paper 16-28*. January 2017.

Petri, Peter A., Michael G. Plummer, Shujiro Urata, and Fan Zhai. 2017. "Going It Alone in the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out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17-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웹사이트]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 2015.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Agreement(TPP)", December 3, 2015.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ITAC-10-Services-and-Finance-Industries.pdf(검색일: 2017. 9. 22).

梅津英明, 柴田久. 2016.「10.2. 投資·サービス章留保表(付属書Ⅰ&Ⅱ): ベトナム」.『Web解説TPP協定』. 2016. 3. 8. RIETI. http://www.rieti.go.jp/jp/projects/tpp/pdf/10.2_annexi-ii_vnm_v2.pdf(검색일: 2017. 9. 15).

外務省.「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TPP)協定交渉概要」. http://www.mofa.go.jp/mofaj/gaiko/tpp(검색일: 2017. 9. 20).

川瀬剛志, 川島富士雄. 2016.「17. 1. 国有企業及び指定独占企業(本則)」.『Web解説TPP協定』. 2016. 8. 3. RIETI. http://www.rieti.go.jp/jp/projects/tpp/pdf/17.1_soe_v2.pdf(검색일: 2017. 10. 3).

河野良介, 早野述久, 近藤直生.「3. 原産地規則及び原産地手続」.『Web解説TPP協定』. RIETI. http://www.rieti.go.jp/jp/projects/tpp/pdf/3_roo_v2.pdf(검색일: 2017. 9. 18).

鈴木将文.「18.3 知的財産権(特許及び不開示データ)」. 『Web解説TPP協定』. RIETI. http://www.rieti.go.jp/jp/projects/tpp/pdf/18.3_ip_patent_v1.pdf(검색일: 2017. 10. 18).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 2015a.「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2015. 10. 5. http://www.cas.go.jp/jp/tpp/pdf/2015/10/151

005_tpp_gaiyou.pdf(검색일: 2017. 8. 12).
_____. 2015b.「TPPにおける関税交渉の結果」. 平成27年10月20日(https://www.cas.go.jp/jp/tpp/pdf/2015/12/151020_tpp_kanzeikousyoukekka.pdf. 검색일: 2017. 8. 16).
_____. 2017a.「平成29年11月のダナン(ベトナム)における閣僚会合について：付属書Ⅱ停止(凍結)される規定のリスト」(2017年11月11日). http://www.cas.go.jp/jp/tpp/naiyou/tpp_kaigou.html#vnd(검색일: 2017. 11. 13).
_____. 2017b.「TPP11協定の合意内容について」(2017年11月11日). http://www.cas.go.jp/jp/tpp/naiyou/pdf/danang/171111_tpp_danang_gaiyo.pdf(검색일. 2017. 11. 13).
_____.「TPPの内容: (9)投資：各国の留保の主な改善項目」. http://www.cas.go.jp/jp/tpp/naiyou/tpp_kyoutei.html(검색일: 2017. 9. 25).
_____.「TPPの内容: (14)電子商取引-ルールの概要」. http://www.cas.go.jp/jp/tpp/naiyou/pdf/chapters/ch14_1.pdf(검색일: 2017. 9. 20).
_____.「TPPの内容: (15)政府調達-付属書」. http://www.cas.go.jp/jp/tpp/naiyou/tpp_kyoutei.html(검색일: 2017. 9. 25).
_____.「TPPの内容: (18)知的財産-ルールの概要」. http://www.cas.go.jp/jp/tpp/naiyou/pdf/chapters/ch18_1.pdf(검색일: 2017. 10. 2).
藤井康次郎, 河合優子.「14. 電子商取引」.『Web解説TPP協定』. RIETI. http://www.rieti.go.jp/jp/projects/tpp/pdf/14_e-commerce_v2.pdf(검색일: 2017. 9. 18).
藤井康次郎, 根本拓.「15 . 政府調達」.『Web解説TPP協定』. RIETI. http://www.rieti.go.jp/jp/projects/tpp(검색일: 2017. 9. 28).

[언론보도자료]

「TPP11凍結項目で溝」. 2017.『日本経済新聞』. (8. 31)
「TPP11繊維で溝」. 2017.『日本経済新聞』. (9. 10)
「TPP11半歩前進」. 2017.『日本経済新聞』. (9. 23)
「TPP19年発効目指す」. 2017.『日本経済新聞』. (11. 12)

[통계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2016년도 대한민국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검색일: 2017. 11. 17).

일본 TPP 협정문 관세양허표(Japan Tariff Elimination Schedule).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검색일: 2017. 11. 1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6년 품목별 국가별 수입 통계(월간) 최종 확정치. http://trass.or.kr/service/pub/IntroServlet(검색일: 2017. 11. 17).
財務省 貿易統計, 国別品別表(各国別にどのような品目(9桁の統計品目番号) を貿易しているかの統計表).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71312(검색일: 2017. 11. 1).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일·EU FTA를 중심으로

[국문자료]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2014.『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14-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영, 이준원, 민경실. 2017.「日-EU EPA 타결 및 시사점」.『TRADE BRIEF』, 2017. 7. 7, Vol. 2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종규, 양오석, 정호성, 김화년. 2009.「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2012.「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_____.「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동희, 오태현, 이형근, 이정은, 김영귀. 2017.「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기본합의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7. 7. 26, Vol. 17, No.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문자료]

外務省. 2017.「日EU経済連携協定(EPA)に関するファクトシート」. (11月 2日).
経済産業省. 2017.「日EU経済連携協定(EPA)における工業製品関税(経済産業省関連分)に関する大枠合意結果について」. (平成29年11月).
財務省. 2017.「日EU·EPA市場アクセス交渉等の最終結果」. (7月 6日).
菅原淳一. 2017.「日EU·EPA交渉大枠合意の意義」. (2017. 7. 12). みずほ総合研究所.
西村聞多. 2017.「日EU経済連携協定(日EU·EPA)の大枠合意について」.『ファイナンス』. 財務省.
農林水産省. 2017.「日·EU EPA 大枠合意におけいる農林水産物の概要」①(EUからの輸入). (平成29年7月).

[영문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2.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uropean Commission. 2017a. “Client and Supplier Countries of the EU28 in Merchandise Trade(value %).”

_____. 2017b. “EU-Japan EPA – The Agreement in Principle.”(2017. 7. 6).

[웹사이트]

外務省.「第24回日EU定期首脳協議」. http://www.mofa.go.jp/mofaj/erp/ep/page1_000351.html(검색일: 2017. 7. 10).

_____.「日EU経済連携協定（EPA）交渉」. http://www.mofa.go.jp/mofaj/gaiko/page6_000042.html(검색일: 2017. 12. 14).

_____.「日EU·EPA関税交渉の主な結果」. http://www.mofa.go.jp/mofaj/ecm/ie/page23_002293.html(검색일: 2017. 11. 5).

_____.「日EU·EPA(協定の全体像)」(2017. 12. 8). http://www.mofa.go.jp/mofaj/files/000304398.pdf(검색일: 2017. 12. 14).

_____.「日EU協力のための行動計画(概要)」. http://www.mofa.go.jp/mofaj/area/eu/kodo_k_gai.html(검색일: 2017. 7. 10).

_____.「日·EUビジネス·ラウンドテーブル」. http://www.mofa.go.jp/mofaj/area/eu/business.html(검색일: 2017. 7. 25).

_____.「日EU定期首脳協議」. http://www.mofa.go.jp/mofaj/area/eu/shuno.html(검색일: 2017. 7. 25).

_____.「日本·EC共同宣言」. http://www.mofa.go.jp/mofaj/area/eu/sengen.html(검색일: 2017. 7. 10).

財務省.「財務省貿易統計 – 輸出入額の推移(地域(国)別)]」.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time.htm(검색일: 2017. 7. 11).

_____.「財務省貿易統計 – 月分·年分一覧」. http://www.customs.go.jp/toukei/shinbun/happyou.htm(검색일: 2017. 7. 12).

農林水産省.「日EU·EPAにおける農林水産物の関税交渉の結果概要」. http://www.maff.go.jp/j/kokusai/renkei/fta_kanren/f_eu/attach/pdf/index-49.pdf(검색일: 2017. 11. 5).

Deloitte Tohmatsu.「日EU·EPA交渉のビジネス影響～大枠合意を受けて経営者

が持つべき視点～」.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strategy/articles/cbs/japan-eu-epa.html(검색일: 2017. 9. 15).
European Commission, "EU and Japan finali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5142_en.htm(검색일: 2017. 12. 14).
Eurostat. DATABASE.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7. 7. 15).
JETRO.「日本の直接投資(残高)」. https://www.jetro.go.jp/world/japan/stats/fdi.html(검색일: 2017. 7. 12).

[언론보도자료]

「妥結優先難題棚上げ」. 2017.『日本経済新聞』. (12. 9)
「日欧EPA交渉妥結」. 2017.『日本経済新聞』. (12. 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국문자료]

김규판. 2013.「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3. 4. 11, Vol. 13,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한·일 FTA 협상재개 대비 사전연구」. 2011. 7.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외교통상부. 2012.「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정환우. 2013.「한·중·일 FTA,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금석」.『Trade Focus』, Vol. 12, No. 5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일문자료]

阿部一知. 2012.「第6章 日中韓FTA：経過と課題」. 山澤逸平, 馬田啓一, 国際貿易投資研究会 編著.『通商政策の潮流と日本 FTA戦略とTPP』. 勁草書房.
清川 佑二. 2015.「日中韓FTA交渉の展望とアジアの新通商秩序の出現：WTO新ラウンド推進に貢献」.『国際貿易と投資』. 国際貿易投資研究所.
経済産業省. 2017.「平成30年度経済産業政策の重点」(2017. 8. 31).
助川成也. 2016.「RCEPの意義と課題」.『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5章. 勁草書房.

菅原淳一. 2017.「日EU · EPA 交渉大枠合意の意義」(2017. 7. 12). みずほ総合研究所.
西村聞多. 2017.「日EU経済連携協定(日EU · EPA)の大枠合意について」.『ファイナンス』. 財務省.

[영문자료]

Petri, Peter A., Michael G. Plummer, Shujiro Urata, and Fan Zhai. 2017. "Going It Alone in the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out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17-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STR.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March 2017.

[웹사이트]

관세청 FTA 포털.「FTA 활용률」.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TrtyManage/ExportAgreeFtaUseRate.do?layoutMenuNo=32131&cnvnNm=ALL(검색일: 2017. 11. 30).
European Commission. "Key elements of the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Memo."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687(검색일: 2017. 11. 5).
内閣官房TPP政府対策本部. 2015.「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2015. 10. 5. http://www.cas.go.jp/jp/tpp/pdf/2015/10/151005_tpp_gaiyou.pdf(검색일: 2017. 8. 12).
_____. 2017.「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 2017. 11. 24. https://www.cas.go.jp/jp/tpp/torikumi/index.html(검색일: 2017. 12. 3).

[언론보도자료]

「政府、ベトナムとマレーシアに外資規制見直し要請」. 2013.『日本経済新聞』. (9. 1)
「TPP11企業に追い風」. 2017.『日本経済新聞』. (11. 12)
「TPP19年発効目指す」. 2017.『日本経済新聞』. (11. 12)
「日欧EPAが妥結 =「投資」分離、19年発効へ—巨大貿易圏誕生、世界全体の3割」. 2017.『時事通信』. (12. 8)

Executive Summary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Japan's Trade Policy

KIM Gyu-Pan, LEE Hyong-Kun, LEE JungEun, and KIM Jegook

The firs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focusing on the trade protectionism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S., while examin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such changes,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To be more specific,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o U.S. unilateral trade pressures in the 1980s and 1990s, and how Japan, based on this experience, proposed and formed the U.S.-Japan Economic Dialogue. This objective is addressed in Chapter 2 of the study. The second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and analyze Japan's FTA policy and strategy, focusing on the ASEAN-Japan FTA (AJCEP), RCEP, Korea-China-Japan FTA, the TPP 11, and the Japan-EU FTA. This discussion is covered in Chapters 3, 4, and 5 of the study.

Chapter 2, "U.S. Protectionism and Japan's Trade Policy," covers the surge of trade protectionism in the U.S. during the 1980s an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looks into the responding policy ado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U.S. trade pressure on Japan in the 1980s prompted Japan to shift its trade strategy from a "mercantilist" trade policy based on export expansion to one focusing on

direct investment or strengthening business partnerships between companies.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s, this pressure by the U.S. acted as a decisive factor in deteriorat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Japanese companies. Regarding the trade environment under President Trump,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tectionist trad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1) prioritizing domestic law over the WTO, 2) expanding import restrictions, and 3) renegotiating FTAs. In response to Trump's protectionism, Japan has proposed a new form of trade council to be called the U.S.-Japan Economic Dialogue, in an attempt to evade direct and unilateral trade pressure from the U.S. The Japanese government's "TPP-oriented" trade policy or its tendency to exclude exchange rate in trade talks are noteworthy in that they show Japan's willingness to press for its profits.

Chapter 3, "Japan's Regional Trade Policy in East Asia," examines Japan's FTA policy and strategy for East Asia, focusing on the AJCEP (ASEAN-Japan FTA), RCEP and the Korea-China-Japan FTA. First, this study predicts Japan will continue to compete with Korea in the area of FT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concluded in 2010 had the effect of expediting Japan's process of concluding the Japan-EU FTA and the TPP. Second, an analysis of the trade effects of Japan's FTAs reveals that the AJCEP and Japan's bilateral FTAs with ASEAN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in average) the total exports and imports, and mitigating the decline of Japan's total trade that became conspicuous after 2012. In particular, the steel and automobile sectors,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d focused on to expand the global value chain of domestic companies, experienced growth in exports. Third, the study reveals that Japan's FT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of Japanese companies in ASEAN countries. Both the proportion of Japan's sales to the ASEAN-4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and the proportion of

Asian regional procurement and sales increased after Japan concluded FTAs with ASEAN countries. Fourth, regarding the RCEP,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adopt common concession and agree on a broader and higher level of tariff elimination than the ASEAN+1 agreements. At the same time, it also calls for the implementation of cumulative rules of origin to help Korean companies build production networks within the ASEAN and RCEP regions. Fifth, in relation to the Korea-China-Japan FTA,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1) publicly communicating the need for concluding the Korea-China-Japan FTA through strong political leadership, 2) adopting an rather than single undertaking, and 3)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for trade facilitation.

Chapter 4, "Japan's Asia-Pacific Regional Trade Policy," analyzes what Korea should consider when entering the TPP negotiation, based on Japan's trade strategy as well as TPP 11 basic agreement. First,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Japan's "obsession" with TPP, even after the exit of the U.S., is the fact that the original TPP agreement had almost satisfied Japan's demand to "sanctify" the five agricultural products in Japan, and that the economic benefits of TPP 16 (including Indonesia, Philippines, Taiwan, Thailand and Korea while excluding the US) surpasses that of RCEP. Added to that is the TPP's trade norms—including rules of origin, e-commerce, state owned enterpris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such, it is predic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maintain a very tough negotiating stance in the RCEP and Korea-China-Japan FTA, based on the TPP model. Lastly, the study points out the need to review Korea's current tariff structure, should the Korean government wish to embark on a bilateral FTA with Japan, or participate in TPP in the future. Korea's current tariff rates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Japan's, and this could greatly restrict Korea's negotiating power vis-à-vis Japan when entering a negotiation with Japan. In addition, such an "asymmetric" tariff structure will inevitably

end up increasing Korea's trade deficit to Japan due to the phase-in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Chapter 5, "Japan's EU Trade Policy," examines Japan's EU trade policy, focusing on the Japan-EU FTA concluded in December 2017.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Japan-EU FTA, together with th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PA), is important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strategic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EU. Second, a comparison of the commodity market access between the EU-Japan FTA and the Korea-EU FTA revealed that the immediate tariff elimination rate was higher for Japan (96% of industrial products and 54% of agricultural products) than Korea (90.7%, 42.5%), while in regard to the period of tariff elimination for automobiles in the EU market, Japan agreed for 2 years more than Korea. Regarding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in Korea and Japan, both FTAs reached similar level of agreements. Third, a comparison of the non-commodity market access between the two FTAs revealed that for the service sector, the Japan-EU FTA adopted a negative list approach, while the Korea-EU FTA adopted a positive list approach. Regarding investor protection, the issue was hardly raised at all during negotiations for the Korea-EU FTA, while in the Japan-EU FTA, various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were discussed but the two sides were unable to reach a consensus, as Japan insisted on adopting the ISDS system while the EU wished to adopt the ICS system. It is estimated that the adverse effects of the EU-Japan FTA on Korea will not be large in macroeconomic aspects such as GDP, consumer welfare, employment, etc. In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automobile components and electronic devices, however, some adverse effects are to be expected. It is also noteworthy to remember that the Japan-EU FTA includes certain sectors that were not discussed in the Korea-Japan FTA,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SME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7년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 · 방호경 · 이보람 · 백종훈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 · 이현태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오윤미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곽성일 · 김재완 · 김재국 · 신민이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 · 박순찬 · 강민지

17-0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 · 임수호 · 이석기 · 최유정 · 임소정

17-0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형근 · 김종혁 · 권혁주

17-08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강준구 · 이홍식 · 한치록

17-09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 · 김효상

17-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 ·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김효은

17-1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 · 김소영 · 강은정 · 양다영

17-12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김민성 · 곽소영 · 정민철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17-14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 · 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 · 김종혁 · 권혁주 · 김원기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7-15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 · 염동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윤상철 · 이종욱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 · 인도 협력방안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 · 이수영 · 김혁황 · 강영호

17-1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 · 배찬권 · 이수영 · 박지현 · 유새별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 · 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 · 양문수 · 이정균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 · 이상훈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 최재희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남시훈 · 금혜윤 · 김낙년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 · 최장호 · 최혜린 · 김영선 · 오윤미 · 이준구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 · 김종덕 · 박혜리 · 정민철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 · 이형근 · 이정은 · 김제국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 · 정재완 · 송영철 · 오종혁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 · 김기환 · 김수빈 · 이진희 · 한민수

17-28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임유진

17-29 한 · 중 · 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 · 이보람 · 이서영 · 백종훈 · 방호경

17-30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 · 지역별 분석 /
이상훈 · 정지현 · 김홍원 · 박진희 · 이한나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17-3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 · 한민수 · 송지혜 · 김은미

17-32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 표학길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유정 · 최지영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김규판(金奎坂)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경제학 연구과정(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위원
(現, kei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공저, 2015)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공저, 2016) 외

이형근(李炯根)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방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선임연구원
(現, hk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공저, 2016)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2016) 외

이정은(李正銀)

연세대학교 국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現, E-mail: leeje@kiep.go.kr)

저서 및 논문

""Asia for Asians:" On the Evolution of China's Approach to East Asian Regionalism" (석사논문, 2015)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공저, 2016) 외

김제국(金帝國)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부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現, E-mail: jegook@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공저, 2015)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공저,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7-25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Japan's Trade Policy

KIM Gyu-Pan, LEE Hyong-Kun, LEE JungEun, and KIM Jegook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현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FTA 정책을 둘러싼 주요 경쟁국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의 전반부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고, 후반부에서는 일·ASEAN FTA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 한·중·일 FTA,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통상협력 관련 제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1692-8 9432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